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

2010. 12

홍범교 · 김진수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세계적인 시장과 견주어 손색없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은 여전히 비과세되고 있는 등 금융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과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시장에 대하여 비과세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한 현재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본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정의를 위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합투자에 대한 세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 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불행히도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례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경험이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추출하여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의 홍범교 박사와 김진수 박사가 공동으

로 저술하였다. 저자들은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단계에서 좋은 코멘트를 주신 청주대학교 김성태 교수, 이경근 읍춘 세무사, 한양대학교 이 영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도 감사드린다. 저자들은 또한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도와준 강미정 전문연구원, 이은경 전문연구원에게 감사하며, 보고서 편집을 도와준 최미영 주임연구행정원, 김민주 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과제의 전체 진행과정 및 출판단계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조정 팀 직원들과 연구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견해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요약

1.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한 것은 주식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제 주식시장이 선진국 시장과 견줄 수 있는 현 시점에 이르러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정의를 위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고려한 형평성의 추구는 현행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파생상품과세제도의 정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 그 첫 단추가 된다고 하겠다.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다. 단기적인 소폭의 충격은 별 문제 없으나, 장기적이며 대폭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 가능성이 확률상 매우 작더라도 여타 금융시장 및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에 대하여 신중할 수밖에 없다.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그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계량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 GDP,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성숙도, 우리나라의 경제력, 최근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극복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일차적인 여건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면 남은 과제는 ‘어떻게(how)’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거래세에서 양도세로의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의 경험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즉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도입 초기에는 사실상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손실공제와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세제도를 양도세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면 성공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성공적 도입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정비로 수반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세 제도 정비의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도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와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래,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파생금융상품은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 주식시장과 달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거래세마저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개장 후 수년 만에 세계적인 거래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데는 이러한 비과세

정책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KOSPI200 선물과 옵션 시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은 시장 가운데 하나에 속할 만큼 성장한 현재에도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겠다.

현물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연계한 투자전략들이 수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융자산들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도 연계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금융자산 소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의 제도를 살펴보면 실무적으로도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현물주식시장에서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시행되더라도 점진적인 이행에 따른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도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한편 자본이득세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상속세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상속세는 사망시점에 과세되는 비논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사망세이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의 핵심으로서 이론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있다. 즉,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재원에 대해서 또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 보다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그 재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치상승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미비로 상속재산의 가치상승분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상속세가 목적으로 하는 기회균등의 가치와 능력위주의 사회구조를 보장할 수 없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자본이득세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정책시사점

그동안 꾸준히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할 만큼 소득수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성숙도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선진국 시장에 도입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선진국의 자본시장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에는 못 미치지만,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국제적인 자본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으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래 인프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IT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등 성숙된 시장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아서 자본시장에

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며, 과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도 주식양도차익
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은 파생금
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수적인 요
소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합투자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는 데
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
장,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동
시에 과도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
하여 계량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지
만, 불행히도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현실
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례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경험인 그
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세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
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일본은 주식에 대
한 양도소득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비과세의 범위를
축소하여 왔으며, 양도소득세의 도입 시에도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형
태의 원천분리과세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제도 변환의 충격을 완화
시켰다. 또한 거래세율을 낮추되, 10년간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
행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였다. 결국 일본이 신고분리
과세로 주식양도소득세제를 완전히 정비하기까지는 도입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도입 이전에 점진적으로 비과세 범위
를 축소한 기간까지 합산한다면 수십 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어떻게(how)’에 있으며, 그 해답은 일본식의 점진적

인 제도 변환이다. 즉,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도입방식을 점진적인 방식이 되도록 설계하여 도입하는 것이다.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분리과세 제도를 병행하여 투자자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어떻게(how)'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매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세제의 변경은 단지 주변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변화로 인하여 시장이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세제의 변화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이라면 앞으로 또 수년간을 기다리더라도 그러한 충격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한 경우에도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충격에 지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제적으로 과세당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나날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이탈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제도 변경의 충격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는 도입 방안의 설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적어도 수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겠다.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우선 분리과세의 형태로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종합과세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도 도입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최근 조세경쟁으로 자본소득에 대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이원

적 소득세제를 이미 채택한 나라들도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어 왔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동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가치상승분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상속세가 불완전한 자본이득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본이득세제의 정비가 선행되고 난 후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21
II.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4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론	24
가. 자본자산과 자본이득	24
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논쟁	25
2. 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28
가. 미시적 효과	28
나. 거시적 효과	31
3. 선행연구	35
가. 해외연구	35
나. 국내연구	45
III.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1
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51
2.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55
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55
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57
다. 주식양도차익의 산정방법	59
3. 주요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60
가. 미국	60
나. 영국	66
다. 일본	72

라. 시사점	85
4.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	89
가. 제도의 미비	89
나. 공평과세의 원칙 위배	90
다. 세수 문제	92
 IV.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96
1.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98
가. 일본	98
나. 대만	100
2. 과세제도 전환 성공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경우	102
가. 주식양도소득세제 도입 연혁	102
나. 시사점	110
3.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의 영향: 일본의 경우	114
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117
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120
다. 시사점	124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방안	125
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125
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130
5. 소결	142
 V.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144
1. 현황 및 문제점	144
가.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144
나.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146
2.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147
가. 미국	147

나. 영국	149
다. 일본	150
라. 시사점	152
3. 도입방안	153
가. 소득세 과세방안	153
나. 거래세 과세방안	163
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	169
4. 소결	170
 VI.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171
1. 우리나라의 상속세 현황	171
가. 상속세 과세현황	171
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제도	174
2. 상속세 존폐에 관한 논쟁	176
가. 사망시점에서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취급방법 ·	176
나. 상속세 존폐론	178
3. 주요국의 사례	181
가. 상속세 유형 및 국가별 상속세제 현황	181
나. 국가별 세제 현황	186
다. 시사점	205
4.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208
가. 상속세의 폐지 가능성 검토	208
나.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211
5. 소결	217
 VII. 결 론	219
 참고문헌	223

표 목 차

〈표 Ⅲ-1〉 유가증권시장 규모 추이	51
〈표 Ⅲ-2〉 코스닥시장 규모 추이	53
〈표 Ⅲ-3〉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56
〈표 Ⅲ-4〉 장·단기 보유 여부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	64
〈표 Ⅲ-5〉 Taper Reliefs에 의한 자본이득의 과세대상 편입비율 ..	69
〈표 Ⅲ-6〉 자본이득 연간 비과세 기준 금액	70
〈표 Ⅲ-7〉 소득세 과세구간별 자본이득에의 적용 세율	71
〈표 Ⅲ-8〉 동일종목 주식을 2회 이상에 걸쳐서 취득한 경우 취득비 계산사례	75
〈표 Ⅲ-9〉 주식양도차익 적용 세율	77
〈표 Ⅲ-10〉 소액 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조치	78
〈표 Ⅲ-11〉 상장주식 양도손실과 배당의 손익통산	82
〈표 Ⅲ-12〉 상장주식 배당에 대한 세율	84
〈표 Ⅲ-13〉 OECD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87
〈표 Ⅲ-14〉 OECD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 운영 현황 ..	89
〈표 Ⅲ-15〉 일본의 주식양도익 계층별 분포(1990년)	92
〈표 Ⅲ-16〉 유가증권시장의 소유자별 주식소유 분포	95
〈표 Ⅲ-17〉 코스닥시장의 소유자별 주식소유 분포	95
〈표 Ⅳ-1〉 일본 거래세율 변화 추이	112
〈표 Ⅳ-2〉 일본의 주식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세수 추이	112
〈표 Ⅳ-3〉 기간별 회귀분석(양도차익과세 도입 전후)	117
〈표 Ⅳ-4〉 기간별 회귀분석(유가증권거래세 폐지 전후)	118

〈표 IV-5〉 더미변수를 이용한 검정: 장기금리	119
〈표 IV-6〉 더미변수를 이용한 검정: 단기금리	120
〈표 IV-7〉 기간별 회귀분석(양도차익과세 도입 전후)	121
〈표 IV-8〉 기간별 회귀분석(유가증권거래세 폐지 전후)	122
〈표 IV-9〉 더미변수를 이용한 검정: 장기금리	123
〈표 IV-10〉 더미변수를 이용한 검정: 단기금리	123
〈표 IV-11〉 시가총액별 상장회사 분포(2010년말 기준)	141
〈표 V-1〉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 규모 추이	145
〈표 V-2〉 개별주식 관련 파생금융상품 규모 추이	146
〈표 V-3〉 미국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요	148
〈표 V-4〉 일본의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양도차익 과세제도	151
〈표 VI-1〉 상속세 과세비율	172
〈표 VI-2〉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과세현황	173
〈표 VI-3〉 자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과세현황	174
〈표 VI-4〉 상속세 공제	175
〈표 VI-5〉 상속세 세율	176
〈표 VI-6〉 상속·증여시의 자본이득과세	177
〈표 VI-7〉 상속세 유형 비교	182
〈표 VI-8〉 유럽국가 상속세제 비교(2010)	185
〈표 VI-9〉 캐나다 연방소득세율	188
〈표 VI-10〉 캐나다 결합세율	189
〈표 VI-11〉 스웨덴 상속증여세제의 변천	191
〈표 VI-12〉 상속세율 변천(1884~2004)	192
〈표 VI-13〉 소득유형별 스웨덴 소득세율	193
〈표 VI-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내용 변경 계획 (EGTRRA 기준)	195

〈표 VI-1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내용 변경 계획 (2010 Tax Relief Act 기준)	197
〈표 VI-16〉 미국의 상속 및 증여세제(2009/2010 비교)	199
〈표 VI-17〉 영국 상속세 비과세 한계금액	202
〈표 VI-18〉 증여에 대한 Taper Relief 적용률	203
〈표 VI-19〉 한계금액 외에 비과세 적용되는 공제유형	204
〈표 VI-20〉 개정된 자본이득세율	205
〈표 VI-21〉 GDP 및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2006/2007)	207
〈표 VI-22〉 주요국의 상속세제 현황	208

그림목차

[그림 Ⅲ-1] 유가증권시장 규모 추이	53
[그림 Ⅲ-2] 코스닥시장 규모 추이	54
[그림 Ⅲ-3] 상장주식 취득가액 확인 방법	76
[그림 Ⅲ-4] 소액 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조치	79
[그림 Ⅲ-5] 일본의 양도손실 이월공제 방식	80
[그림 Ⅲ-6] 2001년 9월 30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 취득비용 특례 ..	83
[그림 Ⅲ-7] 특정계좌제도에 대한 특례	83
[그림 Ⅳ-1] 일본의 주식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세수 추이	114
[그림 Ⅳ-2] 주식거래량과 주가지수 추이(1986. 1~2009. 12) ..	116
[그림 Ⅳ-3] 일본의 자본수지 추이	116
[그림 Ⅳ-4]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추이	127
[그림 Ⅳ-5] 세계 주요 주식시장 주식시가총액/GDP	127
[그림 Ⅴ-1] 코스피200 선물 거래금액 및 거래량	145
[그림 Ⅴ-2] 코스피200 옵션 거래금액 및 거래량	146
[그림 Ⅵ-1] 34개국의 상속세 유형	183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소득세 체계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달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된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은 장시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므로 일반소득과 함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과 대주주 등에 의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과세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1991년부터이다. 1985년부터 시행되던 유보이익 증가액의 의제배당과세제도를 1991년에 폐지하는 대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된 것이다. 1999년에는 특수관계자 주식 보유비율을 포함하여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2000년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지분을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세율도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여전히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화 초기에 금융산업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육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의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적립식 펀드가 저축 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으며 주식의 소유가 국민들에게 보편화되고 있다. 더구나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규모는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

로 파생금융상품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융시장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육성을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과 비교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오히려 수평적 불공평을 초래하며, 주식양도차익으로 담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정의의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자본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보다는 기본적으로 자본이득과세를 근간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종합소득세 형태, 분리과세 형태 등 구체적인 과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우대제도를 취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늘어나는 재정지출 소요를 위하여 넓은 세원의 구축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또한 세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이득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부 OECD 회원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를 상속자산이 처분될 때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환경 변화에 따라 종합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자본이득과세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과세는 제외하고,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Ⅱ장에서는 우선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이론적인 측면을 고찰해보

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각각 우리나라의 양도차익과세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해외의 성공사례와 이에 기반한 도입 방안을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Ⅵ장에서는 상속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론

가. 자본자산과 자본이득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확실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처분가치 또는 시가와 그 자산의 원가와의 차이, 즉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말한다¹⁾. 그러나 자본적 자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세법 등에서 이의 집행을 위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의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자본자산에서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하여 자본자산을 정의하고 있다²⁾. 특기할 것은 동일한 성격의 자산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에도 주식 딜러나 트레이더들이 취급하는 주식은 그들의 영업의 일환으로서 주로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자본자산에서 제외한다³⁾. 따라서 이러한 주식거래의 결과로 생기는 손익은 자본손익이 아니라 경상손익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같은 자산이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분류를 중시하고 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자본자산의 정의는 대개 Seltzer(1951)에서 인용하고 있다⁴⁾. Seltzer는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의 주된 원천은 자본자산

1) 오재선(1989), p. 124

2) 홍범교(2005), pp. 26~27 참조.

3) IRC §1221(a)(1)

으로서 그것은 소비목적이라기보다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획득한 자산, 즉 회사증권, 부동산, 정부채권, 조합의 지분, 리스 및 계약에 의한 권리라고 정의한다. 즉, 소비목적이 아니라 소득을 생성하기 위한 목적의 자산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자산이 다른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실용적인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과세가 목적이라면 자본자산의 정의는 세법에서 자세하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세법상에서 자본자산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도 자본이득의 성격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자본이득을 자본자산의 가치적 상승이라고 정의할 때, 여기에는 실현이득과 미실현이득이 모두 포함된다. 실현이득은 자본자산의 판매나 교환에 의하여 이득이 실현된 상태를 말하여, 미실현이득은 보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럴 경우 미실현이득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세법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의 성격을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의가 합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이론적 논쟁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논쟁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세법상의 정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Haig-Simons로 대표되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제적 이익은 그 발생 원인에 불문하고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이득도 소득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된다. 반

4) 오재선(1989), 최경수(2003) 등.

면에 Fuisting로 대표되는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일정한 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만이 소득이 된다. 이 학설에 의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득은 그 특성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과세찬성론

과세찬성론은 자본이득도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Haig-Simons의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주장되는 설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논거에 근거한다. 첫째, 경제력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본이득은 당연히 소득이며 투자가는 자본이득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것이므로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부담을 저해하는 것이다. 둘째, 자산의 가격상승이 물가상승 수준을 초과하는 실질소득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이득만을 특수하게 보아 세부담을 다르게 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에 어긋나며, 자본이득은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귀속되므로 이에 대한 특혜는 수직적 공평을 저해하는 것이다. 셋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은 시장의 동향보다는 투자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적게 미치며 이미 상장된 주식의 매입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신규 투자가 아니다.

최근에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포괄적 소득세이론은 소득을 획득이나 원천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처분이나 행사의 측면에 착안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소득을 획득하는 것은 획득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 자원의 지배, 즉 재산권 가치의 순증에 목적이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또한 Cunningham & Schenk(1993)는 자본이득이 일시적·우발적이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반복적이라고 지

적한다⁵⁾. 만일 일시적·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취급을 요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보물의 발견이나 로또와 같은 예기치 못한 횡재도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며, 특히 이런 경우 세금이 이들의 행위를 변경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특별취급을 요구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2) 과세반대론

과세반대론은 Fuisting의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주장되는 설로서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조세부담 능력이 작으며, 수년간의 가격변동에 따라 실현된 것을 일시에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자본이득은 인플레이로 인한 명목소득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의 원본을 침해하게 되어 재투자를 곤란하게 한다. 셋째, 이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양도를 주저하게 만들어 투자를 동결시킴으로써 자원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한다. 넷째,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자금이 지하경제나 귀금속 등 비생산적인 투자로 이동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섯째, 자본이득은 일시적이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 수입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한계과세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찬반론의 주장에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이득은 그 속성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매년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

5) Cunningham & Schenk(1993), p. 326

기 때문에 경감 또는 우대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과세론 또는 절충과세론이 주장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포괄적 소득세 이론에 따라 과세하면서 과세반대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2. 자본이득 과세의 효과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윤계섭(1990), 광태원(2000), 노영훈(2002), 이인실(2003), 최경수(2003) 등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JCT(1997), OECD(2006)도 주식양도차익과세와 관련된 이슈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자본이득과세와 관련된 이슈들은 세수확보, 동결효과와 관련된 효율성,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저축과 투자의 장려, 납세협력비용 및 징수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정책적인 고려에서 자본이득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금이 개인의 포트폴리오 선택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자본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다시 정리하여 소개한다.

가. 미시적 효과

1) 동결효과(lock-in effect)

자본이득과세의 실시 또는 세율 변화가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동결효과이다. 자본이득과세는 주가가 올라 양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의 실현을 이연시키는 반면, 주가의 하락으로 양도손실이 기대되는 경우, 이를 실현시켜 손실공제를 받고 자 하는 유인을 주기 때문이다. 동결효과에 의하여 특정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본이득세를 커버할 만한 높은 수익률의 투자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그만큼 저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 §1014에 의하여 상속시 상속자산의 취득가격은 상속 당시의 시장가격이 되기 때문에⁶⁾ 주식 등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결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조항을 갖게 된 것은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처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⁷⁾.

자본이득세가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 자본이득세의 부과는 동결효과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를 상쇄하고도 남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세원의 확보, 배당은 과세되는데 자본이득은 비과세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 방지,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의 제고 등이 그러한 이유이다⁸⁾.

한편 동결효과와 관련하여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⁹⁾와 성장효과(growth effect)¹⁰⁾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자본화효과는 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에 투자할 때 그 주식으로부터 발생될 미래수익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자본이득세가 부과됨으로써 해당 주식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동결효과는 주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본화효과와 동결효과는 주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인 영향은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성장효과는 기업의 예상 성장성이 주식평가의 한 요소가 되기

6) 이러한 현상을 basis-up이라고 한다.

7) Cunningham & Schenk(1993), p. 348

8) OECD(2006), p. 12

9) Dai 외(2008) 참조.

10) Haugen & Wichern(1973) 참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성장에 따른 예상수익률을 감소시키게 되고, 따라서 주식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동결효과가 상승장에서 주식의 공급을 줄이고, 하락장에서는 주식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주가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성장효과는 자본이득세 때문에 상승장에서 주식수요를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게 된다.

2) 위험감수효과(risk-taking effect)

세금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없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선택하였을 위험의 정도를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변함없이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세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을 줄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선택에 변화를 주게 된다. 반면 자본손실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위험 부담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자본손실을 전액 허용한다면 정부가 투자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효과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본손실의 공제는 어떤 형태로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의 보험효과는 제한적이다. 어쨌든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는 투자자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3) 결집효과(bunching effect)

자본이득을 발생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실현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수년에 걸친 소득을 일시에 실현시키면 누진과세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를 결집효과라고 부른다. 결집효과는 누진과세제하에서 이연에 의하여 세부담 구간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만일 발생기준으로 과세하거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기준

과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세행정상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단일 비례세율의 적용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자본이득에 대한 장기우대세제는 이러한 결집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하겠다.

반면 세부담을 이연시킴으로서 얻는 이득을 생각한다면 결집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Cunningham & Schenk(1993)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¹¹⁾. 매년 \$50씩 자본이득이 생기는 경우를 상정하자. 만일 투자자가 25% 세율구간에 속한다면 발생주의로 과세할 때 매년 \$1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매년 \$12.5의 세금을 10년간 납부할 경우, 7.5%의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구하면 \$85.8이 된다. 반면 10년 후 쌓인 \$500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40%의 세율구간에 속하게 되어 \$200의 세금을 낸다고 할 경우, 동 세금의 현재가치는 \$97.03로서, 외견상으로 보이는 60%(\$75)가 아닌 13%(\$11.23)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결집효과가 있다. 만일 할인율이 더 높고, 이연기간이 더 길다면 이러한 차이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나. 거시적 효과

1) 저축과 투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자본이득세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동 세금의 부과가 저축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전달 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찌기 David(1964)¹²⁾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자본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하지만,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자금유입이 실질적 연결고리를 통하여 투

11) Cunningham & Schenk(1993), p. 328 각주 35 참조.

12) David(1964), p. 298

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만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뿐이고, 실물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어 결국 주식 수익률이 하락하여 자금유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Bhatia(1972)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자본이득이 소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투자에는 미미한 영향만을 준다. 투자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만큼, 경제성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세율 인하가 기대수익률을 상승시켜 투자를 촉진하게 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투자촉진까지 전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나라들이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대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장기저축의 장려가 투자 촉진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³⁾.

2) 인플레이효과

일반적으로 자본이득과세는 명목이득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에 의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인플레이가 매우 심한 경우 자산의 실질가치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인플레이 기간 동안에 누적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하여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예를 들면,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 인플레이에 의하여 실제 상환부담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상환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도 한다. 인플레이 효과에 대

13) OECD(2006), p. 14

해서는 indexation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나, indexation도 왜곡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있다¹⁴⁾. 자본이득에 대하여 indexation을 적용한다면 배당이나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indexation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3) 세수효과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이나 인하는 세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986년의 미국 세제개혁을 전후하여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세율을 인하하면 동결효과에 의하여 지연되었던 자본이득의 실현이 늘어나서 자본이득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세율 인하는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따라서 결국은 실증적 연구를 통한 해답이 요구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본이득세와 세수의 관계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Feldstein 등(1980)은 자본이득세율의 인하가 자본이득의 실현을 증가시켜 세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본 반면, Minarik(1984)은 자본이득세율의 인하가 유가증권을 통한 자본조달을 촉진하기는 하나, 세수의 증가를 가져올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Auten & Clotfelter(1982)는 주식뿐 아니라 모든 자본자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자

14) 미국 국세청 청장을 지낸 Kurtz(1984)는 indexing으로의 전환에 따른 과세행정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본이득에서 인플레이션을 indexing에 의하여 제거하더라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경상소득에 대한 세율과 같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모기지 등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indexing에 의하여 이자지급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왜곡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Ricketts(1990)도 자본자산에 대해서만 indexing을 적용하고 보다 전통적인 저축수단에 의한 소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게 되어 형평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본이득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tiglitz(1983)는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의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조세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나 장기적으로는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자본이득의 실현을 증가시켜 조세수입이 늘지만, 미래의 조세수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조세회피를 시도하기 때문에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Auerbach(1989)는 동결효과라든가 투자유인이 줄어드는 등의 자본이득세에 의한 부작용은 세율인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반대로 세율인하는 조세재정거래라든가 이윤의 유보 유인 등을 더욱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덜기 위한 몇 가지 옵션¹⁵⁾을 제시하지만, 결국 자본이득세율의 인하가 정부 세수를 증대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짓고 있다.

Ricketts(1990)도 의회와 행정부의 연구를 인용하여 자본이득세율의 인하는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⁶⁾. 세율인하에 따라 자본이득의 실현이 증가하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증가가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충분히 상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율인하는 세수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재정적자에 당면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현명한 정책이 될 수 없으며, 자본이득세율의 인하 때문에 다른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학문적인 실증연구의 결과가 모두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연구는 자본이득세율의 인하는 궁극적으로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 연구는 자본이득세율의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았으며, 자본이득세율의 인하가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이라

15) 예를 들면, 인플레이 인덱싱,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 정산, 발생주의 과세 등이 있다.

16) Gravelle(1987), Kiefer(1988), CBO(1988), JTC(1989) 등

고 본 연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목적이 세수확보라는 것을 서베이 결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¹⁷⁾.

3. 선행연구

가. 해외연구

해외에서는 자본이득세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구의 주제를 자본이득세로 크게 본 경우와 주식양도차익과세에 국한한 경우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본이득세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이론적 가설의 입증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자본이득세와 자본이득실현 반응도와의 관계 또는 자본이득세로 인한 조세제정거래 관련 연구, 자본이득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변동 관련 연구들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로 연계성이 있는데, 자본이득세율의 변화가 동결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자본이득세가 주가 및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보자. Seyhun & Skinner(1994)의 연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발생하는 거래(tax-induced trading)가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세의 부과는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당히 적은 비중(5~7%)의 투자자들만이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장단기 세율 차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이득세율의 변화가 주

17) OECD(2006), pp. 8~9

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반면 Collins & Kemsley(2000)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본이득세율이 낮아지면 해당 주식이 가져올 미래의 순현금흐름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의 주가에는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자본이득세율과 주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 자본화효과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Jin(2006)은 자본이득세의 동결효과를 검증하고, 그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세에 민감한 투자자(tax-sensitive client)'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매도 결정을 할 때 누적된 자본이득(cumulative capital gains)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다는 결과가 나왔다¹⁸⁾. 이러한 동결효과는 '조세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경우, 특히 대규모 깜짝 실적(large earnings surprises) 기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즉 자본이득세 부담을 염두에 둔 투자자는 누적자본이득이 가능한 커지도록 동결효과에 따른 매매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양이나 음이나에 따라 주가가 받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주가에 대한 가격 압력은 차익거래를 위한 비용이 클수록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Dai 외(2008)는 자본이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와 동결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¹⁹⁾. 자본화 효

18) 고객의 대부분이 비과세투자자로 구성된 기관투자자의 경우 매도의사결정과 누적자본이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19) Dai 외(2008)는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 연구 가운데 Guenther & Willenborg(1999), Lang & Shackelford(2000), Ayers et al.(2003) 등은 자본이득과세가 주가와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들이고, Feldstein et al.(1980), Landsman & Shackelford(1995), Reese(1998), Poterba & Weisbenner(2001), Blouin et al.(2003), Jin(2006), Ellis et al.(2006), George & Hwang(2007) 등은 자본이득세가 주가와 수익률을 상승시킨다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화효과와 동결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그들의 연구가 최초라고 주장하였다.

과는 세금으로 인하여 주식의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동결효과는 세금 때문에 주식매도를 자제하므로 주식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화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주식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동결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경우에는 주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론적으로 어느 효과가 더 우세할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자본이득세율의 변화가 이루어질 당시의 경제 상황과 주식의 성격—해당 기업의 배당정책, 성장 가능성, 세금에 민감한 주주의 비율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본이득세율의 인하를 초래한 「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의 시행을 전후하여 자본이득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율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 이전의 기간에는 자본화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시행 이후에는 동결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시행시기를 전후하여 주가등락에 관계없이 주식거래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주었다. 동 연구는 1997년의 세법개정 시기에 국한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자본이득세의 변화가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하는 또 하나의 연구 결과이다.

투자자의 성향별 반응을 연구한 결과로는 Burman 외(1994)가 있다. 그들은 자본자산매매에 관한 미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86년의 세제개혁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응을 실증분석하였다. 1986년의 개혁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폐지하여 장단기 구분을 없애는 대신, 세율을 다소 낮추어 28%로 통일하였다²⁰⁾. 그 결과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율의 단기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장기자산의 매도가 1986년 말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장기보유 주식의 처분이 그 전년도에 비하여 7배가 증가하였다. 노년층은 상속 시의

20)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60%의 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20\% (= 50\% \times (1 - 0.6))$ 에서 28%로 인상되고, 단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50%에서 28%로 낮추어졌다.

basis-up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반면 단기자본이득의 실현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손실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이득과는 반대의 행태가 나타났다.

한편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Somers(1948)는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주가의 안정성과 위험자산투자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간단한 수요·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주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위험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Gemmill(1956)은 Somers(1948)의 결과에서 주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림과 수치 예를 이용하여 양도차익과세가 주가의 안정성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장래의 기대가격, 다른 자산의 상대가격, 투자가의 목적, 투자충액의 변화 등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avid(1964)는 양도차익에 대한 우대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경제성장, 안정,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한다는 일반적 주장을 비판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도차익과세가 투자가로 하여금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Haugen & Heins(1969)는 주식양도차익과세도 발생기준으로 과세하면 주가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을 주식가격 결정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Haugen & Wichern(1973)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발전시켜 주식양도차익과세에는 주가를 불안정화시키는 동결효과²¹⁾ 외에 역으로 안정화시키는 '성장효과(growth effect)'도 있다고 주장한다. 성장효과란 성장성이 주식평가의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세의 부과가 성장예상의 변화에 따른 주가의 반응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세금의 부과가 이를 억제하여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주가변동의 폭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동결효과와 성장효과에 따른 영향은

21) 동결효과는 하락장세에서는 주식공급을 증가시키고, 상승장세에서는 주식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가를 불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양자간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모델을 통하여 보여 주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안정화 효과를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동결 효과가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에 대한 반론의 기본이론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의 하나는 동결효과에 대한 것이다. 동결 효과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인 분석은 Dyl(1977)을 들 수 있다. 그는 주가상승과 하락에 따라 주식을 그룹으로 나누고,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으로 분석을 행하였는데, 매년 12월에는 주식시장 전체의 거래 상황의 변동에 의해 설명할 수 없는 개별적 변동인 비정상거래(abnormal trading)가 있기 때문에 동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Lakonishok & Smidt(1986)는 Dyl(1977)의 분석을 세밀화하여 자본이득세제가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양도소득세제가 손실은 실현시키고, 이익은 이연하는 동결효과를 유발하게 되면 가격변화율과 거래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비조세적인 요인은 투자자로 하여금 이익은 실현하게 하고, 손실의 실현은 이연하게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격변화율과 거래량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그들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계절적으로 12월에 가격변화율과 거래량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1월에는 반대로 양(+)의 상관관계가 강한 것을 보여 동결효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전반적으로는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비조세적인 요인이 투자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일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결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大野裕之(2002)가 있다. 비정상회전율(abnormal turnover rate)을 사용하여 시장 전반의 평균적 회전율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회전율이 유의적으로 괴리가 있다면 특정 주식의 개별적 요인이 있는 것이고, 이

러한 현상이 특히 연말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고 있다. 주가의 상승이 크면 클 수록 연말에 자본이득세를 납부할 확률도 커진다. 따라서 차익실현을 그 다음 해로 늦추어 과세이연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가상승 종목의 경우에는 12월 회전율이 낮아진다.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대체로 다음 해 1월에 차익실현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동결효과가 있다면 12월의 회전율과 익년 1월의 회전율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大野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i) 주가변화율과 12월의 비정상 회전율을 비교하고 (ii) 12월과 익년 1월의 비정상 회전율을 비교하며, 각각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으로 통하여 살펴보았다.

동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日經지수를 구성하는 208개 주식의 2000년도 주가변화율을 사용하였으며, 비정상 회전율의 비교는 2001년 1월을 추가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동결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大野는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비조세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본이득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86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1986년의 근본적 세제개혁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 가운데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동 세제개혁은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우대세제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투자의 한계수익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의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수익의 실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 있어서 과연 우대세제의 폐지가 세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즉 장기투자에 대한 세율이 단기투자와 마찬가지로 인상됨에 따라 장기투자자들이 이익의 실현을 유보시키면 세수증대의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율변화에 따른 자본이득의 실현 여부와 이것이 자본이득세 세수 및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1986년 이전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Feldstein 외(1980)는 조세가 자본이득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하면 그것이 세수의 증가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자본이득의 실현을 연기시켜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지 살펴보았다. 1973년분 미국 개인들의 세무신고서를 미시자료로 사용하여 주식매도가 자본이득세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CG/DV = \beta_0 + \beta_1 TR + \beta_2 AG + \beta_3 GI + \beta_4 DV$$

여기서 CG : 실현된 자본이득

DV : 배당금

TR : 한계세율

AG : 연령 더미(65세 이상일 경우 면세)

GI :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추정결과 $\beta_1 = -62.4$ 가 나와 자본이득의 실현이 세율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자본이득세율을 낮추면 자본이득의 실현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Feldstein & Yitzhaki(1978)의 결과를 확인한다고 하였다²²⁾. Feldstein & Yitzhaki(1978)에서는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세율변화가 보통주(common stock)의 매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매도하고 재투자하지 않는 경우(net sale)보다 보통주를 매도하고 다른 주식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사들이는 경우(switch)에 특히 세율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Feldstein은 1978년의 연구는 조세가 보통주의 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고 하고, 1980년의 연구는 조세가 자본이득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Minarik(1984)은 Feldstein 외(1980)의 추정기술상의 오류를 들어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으며, 이를 수정할 경우 자본이득세율의 인하가 자본이득의 실현을 유도하는 정도는 앞서 연구의 결과보다 훨씬 둔감하며, 이로 인하여 세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Auten & Clotfelter(1982)는 횡단면 분석이 항구적 세율변화와 일시적 세율변화²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본이득의 실현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일시적 세율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항구적 변화에 대한 민감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구적인 세율변화의 효과는 Feldstein 외(1980)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작으며, 항상 유의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Auten & Clotfelter(1982)의 경우에는 주식뿐 아니라 모든 자본이득을 대상으로 한바, 이러한 피설명변수의 차이가 앞서 Feldstein 외(1980)의 결과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쨌든 자본이득세율의 인하는 장기자본이득의 실현에 상당한 증가를 가져오지만, 이러한 결과가 전체 세수의 증가로까지 연결되는지는 역시 불분명하다.

Stiglitz(1983)도 정부 세수에 대하여 Auten & Clotfelter(1982)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본이득세율의 인하는 장기자본이득의 실현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단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23) Feldstein 외(1984)는 Minarik(1984)의 지적에 대하여 같은 저널에서 표본추출상의 편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추정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왔을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4) 일시적 세율변화란 개인적으로 한계세율이 매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낮을 때, 자본이득을 실현함으로써 장기적인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항구적인 세율 변화란 자본이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세율변화이다.

보았다. 그 이유는 (i) 장래에 지불할 세금을 현재 납부하는 것일 수 있다. (ii) 이득의 실현이 손실과 상계를 위한 것이라면 납부할 세금을 없을 수 있다. (iii)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보유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1986년의 세제개혁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연방정부의 세수에 긍정적일까 하는 물음에 대하여 Cook & O'hare(1987)는 그렇다고 보았다.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으로 투자자들이 이득실현을 이연시킨다면 연방정부의 자본이득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으나, 대체 투자를 통하여 세수의 감소가 보충될 수 있으며 또한 세제개혁이 단행된 이후 투자자의 반응에 따른 장단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율인상에 따른 자본이득세수는 감소하더라도 연방정부의 전체 세수는 비록 정태적인 세수증대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uerbach(1988)는 자본이득세율 변화에 따른 자본이득 실현에 대한 탄력도를 추정하는 많은 연구에 대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연구 논문을 썼다. 이에 따르면 많은 연구결과가 자본이득세율 변화에 따른 자본이득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탄력도가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탄력도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자본이득과세의 세율과 정부 세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i) 과거의 횡단면 분석들은 그 성격상 일시적 세율 변화와 항구적 세율변화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ii) 과거의 패널 분석들은 자본이득세율의 변화에 대한 횡단면적인 반응의 상당부분이 세율의 장기평균과의 괴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iii) 횡단면 분석과 일부 패널 분석은 세율에 대한 반응을, 동일한 시스템하에서 다른 세율에 처해 있는 개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식별한다. 만일 다른 세율에 처한 개인이 관찰되지 않는 부분(예를 들어, 위험성향)에 있어서도 다르다면, 그것이 이득의 실현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들

이 무의미해진다. (iv) 과거의 시계열 분석들은 계량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부주의와 구조적 모형의 결여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어떤 시계열 분석도 1986년에 이익실현이 갑자기 2배로 증가한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도 예상된 자본이득세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치가 고려된다면 자본이득세율의 변화에 대한 이익실현의 항구적 반응도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Hendershott 외(1991)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의 자본이득세율 인하가 세수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가계가 결정하는 자본이득의 실현 정도(실현이득/발생이득)와 기업이 결정하는 배당 여부(배당/사내유보)에 따라 6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세수와 순복지효과를 추정하였다. 결과는 개인의 자본이득 실현정도가 세율에 매우 민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복지효과는 배당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세율인하가 세수를 감소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동결효과에 의한 왜곡의 감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회피와 관련한 선행연구로서 Poterba(1987)는 한계세율이 높은 계층일수록 자본이득세가 많은 탈세를 조장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Auerbach, Burman and Siegel(1997)은 Poterba(1987)의 연구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자본이득세에 대한 조세회피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히고 있다.

조세회피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 외에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이득세제 과세방식의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Auerbach(1991)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가 자본이득에 대하여 실현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함으로써 동결효과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나타나고, 이는 자본시장

의 비효율성으로 연결됨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적절하나, 발생주의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됨으로써 납세자의 현금흐름을 압박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는 실현주의에 기반하여 과세하되, 이연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과세이연의 유인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식의 과세방안을 제안하였다²⁵⁾. 동 방안은 Vickrey(1939)가 이미 제시한 방안과 유사하나, 이득의 실제 발생 패턴을 파악할 필요없이 시장이자율 같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국내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자본이득세 관련 연구 가운데, 유가증권 양도차익 등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이득과세연구 중에 초기연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윤계섭(1990)은 자본이득과세의 효과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과세기술상의 문제, 세부담의 과중함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병행 도입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한다. 소액투자자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면세점을 두며,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이월은 1년으로 한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취득가액의 특례제도를 인정한다. 장기투자의 경우에는 세율면에서도 우대하고, 세율수준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거래세는 자본이득과세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폐지한다. 또한 동 연구는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

25) Auerbach는 이러한 소급적 과세 방식을 Retrospective tax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입한 나라의 사례로 일본과 대만을 들고 있는데, 이들의 비교를 통하여 성공적인 과세제도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용진(1992)은 과세 공무원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과세 가능성과 과세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자본이득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의 양도소득과세제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하다가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 시행 초기에는 종합과세방식보다 신고분리과세방식을 취하면서 이자나 배당과 같이 원천분리과세를 허용할 것,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양도손실은 당해 연도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 세율 구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등을 감안해서 형평을 유지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허성관·홍순복(1997)은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식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다만 연구 대상으로 1991년부터 과세되고 있는 비상장기업 가운데 자료 취득이 가능한 장외등록법인을 택하였다. 장외등록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침은 1990년 8월에 공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 실시 선언이 주식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가설로써 검정하였다. 정보효과가설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포가 주식거래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고, 동결효과가설은 실시 후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라는 예상, 조세회피가설은 실시 공포 이후 미실현 주식양도차익 발생 주식의 매각이 늘어나 미실현 양도손실 발생 주식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가설 검증의 방법으로는 거래량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거래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본 각 기업의 거래량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실시 이전과 이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가설들을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가 상장주식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유보하였다.

곽태원(2000)은 우리나라 증권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증권양도차익과세가 이루어져야 조세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cash flow base 과세제도를 제시한다. 증권거래 계좌별로 과세단위기간 동안에 출금한 금액과 입금한 금액의 차이를 기간 중 실현된 양도차익으로 보고 여기에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입초기에 원천분리과세제도를 택한다고 하여도 세무행정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복잡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안이다.

전영준 외(2000)는 1998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다양한 뮤추얼펀드 등 신상품의 등장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주식투자가 보편적인 투자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므로,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정상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영훈(2002)은 국제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비교하였다. 자본이득 과세체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한 후, 국가군별로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고, 국가별 자본이득과세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최경수(2003)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고루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당위성 및 선행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대주주 기준율과 기준금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과세베이스를 넓혀나갈 것, 완

납적 성격의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신고분리과세제도와 병행 실시할 것, 장·단기에 따른 우대제도를 도입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할 것, 원천분리과세의 경우 세율은 비례세율로 하되 신고분리과세의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 손실 공제는 기간별 주식의 양도차익 내에서만 공제를 인정하고 여타 소득과의 상계는 인정하지 말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인실(2004)은 과세대상의 범위 및 세율 적용 등에 있어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성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제 정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자본이득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본격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은 경제상태에서는 노동의 저량 및 자본의 저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가설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식가격에 대해서는 경제상태일지라도 영향을 주며, 배당률과 개인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충분히 낮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오히려 주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자본이득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자본이나 노동 저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어떤 의미로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의 종합소득에의 합산과세 방향이 소득세제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인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창균 등(2006)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심각하게 편중화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각종 자산의 조세체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 자산 관련 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향후 세제 정비 방향은 먼저 자산 간 구분 없이 단일과세의 원칙하에 정비하여야 하며, 주택 및 부동산의 경우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현행 우리 자산이득 관련 과세제도가 예금자산을 다른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비해 중과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과 주식이나 주택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도입 혹은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윤 등(2006)은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조망하면서 금융자산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2가지인데, 먼저 현행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 합산기준 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조세 부담기능이 떨어지며, 저소득층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주민세 포함 15.4%)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특히 유가증권양도차익이나 파생금융상품소득과 같이 비과세하는 부분 때문에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공평성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개편방안에서는 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차손익 및 파생금융상품손익을 포괄하는 금융자산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합산과세할 것과 부의 무상이전을 통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영구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모순점 보완을 위해 부의 무상이전을 소득의 실현시기로 보는 방안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상이전(상속·증여) 자산의 과세제도에 대해 채현석(2007)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로 인해,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 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오는 과세상 불공평성이 발생하며, 무상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보다 장기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자산의 동결효과를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커지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무상이전자에게 무상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동시에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증여세를 현행대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개편은 조세부담이 종래보다 과중해져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무상취득자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취득가액승계제도’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안경봉·정희선(2006) 역시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승계제도를,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의 도입을 주장하고, 차선택으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모두에 대해 ‘취득가액승계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처음에는 신고분리과세제도를 택하고, 원천분리과세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등 제도를 시행한 후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본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를 보면 오연천(1993)은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하여 종합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오윤 외(2006)도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종합과세할 것을 제시한다. 일본의 石弘光(1993)도 일본에서 납세자 번호제도 도입 등의 선행조건과 함께 궁극적으로 종합과세로 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소득에 대한 이원소득과세제도의 등에서 보듯이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황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 말에 12조원에 불과하던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2007년 말에는 79배에 달하는 952조원을 기록하였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를 경험하면서 2007년 7월에는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말에는 577조원으로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 그리고 국제경제 공조의 결과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하여 2009년 말 888조원을 기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의 연간 거래량은 1986년 93억주에서 2009년에는 1,229억주로 13배에 머물렀으나, 그동안의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은 1986년의 9조 6천억원에서 2009년에는 무려 150배에 달하는 1,466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Ⅲ-1〉 유가증권시장 규모 추이

(단위: 사, 백만주, 십억원)

	회사수	종목수	상장주식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1986	355	485	11,994	9,273	9,598
1987	389	603	26,172	5,943	20,494
1988	502	970	64,544	3,038	58,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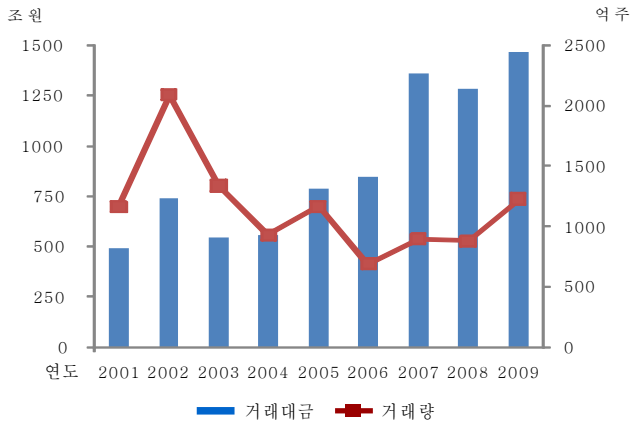
〈표 III-1〉의 계속

(단위: 사, 백만주, 십억원)

	회사수	종목수	상장주식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1989	626	1,284	95,477	3,398	81,200
1990	669	1,115	79,020	3,612	53,455
1991	686	1,013	73,118	4,094	62,565
1992	688	1,014	84,712	7,064	90,624
1993	693	1,045	112,665	10,398	169,918
1994	699	1,089	151,217	10,911	299,772
1995	721	1,122	141,151	7,656	142,914
1996	760	1,143	117,370	7,785	142,642
1997	776	958	70,989	12,125	162,282
1998	748	925	137,798	28,533	192,845
1999	725	916	349,504	69,359	866,923
2000	704	902	188,041	73,785	627,133
2001	689	884	255,850	116,417	491,365
2002	683	861	258,681	209,168	742,150
2003	684	856	355,363	133,876	547,509
2004	683	844	412,588	92,851	555,795
2005	702	858	655,075	116,440	786,258
2006	731	885	704,588	68,937	848,490
2007	746	907	951,918	89,506	1,362,877
2008	765	928	576,928	88,149	1,287,165
2009	770	925	887,935	122,871	1,466,275

자료: KRX 한국거래소, 『KRX Market』 각 호.

[그림 III-1] 유가증권시장 규모 추이



자료: KRX 한국거래소

또한 코스닥시장의 경우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다음 해인 1997년 말에 7조원에 불과하던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이 2009년 말에는 12배에 달하는 86조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연간 거래량은 1997년의 4,700만주에서 2009년에는 1,968억주로 무려 4,187배에 달하였으며, 거래대금은 1997년의 1조 1,660억 원에서 2009년에는 455배에 달하는 531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III-2> 코스닥시장 규모 추이

(단위: 사, 백만주, 십억원)

	회사수	종목수	상장주식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1997	359	408	7,069	47	1,166
1998	331	350	7,892	206	1,607
1999	453	474	98,704	8,674	106,809
2000	604	615	29,016	51,050	578,490
2001	721	732	51,818	94,393	425,180
2002	843	856	37,403	78,182	294,902

〈표 III-2〉의 계속

(단위: 사, 백만주, 십억원)

	회사수	종목수	상장주식 시가총액	거래량	거래대금
2003	879	894	37,375	100,835	266,383
2004	890	907	31,149	71,441	155,696
2005	918	931	70,898	148,890	446,378
2006	963	975	72,137	134,051	427,505
2007	1,023	1,034	99,980	151,252	500,748
2008	1,038	1,049	46,186	125,464	308,989
2009	1,028	1,036	86,103	196,771	530,961

자료: KRX 한국거래소, 『KRX Market』 각 호.

[그림 III-2] 코스닥시장 규모 추이



자료: KRX 한국거래소

2.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²⁶⁾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주체에 따라, 그리고 각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 주식의 유형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다.

1)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주주의 경우는 주식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²⁷⁾. 첫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의 세율로 과세된다. 둘째, 중소기업의 주식은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셋째, 그 이외의 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여기서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²⁸⁾.

- ①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고 함) 및 그와 친족 또는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는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②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

26) 외환은행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론스타의 경우에서 보듯이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문제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문제는 다루지 않고 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2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

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소액주주의 경우는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²⁹⁾. 첫째, 소액주주가 상장법인³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둘째, 소액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면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셋째, 소액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외의 주식이면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표 III-3〉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단위: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개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 주식		30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법인		모든 주식		법인소득으로 과세

3) 법인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법인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

29)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104조 제1항

30) 여기서 상장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통칭한다.

므로 거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양도차익은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다.

4)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주식양도가액의 0.5%로 하고 있다³¹⁾. 그러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0)의 세율로 하는 등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의 경우는 0.15%,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은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³²⁾. 그 외에 증권거래소에 양도되는 상장주식에 한하여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다³³⁾.

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34), 35)}.

31) 증권거래세법 제8조

32)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3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35) ①은 2009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 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④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⑤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³⁶⁾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⑥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⑦ 증권거래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³⁷⁾.

②~⑦은 2012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다. 주식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된다³⁸⁾. 과세될 양도차익의 계산은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모두 계산방법이 동일하다. 주식을 판 가격(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 매수할 때 부담한 거래수수료, 팔 때 부담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거래수수료를 차감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begin{aligned} \text{양도차익} &= \text{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text{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quad - \text{증권거래세} - \text{농어촌특별세} - \text{거래수수료} \end{aligned}$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³⁹⁾. 또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⁴⁰⁾.

37)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4항

3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39)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과 과세연도별로 통산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구분별 양도차익과는 통산하지 못한다⁴¹⁾. 이 때 주식은 종목과 무관하며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경영상태가 불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주가가 하락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의도적으로 대량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손을 실현하여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 내지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⁴²⁾.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표준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즉,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begin{aligned}\text{양도소득 과세표준} &= \text{양도소득금액} - \text{양도소득 기본공제}(250\text{만원}) \\ \text{양도소득 산출세액} &= \text{양도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양도소득세율}\end{aligned}$

3. 주요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가. 미국

미국은 연방소득세법이 신설된 1913년부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 경상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1916년 이전까지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1916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던 단계를 거쳐 일정 범위 내의 경

40)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41) 소득세법 제102조

42) 김완석(2010)

상소득과 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1922년부터 장기 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편입 및 세율 적용에 있어 우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장기보유자본이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였고, 양도차익의 장·단기 구분 없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다⁴³⁾. 그러나 1990년에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최고세율(31%)이 신설되었는데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조치가 다시 부활하였으며, 1993년의 세법 개정에서 장기보유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우대조치를 확대하였다. 그 후 1998년 「IRS구조조정및개혁법」(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과 2003년 「일자리와성장을위한 감세조정법」(The Jobs and Growth Tax Relief and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현재와 같은 과세제도가 정립되었다.

1) 양도차익 계산방법^{44), 45)}

주식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주식양도가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인 매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매입비용은 주식취득원가 외에 거래 수수료, 인지세 및 거래세 등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만일 동일 법인의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가격에 매입하였다면, 그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주식 매입비용은 선입선출법(first in first out: FIFO)에 따라 계산한다.

주식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의 장·단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43) 세율은 15%, 28%의 2단계였다.

44) IRS(2006)

45) IRC §1212. <http://www.irs.gov>, "Capital gains tax in the United States", 2007. 7. 3.

보유기간(holding period)인데, 주식을 거래소 혹은 장외에서 매입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장기 양도차익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일로부터 1년 1일이 경과해야 가능하며, 장기 양도차익에 대해 경감세율 및 과세표준 편입비율의 축소 등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인과 법인은 손실 처리방법이 다르다. 법인의 경우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통상 소득과의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은 주식 관련 양도손실과 양도차익 합산으로 순양도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3,000달러(부부 별산 신고시에는 1,500달러)를 한도로 경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⁴⁶⁾.

법인의 경우 해당연도의 주식양도손실 미공제잔액에 대해 과거 3년간의 주식양도 차익에서 순차적으로 소급공제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이월공제(carry-over)가 가능하다. 개인은 순양도손실이 3,000달러보다 큰 경우 미공제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carry-over)되며, 모든 손실이 완전히 상계될 때까지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다.

2) 세율 및 장기우대 여부^{47), 48)}

미국의 장기자본이득 우대세제의 변천사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⁹⁾. 미국은 1913년 소득세를 도입할 당시부터 증권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1913~1921년 사이에 증권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같은 세율로 과세되었다. 양도손실은 1916~1918년 기간 동안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액 공제가 인정되었으며, 1919~1923년 기간 동안에는 경상소득에 대해서도 전액공제가 인정되었다. 그 후 증권양도소득

46) IRC § 1211(b)

47) <http://beginnersinvest.about.com/cs/capitalgainstax/a/061703a.htm>

48) <http://www.Bankrate.com/>, "Capital gains taxes: There's more than one rate", 2007.

49) 박태원(2000) pp. 222~224 참조

은 계속 과세대상이었으나, 어떤 경우는 보통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어떤 때는 양도소득의 일부만을 과세베이스에 포함시키는 등 경상소득에 비하여 가볍게 과세되었다.

미국의 증권양도차익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은 1942년 이후라고 하겠으며, 이때부터 장단기를 구분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장단기 구분 기준은 1976년까지는 6개월, 그 후 9개월, 12개월 등으로 변화가 있었다.

단기양도차익은 경상소득과 같이 종합과세하고, 장기양도차익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다⁵⁰⁾. 양도차손은 양도차익과 전액 상계 가능하였으나, 1964년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상소득과도 상계를 허용하였다. 1978년에는 장단기 구분의 기준을 1년으로 변경하고, 단기차익 전액과 장기차익 40%를 경상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다.

1986년에 근본적 조세개혁을 통하여 장단기 구분을 폐지하고 양도소득도 경상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이어, 1990년에는 경상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8%로 고정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조치가 다시 부활하였다. 1997년에는 장단기 구분 기준을 18개월로 변경하고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1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양도소득도 18%에서 8%로 인하한 세율로 과세하였다. 1998년부터 장단기 구분 기준을 다시 1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기양도소득은 경상소득과 같이 15~39.6%의 세율로 과세하였다. 양도손실은 양도소득과 전액 상계를 허용하였으며, 연간 3,000달러까지 경상소득에서 손실공제를 허용하고, 소급 및 이월공제도 허용하였다. 종합소득세율 인하로 현재 단기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35%이다.

50) 예를 들어 과세대상의 50%만 과표에 포함하는 방식.

현재 미국의 주식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표 III-4>에서 보듯이 주식양도차익은 주식발행기업의 규모, 납세자의 주식보유 장·단기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III-4> 장·단기 보유 여부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

(단위: %)

자산 유형	적용 세율			적용 세율		
		2003.5.6~ 2007.12.31	2008.1.1.~ 2010.12.31.		2011.1.1.~ 2012.12.31.	2013.1.1~
단기 자본 이득 (1년 미만)	경상소득세율 10%, 15%인 납세자	10	10, 15	경상소득세율 15%, 28%인 납세자	15 28	15 28
	경상소득세율 25%, 28%, 33%, 35%인 납세자	25 28 33 35	25 28 33 35	경상소득세율 31%, 36%, 39.6%인 납세자	31 36 39.6	31 36 39.6
장기 자본 이득 (1년 이상)	경상소득세율 10%, 15%인 납세자	5	0	경상소득 세율15%인 납세자	1~5년 10 ¹⁾	10
					5년 이상 10 ¹⁾	10 ¹⁾
	경상소득세율 25%, 28%, 33%, 35%인 납세자	15	15	경상소득 세율 28%, 31%, 36%, 39.6%인 납세자	1~5년 20	20 23.8
					5년 이상 20 ²⁾	20 23.8

주: 1) 「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은 경상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납세자의 자본이득세율 10%를 2001.1.1부터 8%로 하향조정

2) 「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은 2001.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경상소득세율 15% 이상인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자본이득세율 20%를 2006.1.1부터 18%로 하향조정

자료: <http://www.taxfoundation.org/news/show/2088.html>

<http://www.treas.gov/offices/tax-policy/library/greenbk10.pdf>

납세자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경상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최고 35%, 2011년부터는 39.6%의 세율로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장기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상소

득세율 적용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0%와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2010년 기준으로 영세율(0%)이 적용되며, 25~35%의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장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한다⁵¹⁾.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2003년에 유보된 세율이 적용된다.

3) 손익통산 및 소급·이월공제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손익상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²⁾.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인과 법인은 그 취급을 달리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손실은 최대한 자본이득만큼만 공제할 수 있고, 경상소득으로부터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 이외의 납세자의 경우 단기자본손실은 단기자본이익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장기자본손실은 장기자본이익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기자본손실이 단기자본이익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장기자본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장기자본손실이 장기자본이익을 초과할 경우에도 그 초과분은 단기자본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도 남은 자본손실은 3,000달러(부부 별도신고 개인의 경우 1,500달러)까지 경상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미국 내국세법 §1212에서는 자본손실의 소급 및 이연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법인의 경우 순자본손실이 있을 경우, 과거 3년간의 자본이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 공제, 또는 향후 5년간 이연 공제가 가능하다. 순차적 공제란 예를 들면 소급공제의 경우, 순손실을 가장 가까운 과년도에 자본이익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손실 초과

51) 세액의 산출은 ① 과세소득에서 자본이득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자본이득에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합친 금액과 ② 과세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52) 홍범교(2005) pp. 27~29 참조.

분이 있으면 다음 과년도에 자본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소급 공제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운영이익이 순운영손실(net operating loss)로 바뀌거나, 기존의 순운영 손실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은 그 초과손실에 대해 연도 제한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단기손실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법인과 달리 자본손실을 이전 과세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다.

시가 평가되는 파생금융상품인 §1256 계약과 관련하여 법인 이외의 납세자의 경우, 순전히 §1256 계약거래에서 발생한 순손실이 있는 경우, 과거 3년에 걸쳐 소급 공제될 수 있으며, 동 공제금액은 40%는 단기자본손실로, 60%는 장기자본손실로 공제된다. 동 공제는 해당 소급 연도에 §1256 계약에서 발생한 순자본이익으로부터만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이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운영이익이 순운영손실로 바뀌거나, 기존의 순운영손실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영국

영국에서는 1962년 이전에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1962년부터 6개월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의 단기양도차익만 경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1965년 재정법(The Finance Act)에 의해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장기양도차익은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1971년부터는 주식양도차익의 장·단기 구분을 없애고, 모든 양도소득에 대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였다⁵³⁾.

그 후 1982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정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 물가연동공제(indexation allowances)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88

53) <http://www.hmrc.gov.uk/cgt/> 참조.

III.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7

년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이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25%, 40%)이 적용되는 종합과세제도로 개편되었다. 1998년 4월 이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체감적공제(Taper relief)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자본이득을 과세구간에 따라 20% 내지 40%의 저축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에 10%의 세율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1) 양도차익 계산방법

순과세대상양도차익(손실)(net chargeable gains(losses))은 자산처분가액에서 ① 각종 공제비용(allowable cost)과 ② 물가연동공제(indexation allowances) 및 기타 공제(other reliefs, taper reliefs 제외)분을 차감하고, ③ 주식양도손실(전년도 이월 공제분 포함)을 공제한 순자본이득(손실)(net gains(losses))을 기준으로 ④ taper reliefs와 ⑤ 매년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연간 비과세 기준 금액(annual exempt amount)을 감안하여 계산한다⁵⁴⁾.

① 각종 공제비용(allowable cost)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소요된 비용으로서, 수수료, 커미션 및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부대비용 그리고 세금 등이 해당된다.

②-1 물가연동공제(indexation allowances)

물가연동공제란 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조정하는 제도로써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text{물가연동공제} = (RT - RL) / RL \times \text{취득가액}$$

RT : 양도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RL : 취득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54) http://www.fool.co.uk/taxes/articles/cgt_shares.htm 참조.

이러한 인플레이션 조정은 자본이득금액은 감소시키나 자본손실 발생 시 손실액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공제제도는 1998년 3월 31일에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1998년 4월 5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한편 법인에게에는 물가연동공제가 여전히 적용되며, 물가연동공제 후 과세대상 자본이득에 법인세율(일반기업: 30%)을 적용한다.

②-2 기타 감면(Other Reliefs)⁵⁵⁾

기타 감면은 Tax Reliefs 이전의 과세대상자본이득(chargeable gain)을 감소시키거나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으로 대체자산을 구입하였다면 과세대상 자본이득은 취득비용만큼 감소하게 되며, 그 대체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rollover reliefs). 일부 공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나 일부는 공제요구가 있을 때만 주어진다.

③ 주식양도손실(손실처리방법)

주식양도손실은 보통 주식양도차익에 의해서만 상계되며,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양도손실은 Taper Reliefs 이전의 과세대상자본이득(changeable gain)에서 공제하며,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초과손실의 소급공제는 납세자 사망 후 발생한 양도손실이 아니라면 허용하지 않고 있다⁵⁶⁾.

④ Taper Reliefs

한편 물가연동공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1998년 재정법(Finance Act)에서 도입한 Taper Reliefs는 개인납세자가 1998년 4월 5일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대상 자본이득의 편

55) HM Revenue and Customs(2007) p. 75.

56) OECD(2006) p. 85.

III.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9

입비율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또한 과세대상 자본이득의 감소는 자산이 업무용이나 비업무용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받는다. 업무용자산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중 50%만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며, 2년 이상은 25%만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비업무용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로소 양도차익의 5%를 경감한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며, 1년씩 보유기간이 늘수록 5%씩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최대 40%까지 경감된다.

〈표 III-5〉 Taper Reliefs에 의한 자본이득의 과세대상 편입비율

(단위: %)

보유기간	1998. 4. 6 ~2000. 4. 5	2000. 4. 6 ~2002. 4. 5	2002. 4. 6~ 2008. 4. 5	
			업무용 자산	비업무용 자산
1년	92.5	87.5	50	100
2년	85	75	25	100
3년	77.5	50	25	95
4년	70	25	25	90
5년	62.5	25	25	85
6년	55	25	25	80
7년	47.5	25	25	75
8년	40	25	25	70
9년	32.5	25	25	65
	25	25	25	60

주: 1998. 4. 6.이전이나, 2008. 4. 6.이후 처분 자산에 대해서는 Taper Reliefs 혜택을 적용하지 않음.

자료: <http://www.hmrc.gov.uk/>, "Taper relief: table: Taper relief does not apply to disposals before 6 April 1998 or after 6 April 2008".

주식은 주식의 종류 및 대주주와 보유주체와의 관계에 따라 업무용 자산이 될 수도, 비업무용자산이 될 수도 있다. 개인납세자가 비상장주식(AIM⁵⁷⁾ 상장기업 포함) 또는 우리사주(employee scheme shares)

57)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KOSDAQ 시장과

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자산으로 취급한다. 반면 개인이 주주와 전혀 관련없는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비사업용 자산으로 취급된다⁵⁸⁾.

⑤ 연간 비과세 기준 금액(Annual exempt amount)

자본이득에 매년 허용되는 연간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10~2011년 개인의 경우 1만 100파운드이고 피신탁인의 경우 5,050파운드이다.

〈표 III-6〉 자본이득 연간 비과세 기준 금액

(단위: 파운드)

구분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개인 등	9,200	9,600	10,100	10,100
피신탁인(trustee)	4,600	4,800	5,050	5,050

자료: [#2](http://www.hmrc.gov.uk/rates/cgt.htm)

2) 세율 및 장기우대 여부

2010년 6월 22일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008/2009년 이후 적용해 오던 단일세율 18%를 적용하되, 그 이후에는 자본이득 발생 주체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우선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구간에 따라 18%와 28%의 이원화된 세율체계가 적용된다. 2010/11년 기준으로 과세구간이 고소득 구간(37,400파운드 이상)인 경우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신탁 및 사망자의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s of deceased persons)에게 2010년 6월 23일 이후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구간 관계없이 28%의 단일세율이 적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58) http://www.fool.co.uk/taxes/articles/cgt_shares.htm 참조.

용된다. 또한 기업가공제(entrepreneurs' relief)⁵⁹⁾를 적용받는 기업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III-7〉 소득세 과세구간별 자본이득에의 적용 세율

과세구간		2007~2008	2008~2009	2010. 4. 6~ 2010. 6. 22	2010. 6. 23~
single	£2,230 미만	10%	단일세율 18% 적용	18%	개인 (18%, 28%)
basic	£2,230~£34,600	20%			
higher	£34,600 이상	40%			

자료: <http://www.levicksaccountants.co.uk/>, "Post election budget 2010 : A Summary of the Chancellor's Statement", 2010. 6. 22.

<http://www.vey.com/uk>, "Emergency Budget June 2010 : Capital gains tax update".

미국이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영국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과세대상 편입비율을 경감시키는 Taper Relief를 1998. 4. 6~2008. 4. 5의 기간 동안 시행하여 세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2008년 4월 6일 이후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동일 혜택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⁶⁰⁾.

59) 기업가공제란 기존 자본이득세에 대한 Taper relief가 2008.4.5에 폐지되면서 2008. 4. 6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업이 기업체 혹은 기업자산 매각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범위까지 공제를 인정한다. 2010.6.23.부터는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파운드에서 500만파운드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http://www.taxassist.co.uk/News/Capital-Gains-Tax/HMRC-Tax-relief-for-Entrepreneurs-10119.html>)

60) 앞서 언급한 "entrepreneurs reliefs" 등이 기업가의 자본이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새로 시행된 제도이다.

3) 손익통산 및 소급·이월공제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양도손실은 보통 주식양도차익에 의해서만 상계되며,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양도손실은 Taper Reliefs 이전의 과세대상자본이득(changeable gain)에서 공제하며,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초과손실의 소급공제는 납세자 사망 후 발생한 양도손실이 아니라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 일본⁶¹⁾

일본에서는 1887년 소득세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원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여 왔다. 소득세법의 제정 당시에는 유가증권 양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으나, 194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와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종합과세원칙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1953년부터는 다시 유가증권 양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가 1987년의 세제개편을 통하여 1989년 4월부터 개인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게 되었다. 그 후 과세당국은 과세 강화를 위한 조정을 계속하여 왔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의 정착을 위한 전단계로 일정기간 병행되어온 증권거래세가 1999년 4월에 폐지되었고,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²⁾.

61)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shoto312.htm>) 자료를 번역 정리한 것이다.

62) 원천분리과세는 주식양도가액의 일정비율(5%)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간주익금에 20%(국세 15%, 지방세 5%)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며, 신고분리과세는 주식 등의 연간 양도손익 모두를 통산

III.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3

2001년에는 개인의 주식투자를 우대하는 세제지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월부터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신고분리방식으로서의 일원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예·저금에 과도하게 치우친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운용의 다변화를 도모화하고자 ‘저축에서 투자로’의 정책적 흐름을 가속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대세제가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도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인 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이익에 대해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기타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특정계좌제도(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이 연간 양도손익을 계산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이 특정계좌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계좌나 간이신고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계좌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계좌 내에서 연간 거래한 양도손익 및 배당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계좌에서의 양도손익과 상쇄되는 경우, 배당소득과 손익통산할 경우나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 양도차익 계산방법

양도손익은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수익금액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비용과 양도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text{양도손익} = \text{수입금액(양도가액)} - \text{필요경비(취득비 + 위탁수수료 등)}$$

하여 순익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26%(소득세 20%, 주민세 6%)의 단일세율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① 수입금액(양도가액)

수입금액이란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로 당해 연도에 취득한 수입의 금액을 말하며, 이 외에도 감자에 따른 교부금,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금, 합병교부금 등도 수입금액으로 간주한다.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이란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납입금이나 매입대금을 말하지만, 매입수수료⁶³⁾ 이외의 매입 시 명의개서료(名義書換料) 등 기타 주식을 취득할 때 사용한 비용을 포함한다. 즉, 취득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다.

그리고 동일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나누어 매입하고 그 주식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비는 총평균법에 준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한 1단위당 가격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A+B) / (C+D) = 1\text{단위당 가액}$$

- A : 주식을 최초로 매입할 때 총매입가액
- B : 주식을 최초로 매입한 후로부터 양도시까지의 총매입가액
- C : A 관련 총주식 수
- D : B 관련 총주식 수

그러나 주식의 취득형태가 특별한 경우, 즉 주식을 분할, 합병, 증자소득, 이익준비금의 자본산입, 이익소거, 감자 및 해산할 때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조정한다⁶⁴⁾. 예를 들면 해산 및 감자 시 보유한 주식 또는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text{취득가액} = & [\text{해산(감자)직전 소유한 주식(구주)} \text{ 1주당 종전 장부} \\ & \text{가액} \times \text{구주수}] - [\text{해산(감자)으로 분배받은 금전(신주} \\ & \text{제외)가액} - \text{분배금 중 간주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end{aligned}$$

63) 매입수수료에 대한 소비세도 포함한다.

6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4조~제117조.

〈표 III-8〉 동일종목 주식을 2회 이상에 걸쳐서 취득한 경우
취득비 계산사례

거래연도	거래내용	주식수(주)	단가(엔)	매입대금(엔)	매도대금(엔)
1년 5월	매입	5,000	800	4,000,000	
1년 8월	매입	2,000	850	1,700,000	
1년 9월	매도	3,000	900		2,700,000
2년 3월	매입	5,000	870	4,350,000	
2년 7월	매도	6,000	950		5,700,000

㉠ 1년 9월 매도시 취득비

$$= (\text{매도시까지의 총매입가액}) / (\text{총매입주식수})$$

$$= (4,000,000\text{엔} + 1,700,000\text{엔}) / (5,000\text{주} + 2,000\text{주})$$

$$\text{취득비} = 815\text{엔} \times 3,000\text{주} = 2,445,000\text{엔}$$

㉡ 2년 7월에 매도시 취득비

$$= (1\text{년 } 9\text{월에 매도후 잔고주식수} \times \text{취득단가}) + \text{이후 매도시까지의}$$

$$\text{매입가액} / (\text{매도시까지의 총보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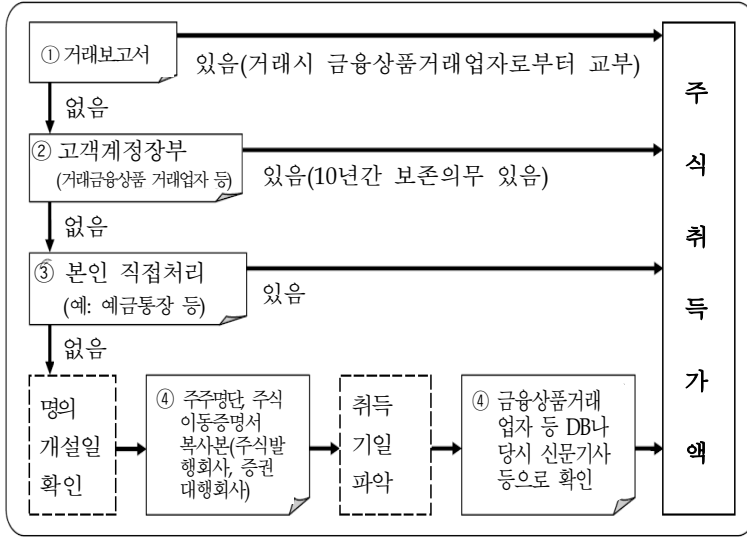
$$= (815\text{엔} \times 4,000\text{주}) + 4,350,000\text{엔} / (4,000\text{주} + 5,000\text{주}) = 846\text{엔}$$

$$\text{취득비} = (2\text{년 } 7\text{월에 취득단가}) \times (\text{매도주수}) = 846\text{엔} \times 6,000\text{주} = 5,076,000\text{엔}$$

자료: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466.htm>

또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흐름도는 [그림 III-3]과 같다. 우선,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작성한 거래보고서에서 확인한다. 거래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고객계정장부에서 확인한다. 과거 10년 이내에 매입한 것이 있다면, 그 금융상품거래업자에게 확인 가능하다.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예금통장 등에서 직접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명의개설일을 조사하여 취득취기를 파악하고 그 시기의 상장주식가격 등을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한다.

[그림 III-3] 상장주식 취득가액 확인 방법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joto-sanrin/kabushiki_shutoku.pdf

2) 세율

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세율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주식양도에 의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신고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증권업자 등에 위탁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 선택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 세법개정에서 2003년 이후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계좌 내 보관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을 보유하다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매각하였다면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비 특례를 적용하고

Ⅲ.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7

있다⁶⁵⁾. 즉 매각수입에서 취득비를 공제할 때 ‘실제 취득가격’과 ‘2001년 10월 1일 증가의 80%’중 더 유리한 금액을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고분리과세가 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표 Ⅲ-9>와 같은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표 Ⅲ-9> 주식양도차익 적용 세율

양도의 형태	적용 연도	세율
① 금융상품거래업자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	2003년분부터 2011년분까지 ¹⁾	10%(소득세 7%, 주민세 3%)
	2012년분 이후	20%(소득세 15%, 주민세 5%)
② ① 이외의 양도	2003년분	26%(소득세 20%, 주민세 6%)
	2004년분 이후	20%(소득세 15%, 주민세 5%)

주: 1) 2008년 12월 31일 경감세율 적용이 폐지(조특법 제37조의 11조)되었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경감세율(10%)을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둔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joto-sanrin/8039.pdf>

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대세율

2003년 1월 이후 5년 동안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등에 관한 양도차익 등의 금액에 대해 10%(주민세 3% 포함)의 우대세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2007년 세법개정에서 이러한 우대세율 특례 적용을 2008년까지 1년 더 연장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금융상품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투자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간소하고 알기 쉬운 세제를 위한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가 진행되어, 2008년 개정에서 잠정적으로 부과되었던 10%의 잠정세율을 폐지하고 20%로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

65) 2010년 12월 31일 이후 폐지.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계속 7%(주민세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두어 사실상 우대세율을 연장하였다⁶⁶⁾.

〈표 III-10〉 소액 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조치

구 분	내 용	해당 법령
비과세 대상소득	상장주식 배당·양도차익	措法 9의8, 措法 37의 14①, ②
비과세대상 투자금액	매년, 신규 투자금액을 100만엔으로 상한 ⇒ 5년간 500만엔	措法 37의 14⑤二, 措令 25의 13
보유기간	최장 10년간, 도중 매도는 자유	措法 37의 14①, ②
계좌개설 수	연간 1인당 1계좌	措法 37의 14⑤一, ⑫
개설자	거주자 등 ¹⁾ (2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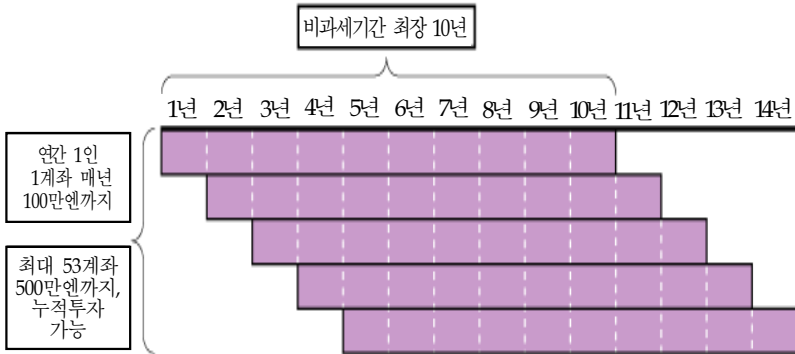
주: 1)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는 비거주자 포함

자료: <http://www.mof.go.jp/jouhou/syuzei/zeisei09/05/index.htm#05a>

그리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7% 경감세율이 폐지되는 2012년 이후에는 소액 상장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표 III-10〉과 같이 비과세조치를 도입하였다. 이 조치에 따르면 거주자 등이 비과세 계좌 개설일로부터 같은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그 비과세 계좌와 관련되는 비과세 계좌 내 상장주식 등의 금융상품 거래업자에게 매매위탁하여 양도했을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66)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shotoku/h21kaisei.pdf>

[그림 III-4] 소액 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조치



자료: <http://www.mof.go.jp/jouhou/syuzei/siryou/kinyu/h22kaiseikinyu.pdf>

3)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2001년 11월 세법개정에서 2003년 1월부터 신고분리과세의 일원화를 전제로 개인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증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3년 1월 1일 이후 상장주식 등의 양도 시 발생하는 손실금액 가운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도 더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그 손실금액을 익년 이후 3개년 이내에 각 연도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종래에는 개인의 주식 양도차익과세에 있어서 원칙으로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특정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양도손실을 제외하고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개인납세자가 일반계좌를 선택한 경우에도 양도손실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특정계좌의 경우처럼 미공제손실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세법개정에서 2009년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상장주식의 배당은 양자가 모두 위험자산인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

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양도손실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특례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① 상장주식 양도손실과 상장주식 배당소득 간의 손익통산
 - 이 손익통산 규정을 적용받는 연도의 확정신고서에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의지를 기재할 것
 - 소득세 확정신고서 부표(상장주식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용) 및 주식양도소득금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한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
- ② 상장주식 양도손실 이월공제
 - 상장주식 양도손실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세에 소득세 확정신고서 부표(상장주식 양도손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용) 및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
 - 이후 계속 소득세 확정신고서 부표(상장주식양도손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용)가 첨부되어 있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
 - 이월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연도의 소득세에 소득세 확정신고서 부표(상장주식 양도손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용) 및 주식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금융상품거래업자를 통해 지급받은 상장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그 금융상품거래업자를 통해 개설한 원천징수선택계좌로 이입이 가능하다는 특례를 두었다⁷⁰⁾.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원천징수선택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가 지불받은 상장주식 배당 중 원천징수선택계좌로 이입된 것(원천징수선택계좌 내의 배당)에 대해서는 그 원천징수선택계좌 내 배당에 관

70) 조특법 제37조의 11의 3, 조특법 제37조의 11의 6

한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선택계좌 내의 배당 이외의 배당에 관한 배당소득금액과 구분하여 이들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⁷¹⁾).

〈표 Ⅲ-11〉 상장주식 양도손실과 배당의 손익통산

연도	~2008년분	2009년분	2010년분 ~
변경내용	손익통산 불가	확정신고에 의해 손익통산 가능	
		-	원천징수선택계좌에서 손익통산 가능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shotoku/h21kaisei.pdf>

4) 특례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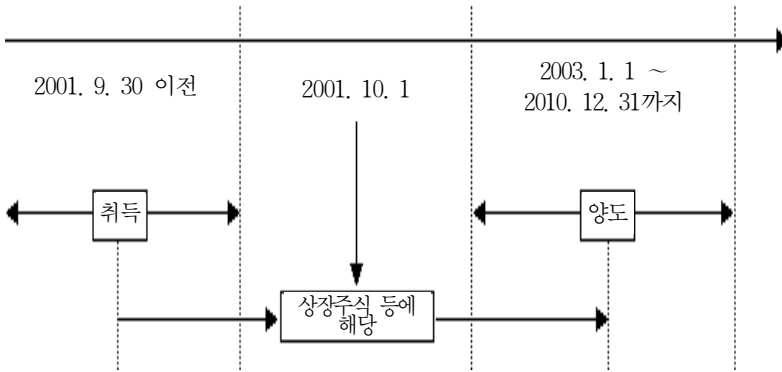
앞에서 설명한 상장주식 양도손실과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배당소득간의 통산 특례와 상장주식 양도손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특례 이외에도, 일본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례조치를 두고 있다.

가) 2001년 9월 30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 취득비용 특례

[그림 Ⅲ-6]과 같이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매입한 주식의 일부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장주식의 취득비용을 2001년 10월 1일 종가의 80% 상당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취득비용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엔젤세제 특례 적용을 받는 특정주식, 비상장 주식증권투자신탁 수익권 및 비상장특정투자법인의 투자는 제외된다.

71) 조특법 제37조의 11의 6, 시행령 제25조의 10의 13

[그림 III-6] 2001년 9월 30일 이전 취득한 상장주식 취득비용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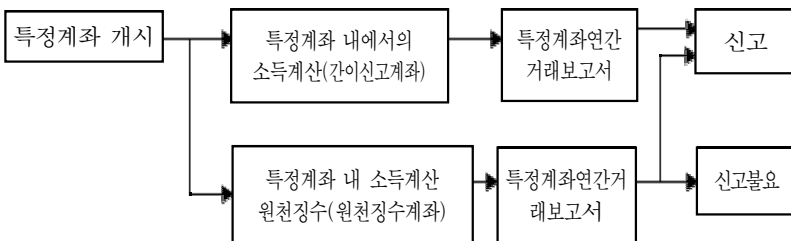


자료: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473.htm>

나) 특정계좌제도에 대한 특례

거주자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에게 특정계좌를 개설한 경우(1개 금융상품거래업자당 1개 계좌로 한정)에 그 특정계좌 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정계좌 외에 양도한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은 금융상품거래업자가 행하기 때문에 금융상품거래업자가 보낸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에 의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그림 III-7] 특정계좌제도에 대한 특례



자료: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476.htm>

다) 상장주식 배당에 대한 신고분리과세 도입

거주자 또는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받아야 할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이외에 15%(주민세 5%)의 세율에 의한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라) 상장주식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특례 개정

상장주식의 배당에 대해 적용되던 원천징수 세율 7%의 경감세율이 2008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⁷²⁾. 다만, 특례조치로서 개인(대주주를 제외) 또는 법인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불받아야 할 상장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계속 7%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⁷³⁾. 이러한 신고분리과세의 선택은 신고할 상장주식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⁷⁴⁾.

〈표 III-12〉 상장주식 배당에 대한 세율

			~2008. 12. 31	2009. 1. 1 ~ 2011. 12. 31	2012. 1. 1 ~
신고	종합과세		누진세율(소득세 5~40%, 주민세 10%)		
	신고분리과세		-	10% (소득세 7%, 주민세 3%)	20% (소득세 15%, 주민세 5%)
원천 징수	개인 ¹⁾	거주자	10% (소득세 7%, 주민세 3%)		20% (소득세 15%, 주민세 5%)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비거주자	7% (소득세만)		15%(소득세만)
		상기 이외의 비거주자	7%(소득세만)		15%(소득세만)
	내국법인, 외국법인		7%(소득세만)		15%(소득세만)

주: 1) 대주주인 개인은 제외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shotoku/h21kaisei.pdf>

72) 조특법 제9조의 3

73) 2008년 소득세법 개정부칙 33②③, 2009년 개정 후 2008년 소득세법 개정부칙 33②

74) 조특법 제8조의 4

그러나 상장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한 7% 경감세율이 폐지될 경우에는 소액 상장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표 III-10>과 같이 비과세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마) 상장증권투자신탁의 환매금액에 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조의4의2)

내국법인 또는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상장증권투자신탁⁷⁵⁾ 만료 또는 일부 해약에 의해 지불받을 금전 중 수익분배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에서 그 상장증권투자신탁 만료 또는 일부 해약으로 지불받은 자는 지불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한 지불조서를 그 상장증권투자신탁 만료 또는 일부 해약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말일까지 그 지불한 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시한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상장증권투자신탁 만료 또는 해약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 시사점

주요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 영국 및 일본뿐 아니라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화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심화되면서 소득세제에 있어서도 각국은 다른 국가들과 조세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경쟁의 결과로서 각국의 소득세제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미 1913년부터 주식양도

75) 공채투자신탁 이외 증권투자신탁으로 그 설정에 관한 수익권 모집이 공모에 의해 행해진 것(특정주식투자신탁을 제외)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제9조의4의2, 시행령 제4조의7의2)

차익 과세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이 제도를 차례로 도입하여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스와 멕시코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단 개인 소액투자자들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각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 주식의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다. OECD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주주가 대주주나 개인이냐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국가는 없으며,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이나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국가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우대를 하고 있다. 자본이득을 우대하는 이유는 장기적 자본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특히 장기자본이득을 우대해 주는 이유는 자산시장에서 금융자산의 장기보유를 장려하며, 결집효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장기자본이득의 우대는 결과적으로 동결효과를 유발하기도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주식양도차손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손익상계를 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경우 단기자본손실은 단기자본이득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초과분은 장기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장기자본손실은 장기자본손실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초과분은 단기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그래도 남는 자본손실은 3,000달러까지 경상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일본도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더욱

이 일본은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상장주식의 배당 간 손익통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 영국, 일본 모두 공제후 초과손실은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소급공제는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은 그 초과손실에 대해 연도 제한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단기손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는 법인과 달리 자본손실을 이전 과세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양도손실은 Taper Reliefs 이전의 과세대상 자본이득에서 공제한 후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며, 초과손실의 소급공제는 납세자 사망 후 발생한 양도손실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상장주식 등의 양도 시 생기는 손실금액은 주식 관련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손실금액은 익년 이후 3개년 이내에 각 연도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표 III-13〉 OECD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1),2)}

	과세방법	과세여부	장기보유 우대여부	양도(차익)금액에 따른 우대여부
호주	분리과세	○	○	
오스트리아	분리과세	○	○	
벨기에	분리과세	○	×	
캐나다	분리과세	○	×	
체코	분리과세	○	○	
덴마크	분리과세	○	×	○
핀란드	분리과세	○	×	
프랑스	세대별 종합과세	○	×	○
독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그리스	분리과세	○ ³⁾	×	×

〈표 III-13〉의 계속

	과세방법	과세여부	장기보유 우대여부	양도(차익)금액에 따른 우대여부
헝가리	분리과세	○	×	×
아이슬란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아일랜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이탈리아	분리과세	○	×	×
룩셈부르크	분리과세	○	○	×
멕시코	분리과세	○ ³⁾	×	×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폴란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포르투갈	종합과세	○	○	×
슬로바키아	분리과세	○	×	×
스페인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스웨덴	분리과세	○	×	×
스위스	-	×	×	×
터키	분리과세	○	○	×
미국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
영국	분리과세	○	○	×
일본	분리과세	○	×	×

주: 1) OECD(2006) pp. 33~47의 Table 1.1을 이용하여 작성함.

2) 거래세가 있는 국가는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이며, 이 밖에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권 국가들이 있음.

3)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자료: OECD(2006).

4.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

가. 제도의 미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데 조세제도 역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등이 도입된 것도 이러한 주장에 부응한 것이었다.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던 파트너십과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이유는 기업이 사업의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기업들에 비해 세부담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조세제도도 선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고, 그리스와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표 III-14> OECD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 운영 현황

	국 가
전면과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 영국, 일본
상장주식 비과세	그리스, 멕시코
전면 비과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자료: OECD(2006)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주주에 대해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주식을 제외하고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서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였다. 또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999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전면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에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의 자금을 순조롭게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타당한지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래소 시장의 경우 2009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가별 대표적인 주식시장만을 비교해 본다면 세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 적립식 펀드가 저축 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으며 주식의 소유가 국민들에게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규모는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파생금융상품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융시장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육성을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나. 공평과세의 원칙 위배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담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동시에 저해한다.

주식의 자본이득은 토지·건물 등 자본이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 및 근로소득과 같은 타소득과의 형평을 위해 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다른 양도소득은 과세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와 주택의 양도 단계가 아닌 보유 단계에 대해서도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비교하여 자산 간 상당한 불공평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소득의 종류 간 과세의 불공평은 세부담 측면에서 수평적 불공평을 초래하고 또한 이는 투자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양도차익으로 인해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 특히 주식의 양도차익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I-15>는 일본의 주식양도익 계층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최고소득계층이 전체 주식양도차익의 86%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속성상 우리나라의 자료를 찾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도 유사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식양도 손실을 본 사람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일세율의 비례세율구조여서 고액투자자와 소액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양도가액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므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인한 수직적 불공평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5〉 일본의 주식양도익 계층별 분포(1990년)

(단위 : 백만엔, %)

소득 구분	소득공제 전 소득(A)	양도익		
		금액(B)	B의 구성비	B/A×100
70만엔 이하	1,154,224	385	0.01	0.03
100만엔 이하	2,336,275	453	0.01	0.02
150만엔 이하	6,586,376	1,112	0.03	0.02
200만엔 이하	11,066,851	1,643	0.05	0.01
300만엔 이하	33,649,631	5,169	0.16	0.02
400만엔 이하	37,094,819	6,901	0.21	0.02
500만엔 이하	35,491,336	8,252	0.25	0.02
1,000만엔 이하	94,552,417	54,227	1.68	0.06
2,000만엔 이하	33,549,908	109,702	3.39	0.33
3,000만엔 이하	6,015,152	91,685	2.83	1.50
5,000만엔 이하	6,000,869	158,909	4.91	2.65
5,000만엔 초과	19,948,594	2,800,082	86.46	14.04
계	287,509,223	3,238,575	100.00	1.13

자료: 石弘光(1993) p.177.

다. 세수 문제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세수입이 누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상장주식의 거래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에 의한 세수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세수입의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세수입이 포기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의 연도별 차이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개략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 추정치가 정확한 양도차익규모와 거리가 있음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도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규모를 추산해 본다. 2008년 말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576.9조원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46.2조원을 합쳐서 전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623.1조원이었다. 또한 2009년 말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887.3조원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86.1조원을 합쳐서 전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973.4조원이었다. 주가의 상승에 의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상승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9년 1년 동안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의 2009년 말 시가총액과 2009년 1년 동안 상장폐지된 기업들의 2008년 말 시가총액을 알아야 한다⁷⁶⁾. 그러나 2008년 말 763개이었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회사수가 2009년 말 767개로 큰 변화가 없었고, 2008년 1,038개이었던 코스닥시장의 상장회사 수도 2009년 말 1,028개로 큰 변화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신규상장과 상장폐지로 인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상승분은 무시하기로 한다. 상장주식의 자본금 규모를 통해 이 문제를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2008년 말 89.7조원이었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자본금이 2009년 말 92.5조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2008년 말 13.2조원이었던 코스닥시장의 상장자본금도 2009년 말 13.3조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전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상승분에서 신규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시가총액의 상승분은 무시해도 될 만큼 작다. 따라서 2009년도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규모는 973.4조원에서 623.1조원을 차감한 350.3조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추정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현이득이 아니라 평가이득이라는 한계가 있다.

2009년도 시가총액기준으로 소유자별 주식분포는 <표 III-16>와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31.02%

76) 물론 보다 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자, 주권액면 분할·병합, 이익소각, 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과 관련한 모든 통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인별자료를 보기 전에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전체 상장주식 양도차익 규모를 추정한다.

였고,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71.49%였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승분 310.4조원에 개인의 소유지분인 31.02%를 적용하면 개인의 유가증권시장주식 양도차익은 96.3조원으로 추정되며,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상승분은 39.9조원에 71.49%를 적용하면 개인의 코스닥시장주식 양도차익은 28.5조원으로 추정된다. 만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 14%의 세율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각각 13.4조원과 5.6조원의 세수입을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도 증권거래세 세수가 3조 5,339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수치이다⁷⁷⁾.

그러나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세수입이 누수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표 III-1>에서 본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990년, 1991년, 1995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8년의 경우 전년도 말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감소한 연도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⁷⁸⁾를 허용해 준다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현재의 거래세수보다 반드시 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만일 주식시장의 기초체력이 허약하여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다면 세수입 누수의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가 오히려 세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다.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으로 인해 담세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여야 수직적 불공평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77) 이러한 추정치는 평가이득을 이용한 개략치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8) 이월공제 허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수 감소는 더 커질 것이다.

〈표 Ⅲ-16〉 유가증권시장의 소유자별 주식소유 분포

(단위: 십억원, %)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	외국인	합계
2008	16,767 (2.91)	71,144 (12.36)	166,287 (28.89)	155,703 (27.05)	165,655 (28.78)	575,555 (100.0)
2009	16,441 (1.85)	111,087 (12.52)	194,811 (21.96)	275,253 (31.02)	289,724 (32.65)	887,316 (100.0)

주: 1. 시가총액 기준임.

2.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거래소

〈표 Ⅲ-17〉 코스닥시장의 소유자별 주식소유 분포

(단위: 십억원, %)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	외국인	합계
2008	321 (0.70)	1,557 (3.38)	9,927 (21.52)	30,553 (66.24)	3,767 (8.17)	46,125 (100.0)
2009	222 (0.26)	6,004 (7.05)	11,791 (13.84)	60,912 (71.49)	6,280 (7.37)	85,210 (100.0)

주: 1. 시가총액 기준임.

2.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거래소

IV.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1956년에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유가증권거래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당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제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선진시장이라도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하였다. 1996년에 개설한 파생금융상품시장도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짧은 기간내에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앞서 제Ⅱ장에서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찬반 양론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자본이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일시적이며 우발적인 소득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하는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선행연구들이나 현실적으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형평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주식이나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유치산업론의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즉,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소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일찍부터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최초 도입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도 전통적인 유가증권의 거래 시작과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찾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볼 나라가 있다면 일본과 대만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식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다가 양도소득세제로 전환하여 각각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과세제도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되고, 동 제도의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사례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다. 당위성이 인정되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역사가 일본보다 뒤지기 때문에 줄곧 일본의 제도를 많이 모방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많이 들여왔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제도에서도 장점을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일본과 유사한 제도가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1990년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8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속한 제도개혁을 단행한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선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 거래세 체계에서 주식양도차익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며⁷⁹⁾,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변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⁸⁰⁾이 일관된 결론을 제시해 주지 못하

79) 구미국가들은 워낙 이른 시기부터 주식양도소득세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80) 선행연구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였을 경우 주식시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 것들로서,

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되나, 이론적 또는 실증적인 연구만으로 그 도입의 영향에 대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면,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일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제도를 자세히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일본과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만과 간단히 비교해 보기로 하자.

1. 성공사례 vs 실패사례

대만은 일본과 유사한 시기인 1989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주식시장의 폭락과 투자자들의 항의 등으로 결국 1990년에 동 계획을 철회하였다. 윤계섭(1990)⁸¹⁾과 이용진(1992)⁸²⁾은 이 두 나라의 사례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가. 일본

일본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수차에 걸친 답신에서 공평·공정의 이념과 이자배당소득과세와의 균형, 유가증

우리가 우려하는 최초 도입시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검토한 연구는 없다.

81) 윤계섭(1990), pp. 24~25 참조

82) 이용진(1992), pp. 811~814 참조

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과세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원칙과제로 나아갈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갔다. 세제조사회는 1988년 4월 답신에서도 “최근의 지가 급등 및 증권시장의 동향으로 주식 등 자산과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자산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의 증권시장의 활황 등을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과세제도는 불공평세제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조사회는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비과세원칙의 제도를 과세원칙으로 바꾸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⁸³⁾.

- ① 증권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는 과세방식을 강구할 경우 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 ② 유효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납세자번호제도를 활용하여 증권거래를 파악하는 체제의 정비가 바람직하므로 납세자번호제도 검토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토록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③ 양도손실의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종합과세제도하에서는 양도손실을 타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우선되어야 하나 유가증권거래를 파악하는 체제가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손실을 유가증권 이외의 타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동 답신에서는 과세방식에 대하여 신고분리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고분리과세방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일정한 세율에 의해 납세의무자

83) 일본 참의원 예상위원회 속기록, 1988. 8.

가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면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부담수준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종합과세 시와 같이 납세자에 의한 소득산정이 쉽지 않고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원천분리과세방식은 주식 등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과세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 유가증권거래세와 다른 점이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세제조사회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은 특별한 문제없이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로 전환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원천분리과세를 허용하면서 신고분리과세제도 형태로 도입하였고, 그 형태가 거래세와 유사한 형태였다는 점 등이 대만과의 차이일 것이다. 원천분리과세는 매각금액의 5.25%를 양도익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각금액의 1.05%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일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6%의 세율을 부과하는 신고분리과세제도로 2001년도에 일원화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2년간 연기하여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제도로 일원화하였다. 1989년부터 약 14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 대만

대만은 소득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투자장려조례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교역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 시행을 연기해 왔었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로 증시가 과열현상을 보이자 자본시장발전을 위한 비과세조치는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경제발전기간 동안 누려왔던 부의 공정·공평한 분배를 토지 및 증권투자가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88년 9월 24일 “증권거래소득에 대한 재정고

시”(28616호)를 제정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조치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하였다.

대만의 제도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는 일반소득과 같이 50~60%의 누진세율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과세해 왔다. 법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10만NT달러 이하인 경우는 15%, 10만NT달러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금액 총액이 1,000만NT달러 이하인 투자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해 주고, 상장 또는 비상장 기명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50%만 과세도록 되어 있다.

양도손실은 주식 간 상계 및 기타 재산거래소득과도 상계가 가능하나 다른 유형의 소득(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는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양도손실은 차후 3년간의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상장주식 거래자료는 재정부 전산자료처리센터로 송부되어 개인별로 거래금액이 계산되며, 취득원가 및 보유기간규정에 따라 1년 동안 양도한 총금액이 1,000만NT달러를 초과한 경우 증권거래소득(손실) 종합계산서 및 명세서가 다음해 1월 31일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되어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발표가 있는 후, 처음 개장된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물이 쇠도하여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다. 그 후에도 주가하락이 계속되어 가권지수가 8,800에서 5,500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시행 1년 만인 1990년 3월,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증권거래 손실을 신고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1990년부터 다시 과세를 보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항은 ① 투자장려조례 폐지조치를 취한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점 ② 주식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계산 및 이월공제사항이 복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 과세제도 전환 성공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경우

일본은 어떻게 거래세 체제에서 양도세 체제로 성공적으로 이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장의 목적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본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일본의 제도 변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끌어내고자 한다.

가. 주식양도소득세제 도입 연혁⁸⁴⁾

① 주식공개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제 요건 변화

1966년: 주식공개에 의한 양도 및 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양도는, 연속거래의 판단기준인 ‘연 50회 이상, 20만주 이상’이어도 비과세함

1971년: 주식공개에 의한 양도 중 총발행주식 25% 이상의 주식양도에 의한 소득은 ‘사업 등의 양도와 유사한 소득’의 범위에 추가함, 즉 과세대상에 포함됨.

1979년: ‘사업 등의 양도와 유사한 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공개방법에 의한 양도범위를 발행 총주식의 25%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낮춤

② 신고분리과세 세율 특례

1989년: 모든 주식양도에 의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신고분리과세⁸⁵⁾를 원칙으로 하되, 증권업자 등에 위탁한 상장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천분리과세 선택을 인정

84) 일본 연혁은 武田昌輔・神谷修 監修, 『DHC 所得稅務釋義』에서 요약・정리하였다.

85) 신고분리과세: 양도이익에 대해 26%(국세 20%, 지방세 6%)의 세율로 신고를 통한 과세

2001년 11월: 2003년 이후 신고분리과세하에서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례조치 도입

㉠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소득세를 경감(소득세 15%, 주민세 5%)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보유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소득 잠정세율(소득세 7%, 주민세 3%) 특례조치

2004년: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소득 경감세율 특례(소득세 15%, 개인주민세 5%) 폐지

③ 원천분리과세 간주이익률

1989년 원천분리과세: 선택에 의해 양도대금의 5%(전환사채 등은 2.5%, 신용거래는 차익)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20%의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

1996년: 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의 원천분리선택과세에 대해서, 1996년 4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 행해진 상장주식 양도에 관한 간주양도이익률을 5.25%(개정전 5%)로 하는 특례조치 마련

1998년: 상장주식 등 양도에 관한 간주양도이익률을 5.25%로 하는 특례조치 적용기한을 2000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

1999년: 상장주식의 양도에 관한 간주이익률을 100분의 5.25로 하는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상기 경과조치의 도래기한인 2001년 3월 31일까지 적용

2001년: 1999년 개정에서 강구된 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의 원천분리과세의 경과조치 및 간주양도이익률 특례적용기한을 200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2001년 11월: 상장주식 양도소득 원천분리과세의 경과조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개정전: 2003년 3월 31일)로 단축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로 통일

④ 공개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특례조치

1989년: 공개하기 전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인 주식의 양도는 양도이익 전액을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주식의 양도(창업자이익)는 양도이익의 2분의 1 과세

2000년: 공개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특례와의 중복 적용에 의해 그 세부담은 통상적인 경우의 4분의 1로 경감

⑤ 스톡옵션세제

1996년: 특정신규사업실시원활화 임시조치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임원이 받은 신주발행에 관한 주식취득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 비과세(소위 스톡옵션세제)제도 도입

1998년: 1997년 5월 상법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인정되기 시작하여 스톡옵션세제 개편

2002년: 특정 임원이 받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의 비과세제도(소위 스톡옵션세제)에 있어, 신주예약권 부여 결의를 한 주식회사가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수 100분의 50을 넘는 주식 또는 출자를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임원 또는 사용자인 개인(그 주식회사의 대주주에게 해당하는 자 등 일정자는 제외) 또는 그 개인의 권리승계상속인을 적용대상자로 추가하는 외에, 특정신주예약권에 관한 권리행사가액의 연간 한도액을 1,200만엔(개정전: 1,000만엔)으로 인상하는 개정을 단행

2006년: 특정 임원이 받은 신주예약권행사에 의한 주식취득에 관한 경제적 이익의 비과세제도(스톡옵션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

- ㉠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신주예약권 범위에 회사법의 결의에 근거하여 부여된 신주예약권 추가

- ㉠ 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범위에 집행임원(執行役) 추가
- ㉡ 특정주식 범위에 주식무상할당에 의해 할당된 주식이나 취득조항부 주식의 취득사유발생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추가

⑥ 엔젤세제

- 1997년: 특정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양도손실의 이월공제 특례조치(소위 엔젤세제) 도입
- 2000년: 특정중소회사의 주식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분의 1과세) 도입
- 2003년: 특정중소회사의 특정주식에 관한 2분의 1 과세특례요건인 양도기간요건이 상장일 이후 3년 이내로 연장
- 2004년: 특정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일정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을 통한 일정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및 green sheets⁸⁶⁾/emerging구분에 지정된 일정 벤처기업으로의 투자가 적용대상에 추가됨과 동시에 양도소득의 2분의 1 과세특례 양도기간요건 완화
- 2005년: 특정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07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
- 2007년: 특정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의 2분의 1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09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
- 2008년: 특정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폐지

⑦ 상장주식 양도소득 우대 특례

- 2003년: '저축에서 투자로'의 개혁에 필요한 금융증권세제의 경감·간소화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86)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일본증권업협회가 1997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 벤처기업 같이 어린 잎이 잘 성장해 나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green sheets'라고 명명하였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우대세율(7%)의 특례 도입

2007년: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소득 과세특례 개정
상장주식양도소득의 경감세율(소득세 7%, 주민세 3%) 특례 적용기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2008년: 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7%(개인주민세 3%) 경감세율특례를 2008년 12월 31일로 폐지

2009년: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해분 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은 일률적으로 7%(개인주민세 3%)의 경감세율 적용(폐지 후 다시 부활된 셈)

⑧ 장기보유주식 우대 특례

2001년 6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유상장특정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해 장기보유상장특정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100만엔을 특별공제하는 특례 도입

2001년 11월: 장기보유상장특정주식의 양도소득 100만엔 특별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개정전 2003년 3월 31일)까지 연장

2003년: 장기보유상장특정주식 100만엔 특별공제특례

⑨ 특정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2006년: 특정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소득 비과세제도에 대해서, 특정 상장주식의 양도범위에 특정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행한 1주 또는 1계좌를 만족하지 않는 단수에 관한 특정상장주식 양도를 추가함과 동시에 이 특례 적용요건인 취득기

간 이후에 취득한 상장주식이라도 거주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의 범위에 주식무상할당에 의해 할당받은 주식,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사유 발생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추가

2007년 6월: 특정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1) 비과세대상인 특정상장주식 양도범위에 다음과 같은 특정상장주식 양도 추가

- ㉠ 특정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행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 이전에 의한 해당법인에 관계되는 주식교환완전母法人 또는 주식이전완전母法人에 대한 해당 특정상장주식 양도
- ㉡ 소득세법 제57조의4 제3항 제5호에 기재된 취득조항부신 주예약권 및 동항 제6호에 기재된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로 이 양도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

(2)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취득상장주식 등의 범위에 다음 사유에 의해 취득한 상장주식이 추가

- ㉢ 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주식만 교부된 법인합병에 의한 해당 합병법인주식의 취득
- ㉣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새로운 투자신탁 수익권만 교부된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련된 신규 투자신탁 수익권 취득
- ㉤ 법인주주에게 분할승계母法人주식만 교부된 법인의 분할에 의한 해당 분할승계母法人주식 취득
- ㉥ 해당 주식교환완전母법인의 母法人주식만 교부된 주식교환에 의한 해당 주식 취득

2008년: 특정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소득 비과세제도 폐지

⑩ 신고분리과세하의 특정계좌

2002년: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의 일원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특례조치 도입⁸⁷⁾

- ㉠ 2003년 1월 1일 이후 특정계좌 내에 보관하는 상장주식 양도에 관한 소득의 구분계산특례
- ㉡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 작성과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특정계좌개설자로의 교부특례
- ㉢ 선택한 특정계좌 내 보관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 원천징수를 선택한 특정계좌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확정 신고불요 특례

2002년 11월: 특정계좌제도에 있어, 2003년 중에 특정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그 개설일 전에 타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일정 상장주식 및 타 신용거래계좌에서 처리되고 있는 미결제 상장주식 등의 신용거래를 그 개설일에 이관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선조치 마련

2003년: 특정계좌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

- ㉠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해, 일정 요건하에서 유가증권보관위탁계좌에 보관위탁되지 않는 상장주식(소위 장롱주식:タンス株)을 특정계좌로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
- ㉡ 신용거래에 관한 상장주식양도소득계산의 특례대상이 되는 거래범위에 발행일거래가 추가
- ㉢ 2004년 이후 원천징수선택계좌에서 원천징수되던 방식이 연간 일괄납부방식으로 개선
- ㉣ 2003년 중 원천징수선택계좌에서 연간 통산소득금액의 7%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연말에 환급하는 조치 마련

87) 원천징수의 선택을 위한 특정계좌를 「원천징수선택계좌」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특정계좌는 「간이특정계좌」라고 부른다(泉潤慈(2006) 참조).

- ㉔ 원천징수선택계좌에 관계되는 특정계좌 연간거래보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 폐지

2004년: 특정계좌 내 보관 상장주식양도소득계산특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

- ㉕ 특정계좌에 보관위탁할 수 있는 상장주식의 범위에 공모주식 등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특정투자법인의 투자지분이 추가
- ㉖ 특정계좌의 취급자 범위에 은행, 협동조합금융기관 또는 등록금융기관이 추가
- ㉗ 출국계좌에 보관위탁된 상장주식을 특정계좌로 이관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㉘ 상기 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한해,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정 공모주식 등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특정투자법인의 투자지분을 특정계좌로 이관할 수 있는 조치 마련

2005년: 특정계좌 내 보관상장주식 양도소득계산특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

- ㉙ 특정계좌 취급자 범위에 등록우정공사를 추가
 - ㉚ 특정계좌로 납입될 수 있는 상장주식 범위에 특정계좌 내 보관상장주식을 증권업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해당 대부계약에 근거하여 반환되는 일정 상장주식을 추가
 - ㉛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일정 상장주식에 대해 2005년 4월 1일 이후(2009년 5월 31일까지)에도 일정 요건하에서 실제 취득가액으로 특정계좌로 이관 가능
- 또한 특정계좌에 보관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발행회사의 청산종료에 의해 무가치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서 이를 주식양도손실로 간주하는 「특정관리주식이 가치를 잃을 경우의 주식양도소득 과세특례」 도입

- 2006년: 특정계좌로 이관이 가능한 상장주식의 범위에 주식무상할당에 의해 할당된 주식, 취득청구권부주식의 청구권 행사,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사유 발생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추가. 또한 출국계좌에서 특정계좌로 이관될 수 있는 상장주식의 범위에 대해서도 주식무상할당에 의해 할당된 주식,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사유 발생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추가
- 2009년: 특정계좌로 이관이 가능한 상장주식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2005년 4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특정계좌로의 상장주식 보관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소위 장롱주식 이관 특례)가 적용기한(2009년 5월 31일) 도래로 폐지

나. 시사점

일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여 일본의 전형적인 제도개혁 방식을 따랐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89년에는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었다. ① 1961년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가운데, 연 50회 이상이며 20만주 이상 연속거래로 발생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하였는데, 1987년에는 이 기준을 연 30회 이상, 12만주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다. ② 1971년 당시에는 주식공개에 의한 양도 중 총발행주식 25% 이상의 주식양도에 의한 소득은 '사업 등의 양도와 유사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1979년에는 이 기준을 15%로 낮추었고 1987년에는 이를 다시 10%로 하향 조정하였다. ③ 1979년 당시에는 동일종목의 주식을 20만주 이상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는데, 1987년에는 이 기준을 20만주에서 12만주로 하향 조정하였다. ④ 1979년 당시에는 특정보고종목 주식을 지정

기간 중에 20만주 이상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는데, 1987년 양도주수의 기준을 20만주에서 12만주로 하향조정하였다.

둘째, 일본은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선 분리과세의 형태로 도입하고 원천분리과세도 허용하였다. 1989년부터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고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였고, 증권업자 등에게 위탁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분리과세를 허용하였다. 원천분리과세하는 경우, 양도대금의 5%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로 부과하였는데, 이는 거래대금의 1%를 거래세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 2003년부터는 신고분리과세 제도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특정계좌 내에 보관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원천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지정한 증권사의 특정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할 경우, 동 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의 확정신고가 필요 없고, 증권사에서 원천분리과세를 대행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은 지속적인 제도는 아니나 장기보유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 1988년 공개 전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이익의 1/2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1년 초과 보유주식 매각에 대하여 100만엔 특별공제조치를 허용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양도소득세율도 약 1/2 정도로 경감하는 장기보유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

넷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바로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았다.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9년이고, 유가증권 거래세를 폐지한 것은 1999년으로 약 10년간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었다⁸⁸⁾.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바로 대체할 경우 세수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추정되며,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

88) 양도소득세는 정확하게 1989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었고, 거래세는 1999년 3월말까지 부과되었다.

이 1989년 이후 양도세와 거래세를 합한 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일본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에 따라 양도세 전환 이후, 거래량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7%의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⁸⁹⁾. 1989년부터 1999년의 기간 동안 거래세는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다가, 1999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표 IV-1> 일본 거래세율 변화 추이

연도	세율
1989. 4	0.55% → 0.3%
1996. 4	0.3% → 0.21%
1998. 4	0.21% → 0.1%
1999. 4	0.1% → 폐지

자료: 일본 재무성

<표 IV-2> 일본의 주식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세수 추이

(단위: 백만엔)

연도	양도소득과세 세수			유가증권 거래세 세수(B)	합계(A+B)
	신고분	원천분리분	소계(A)		
1980				208,739	208,739
1981				309,078	309,078
1982				276,073	276,073
1983				417,854	417,854

89)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우대세제 및 금융정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113

<표 IV-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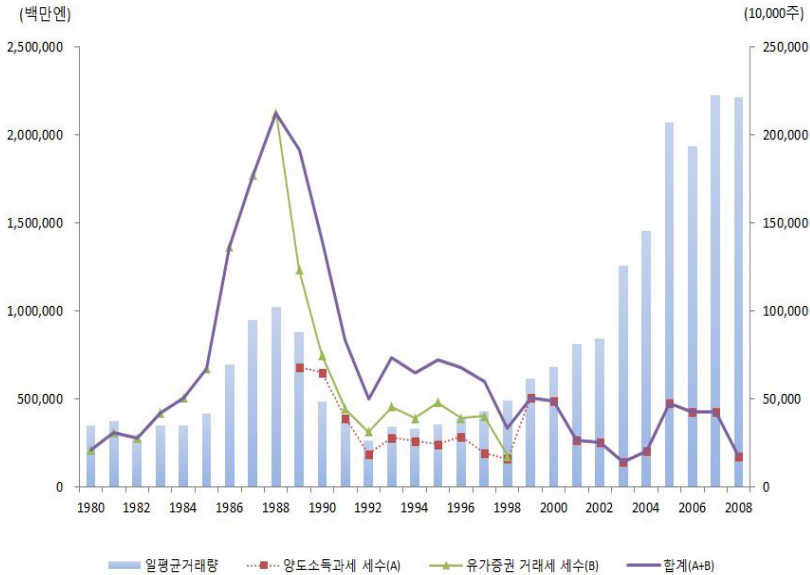
(단위: 백만엔)

연도	양도소득과세 세수			유가증권 거래세 세수(B)	합계(A+B)
	신고분	원천분리분	소계(A)		
1984				506,768	506,768
1985				671,111	671,111
1986				1,366,865	1,366,865
1987				1,770,828	1,770,828
1988				2,123,072	2,123,072
1989	77,422	604,428	681,850	1,233,392	1,915,242
1990	183,637	466,229	649,866	748,377	1,398,243
1991	133,026	258,502	391,528	443,209	834,737
1992	73,889	112,181	186,070	312,707	498,777
1993	85,631	193,486	279,117	455,193	734,310
1994	85,473	174,171	259,644	390,877	650,521
1995	73,779	167,762	241,541	479,743	721,284
1996	82,655	202,002	284,657	391,802	676,459
1997	66,300	127,012	193,312	403,674	596,986
1998	57,944	101,260	159,204	172,863	332,067
1999	92,271	416,534	508,805		508,805
2000	103,022	385,460	488,482		488,482
2001	83,350	180,810	264,160		264,160
2002	57,478	196,831	254,309		254,309
2003	84,191	55,178	139,369		139,369
2004	108,261	95,756	204,017		204,017
2005	219,870	254,672	474,542		474,542
2006	203,368	223,942	427,310		427,310
2007	-	210,356			
2008	-	49,652			

주: 2007년부터 신고분 주식양도차익과세 자료를 공표하지 않음

자료: 일본 재무성

[그림 IV-1] 일본의 주식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세수추이



3.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의 영향: 일본의 경우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거래세 체제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위성 측면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로의 전환이 타당하다면, 이미 성공적으로 실행한 국가의 예를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양도차익과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자본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의 경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러

한 논리가 성립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도입(1989년 4월)과 유가증권 거래세 폐지(1999년 4월)가 일본의 주식시장과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86년부터 2009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Chow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되는 기본적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 X + \epsilon \quad \text{식 (1)}$$

Y 는 각각 주식거래량과 자본수지로서 별도의 추정식을 사용하였다. β 와 X 는 각각 계수 벡터와 설명변수 벡터로서 설명변수로는 GDP의 대용변수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주가수준, 금리, 환율 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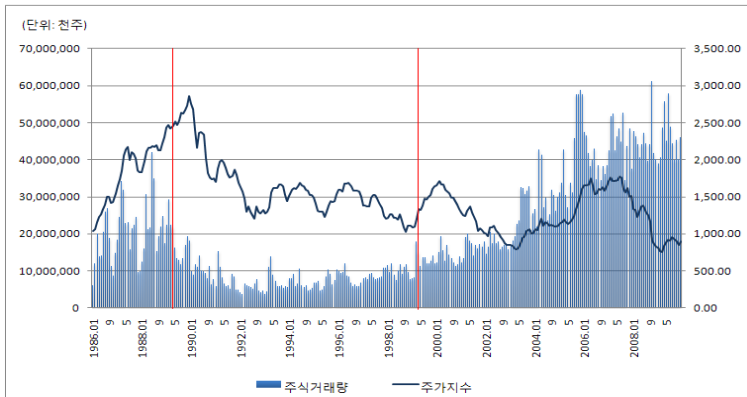
주식거래량과 주가지수는 동경증권거래소(제1부)의 월별 거래량 및 지수를 이용하였다. 자본수지는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하는 월별 자본수지를 이용하였으며, GDP는 월별 자료를 취득하기 어려워,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광공업생산지수⁹⁰⁾로 대신하였다. 금리는 일본은행과 재무성 『財政金融統計月報』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양도성예금증서(6개월) 금리를 각각 장·단기금리변수로 이용하였다. 일본의 대표적 시장금리로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사용되나, 주식거래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6개월 CD 금리를 추가하여 두 가지를 각각 분석해 보았다. 환율은 달러 대비 월중평균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시계열 변수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ickey-Fuller Test를 통해 단위근 검정을 하였다. 주식거래량의 경우 단위근 검정결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수지와 환율 변수 역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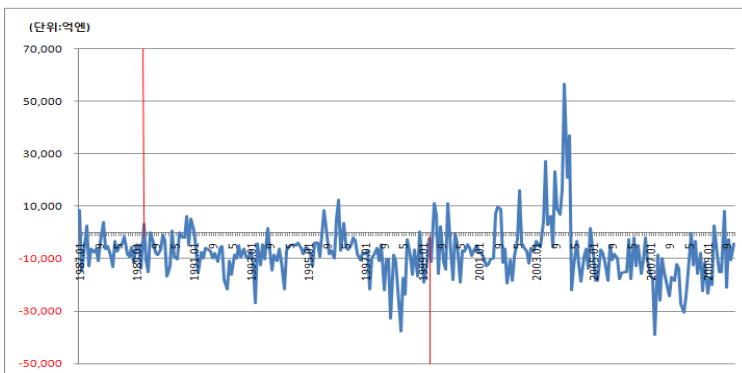
90) 계절조정 후 시리즈

반면, 금리와 주가지수는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를 대상으로 공적분 검정(Johansen Procedure)을 행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분 등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시계열 분석에 사용하였다. 추정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모두 로그를 취하였다⁹¹⁾.

[그림 IV-2] 주식거래량과 주가지수 추이(1986. 1~2009. 12)



[그림 IV-3] 일본의 자본수지 추이



91) 자본수지는 음(-)의 값이 있어서 수준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1989년 4월에 단행된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과 1999년 4월에 폐지된 유가증권거래세로 인해 주식거래량에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를 통하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양도차익과세 도입과 함께 바로 거래세가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시점 각각에 대하여 차우검정을 통하여 구조적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전 구간에 걸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장기금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수들의 부호도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금리는 음(-)의 관계, 나머지 변수들의 계수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단기금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율과 주가지수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 참조).

〈표 IV-3〉 기간별 회귀분석(양도차익과세 도입 전후)

		상수	주가지수	광공업생산 지수	금리	환율
장기 금리	1989년 4월 이전	-7.2381 (-0.55)	1.8200 (2.750)	0.5111 (0.51)	-0.8249 (-1.52)	1.8652 (1.57)
	1989년 4월 이후	10.2199 (5.95)	0.6569 (2.81)	1.6028 (3.24)	-1.0811 (-13.32)	-1.0402 (-3.01)
	전체 기간	6.2516 (3.50)	0.7352 (3.62)	1.0128 (2.11)	-0.9633 (-11.85)	0.2460 (0.77)
단기 금리	1989년 4월 이전	-3.6780 (-0.28)	1.4672 (2.23)	0.6906 (0.57)	-0.8186 (-0.93)	1.4929 (1.28)
	1989년 4월 이후	15.4124 (8.17)	-0.3409 (-1.42)	2.0855 (3.64)	-0.1685 (-8.23)	-1.3124 (-3.28)
	전체 기간	11.9233 (6.53)	0.0413 (0.20)	1.1820 (2.22)	-0.1573 (-7.77)	-0.2628 (-0.76)

주: 1) $F(4, 278) = 20.67$, $p \text{ value} = 6.234e^{-15}$

2) $F(4, 278) = 13.7678$, $p \text{ value} = 2.948e^{-10}$

3) () 안은 t값임.

양도소득과세제도가 도입된 1989년 4월을 기준으로 주식거래량에 구조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차우검정 결과에서 F값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양도세 도입 전후로 구조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9년 4월의 유가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기간을 비교하여 주식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역시 차우검정으로 살펴보았다. 검정결과는 1999년 4월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기간별 회귀분석(유가증권거래세 폐지 전후)

		상수	주식지수	광공업생산 지수	금리	환율
장 ¹⁾ 기 금 리	1999년 4월 이전	0.3911 (0.80)	1.3453 (7.63)	-0.4303 (-1.01)	-0.4591 (-4.93)	1.7415 (6.28)
	1999년 4월 이후	25.1219 (8.78)	0.3817 (0.92)	0.1072 (0.13)	-0.2566 (-0.81)	-2.3556 (-4.34)
	전체 기간	6.2516 (3.50)	0.7352 (3.62)	1.0138 (2.11)	-0.9633 (-11.85)	0.2460 (0.77)
단 ²⁾ 기 금 리	1999년 4월 이전	-0.4275 (-0.23)	1.2536 (7.18)	-0.5253 (-1.22)	-0.1962 (-4.28)	2.0462 (6.87)
	1999년 4월 이후	24.2922 (8.27)	0.0007 (0.00)	0.4764 (0.61)	0.0271 (1.08)	-1.9678 (-3.60)
	전체 기간	11.9233 (6.53)	0.04132 (0.20)	1.1820 (2.22)	-0.1573 (-7.77)	-0.2628 (-0.76)

주: 1) $F(4, 278) = 54.5320$, $p \text{ value} = 6.727e^{-34}$

2) $F(4, 278) = 81.3996$, $p \text{ value} = 1.199e^{-45}$

3) ()안은 t값임

이러한 결과를 더미를 이용한 검정방법을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즉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기간을 구분하고 각 설명변수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통해 구조적 변화의 유무를 검정하였다.

$$Y = \alpha + \beta D \cdot X + D + \epsilon \quad \text{식 (2)}$$

더미변수 D 는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된 시점인 1989년 4월 이전은 0, 이후는 1인 경우와 유가증권 거래세 폐지 시점인 1999년 4월 이전에 0, 이후에는 1인 경우로 나눈다. 상호작용변수($D \cdot X$)는 더미변수에 각각의 설명변수를 곱한 것으로 정의되며, 전 구간을 통하여 더미변수와 상호작용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 식 (2)를 추정한다.

〈표 IV-5〉 더미변수를 이용한 검정: 장기금리

	전체 기간	환율 제외	양도세 도입	거래세 폐지
상수	6.2516 (3.50)	6.7114 (3.99)	9.2373 (6.00)	9.7496 (6.44)
주가지수	0.7352 (3.62)	0.7012 (3.53)	0.7878 (4.41)	0.5940 (3.40)
광공업생산지수	1.0138 (2.11)	1.2174 (3.04)	0.7266 (1.99)	0.7000 (1.96)
장기금리	-0.9633 (-11.85)	-0.9448 (-12.17)	-1.1198 (-15.37)	-0.2115 (-2.02)
환율	0.2460 (0.77)			
더미 1			-0.8285 (-8.31)	
더미 2				-1.0034 (-9.22)
R^2	0.37	0.37	0.49	0.52

주: () 안은 t값임.

더미변수를 이용한 차우검정에서도 장기금리가 포함된 모형의 경우 주식양도차익과세 이전과 이후에는 $F(2, 266) = 21.51$ 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유가증권거래세 폐지 전후에는 $F(2, 266) = 10.27$ 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양도차익과세와 유가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

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더미변수를 이용한 검정: 단기금리

	전체 기간	환율 제외	양도세 도입	거래세 폐지
상수	11.9233 (6.53)	11.5271 (6.59)	14.1196 (8.22)	11.0833 (8.12)
주가지수	0.0413 (0.20)	0.0646 (0.32)	0.0574 (0.30)	0.3506 (2.02)
광공업생산지수	1.1820 (2.22)	0.9591 (2.16)	0.5297 (1.24)	0.5623 (1.62)
단기금리	-0.1573 (-7.77)	-0.1607 (-8.16)	-0.1882 (-9.76)	0.0389 (1.83)
환율	-0.2628 (-0.76)			
더미 1			-0.6639 (-5.75)	
더미 2				1.2972 (13.55)
R ²	0.23	0.23	0.31	0.53

주: () 안은 t값임.

나.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본절에서는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이나 유가증권 거래세 폐지가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⁹²⁾. 앞서와 마찬가지로 설명변수들을 사용하여 두 가지 사건을 전후하여 자본수지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체 기간을 사용한 회귀분석에서 단기금리가 자본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금리를 포함한 경우에는 주

92) 외국인 주식 순매수나 포트폴리오 수지를 사용하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자료 가용성의 한계로 자본수지를 사용하였다.

가지수 수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우검정에서는, 우선 1989년 4월을 기준으로 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 전후로는 “서로 다른 두 기간의 계수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의 검증결과 $F(4, 278)=0.7126$ 로 5% 유의수준에서 채택되므로, 1989년 4월 양도세 부과 전후로 구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V-7〉 기간별 회귀분석(양도차익과세 도입 전후)

		상수	주가지수	광공업생산 지수	금리	환율
장기 금리	1989년 4월 이전	173.4014 (0.59)	-17.8146 (-1.19)	-4.3478 (-0.11)	5.6734 (0.56)	-6.5696 (-0.23)
	1989년 4월 이후	24.7103 (0.73)	-8.5197 (-1.85)	12.4335 (1.27)	2.0945 (1.31)	-6.3259 (-0.93)
	전체 기간	16.6615 (0.52)	-7.0214 (-1.67)	7.8609 (0.90)	2.2289 (1.46)	-2.4409 (-0.41)
단기 금리	1989년 4월 이전	222.9983 (0.71)	-11.8858 (-0.68)	-26.9721 (-0.46)	20.5253 (0.69)	-8.5909 (-0.29)
	1989년 4월 이후	-29.0229 (-0.92)	2.1269 (0.53)	5.3675 (0.56)	-1.0616 (-3.11)	-4.2563 (-0.64)
	전체 기간	-38.1582 (-1.29)	3.6329 (0.99)	0.6900 (0.08)	-1.0183 (-3.09)	-0.1325 (-0.00)

주: 1) $F(4, 278)=0.7126$, p value=0.5838

2) $F(4, 278)=1.0213$, p value=0.3965

3) () 안은 t값임.

1999년 4월을 기준으로 차우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F(4,278)=7.2203$ 로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거래세 폐지 시점 전후로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기금리를 사용한 경우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표 IV-8〉 기간별 회귀분석(유가증권거래세 폐지 전후)

		상수	주가지수	광공업생산 지수	금리	환율
장 ¹⁾ 기 금 리	1999년 4월 이전	-9.2051 (-0.35)	6.1958 (1.69)	6.6958 (0.94)	2.8759 (1.76)	-16.5757 (-3.26)
	1999년 4월 이후	-40.3929 (-0.55)	-17.9514 (-1.67)	20.6828 (0.98)	-3.216 (-0.39)	14.1285 (1.01)
	전체 기간	16.6615 (0.52)	-7.0214 (-1.67)	7.8609 (0.90)	2.2289 (1.46)	-2.4409 (-0.41)
단 ²⁾ 기 금 리	1999년 4월 이전	-25.0995 (-0.83)	9.1875 (2.67)	7.4270 (1.03)	0.3283 (0.43)	-17.8246 (-3.39)
	1999년 4월 이후	19.7749 (0.27)	-10.2728 (-1.35)	10.9829 (0.57)	-2.2201 (-3.59)	-2.3667 (-0.18)
	전체 기간	-38.1582 (-1.29)	3.6329 (0.99)	0.6900 (0.08)	-1.0183 (-3.09)	-0.1325 (-0.00)

주: 1) $F(4, 278)=7.2203$, $p \text{ value}=1.5e^{-05}$

2) $F(4, 278)=10.3992$, $p \text{ value}=7.300e^{-08}$

3) () 안은 t값임.

한편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더미변수를 사용한 차우검정 방법을 통하여 결과를 재확인해 보았다. 단기금리를 포함한 모형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더미변수와 상호작용 변수들의 동시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2, 271)=1.58$ 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금리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F(2, 271)=0.33$ 으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상수항과 계수값들이 주식양도차익과세 이전과 이후 시기에 모두 동일하다는 것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가증권거래세 폐지 시기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검정을 한 결과는 단기금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F(2, 271)=12.89$, 장기금리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F(2, 271)=9.77$ 로 5% 유의수준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거래세 폐지 이후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차우검정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IV-9〉 더미변수를 이용한 검정: 장기금리

	전체 기간	양도세 도입	거래세 폐지
상수	16.6615 (0.52)	29.6998 (0.90)	19.1126 (0.59)
주가지수	-7.02148 (-1.67)	-8.7104 (-2.00)	-7.1517 (-1.69)
광공업생산지수	7.8609 (0.90)	10.8238 (1.20)	6.8962 (0.77)
장기금리	2.2289 (1.46)	2.1899 (1.43)	3.0794 (1.40)
환율	-2.4409 (-0.41)	-4.8289 (-0.78)	-1.8510 (-0.30)
더미 1		-3.3691 (-1.43)	
더미 2			-1.1910 (-0.54)
R ²	0.01	0.01	0.01

주: () 안은 t값임.

〈표 IV-10〉 더미변수를 이용한 검정: 단기금리

	전체 기간	양도세 도입	거래세 폐지
상수	-38.1582 (-1.29)	-24.0236 (-0.78)	-34.9757 (-1.20)
주가지수	3.6329 (0.99)	1.8183 (0.47)	1.1879 (0.32)
광공업생산지수	0.6900 (0.08)	3.9142 (0.44)	7.4368 (0.86)
단기금리	-1.0183 (-3.09)	-1.0388 (-3.16)	-1.9699 (-4.69)
환율	-0.0132 (-0.00)	-2.6405 (-0.43)	-4.4260 (-0.75)
더미 1		-3.7170 (-1.60)	
더미 2			6.8357 (3.54)
R ²	0.03	0.04	0.08

주: () 안은 t값임.

다. 시사점

일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유가증권거래세를 동시에 폐지하지 않고, 약 10년간 두 제도를 동시에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어떤 사건(event)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구조적 변화를 검정하는 차우검정 방식을 두 가지 사건의 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실행하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GDP의 대용변수인 광공업생산지수를 통하여 통제하였다.

검정 결과는 양도차익과세제도 도입 시기인 1989년 4월을 기준으로 자본수지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식거래량에 대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가증권거래세 폐지를 기준으로 볼 때, 주식시장과 자본수지에 모두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정상으로는 거래세의 폐지가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기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대표하는 광공업생산지수는 예상보다 영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거래량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가지수나 금리를 통하여 그 영향이 이미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즉, 과세제도의 전환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유의적인 변화를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앞의 [그림 IV-2]와 [그림 IV-3]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주식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거나 자본수지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본이 이렇게 순탄하게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점진적인 변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라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분리과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를 정착시켰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세제 개혁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하는 세제조사회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그 방안을 적절히 제시한 바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방안

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앞 절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제도의 미비, 공평과세의 원칙 위배, 세수 문제 등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도입된다면 세제의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원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세수입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성숙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주식시장의 성숙도 검토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에 기업의 자금 조달원으로서 자본시장 역할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어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주식시장의 육성

을 위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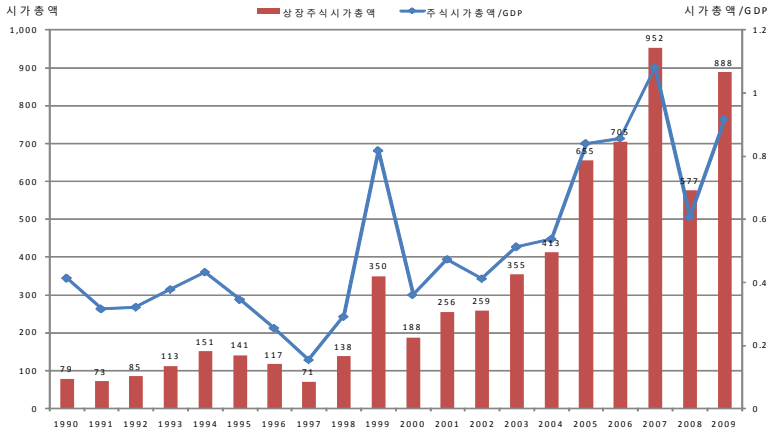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성장한 현재까지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치 이유가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만 보더라도 [그림 IV-4]에서 보듯이 시가총액이 1990년에는 79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888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가총액은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가별 대표적인 주식시장 중에서 세계 13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이다. 또한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도 1990년에는 41.3% 수준에서 2009년에는 91.6% 수준으로 높아졌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이 비율은 시가총액 상위 25개의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11번째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 적립식 펀드가 저축 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주식의 소유가 국민들에게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주주의 수는 380만명이었고, 코스닥시장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주주는 209만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주주의 수는 467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439만명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산업화 초기에 기업의 자금 조달원으로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했던 당시의 정책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규모는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파생금융상품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상장주식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대한 비과세를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은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IV.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127

[그림 IV-4]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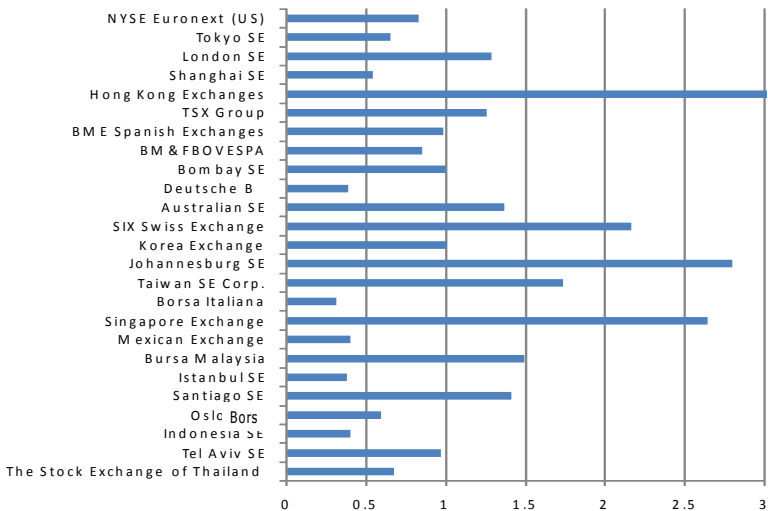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그림 IV-5] 세계 주요 주식시장 주식시가총액/GDP



주: 2010년 3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순임.

자료: 세계거래소연맹(<http://www.world-exchange.org>) 2010. 7.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2)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일 것이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결효과이다.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이 현저한 주식은 자본이득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 주식의 매각을 단념하거나 가능한 한 연기함으로써 유동화를 저해할 수 있다.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경우 주주는 차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주식의 처분을 미루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적자산구성의 선택에 교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과보다는 자본시장의 위축이 더 우려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자들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여 보유주식의 매각을 고려하게 될 텐데, 특히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각을 서두르게 됨으로써 매각이 활발하게 되어 가격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기대수익의 감소로 인하여 시장이 위축되고, 양도차익과세의 도입으로 인한 일시적 투매심리에 의해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통하여 자본의 최종 수요자와 최종 공급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직접 금융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해서는 대량의 장기안정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건전한 자금운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연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위축시킬 것인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1980년대에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던 대만과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만과 일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 경험은 우리에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만의 자본이득 과세안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최고세율 50%로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의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과세하며, 소액투자자는 면세로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이득 과세가 발표된 1988년 10월 24일 이후 1달 동안 30% 이상의 주가가 하락하였으며, 투자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서 결국 대만의 자본이득 과세안은 실패로 돌아갔다. 대만의 자본이득과세안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만의 자본이득과세안은 개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최고세율 50%의 누진세율의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누진을 적용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개인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둘째, 자본이득과세안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새롭게 과세하고자 하였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셋째, 투자자들에 대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 3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했어도 주식시장은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다. 일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의 경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신고분리과세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둘째, 2003년 이전까지 증권업자 등에게 위탁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도대금의 5% 상당액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로 부과함에 따라 거래대금의 1%를 거래세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병행하였다. 셋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과세하면서 1961년부터 대량거래에 대해 예외적으로 과세하면서 서서히 과세 베이스를 넓혀가다가 1989년에 전반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대만과 일본의 경험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지 않은 기간에 그 충격을 극복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1) 과세방법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이 있다.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합과세방식은 주식 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양도차익의 결집효과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국제적 조세경쟁의 결과,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라는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또한 주식 투자자로 하여금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분리과세방식은 납세 및 징세절차가 종합과세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원적 소득세제와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이 장기자본이득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산가치의 증가보다는 인플레이션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 효과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분리과세방식은 세부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OECD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은 <표 III-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분리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본소득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과, 세정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으며, 종합과세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단은 분리과세제도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을 보더라도 동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분리과세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부담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과세체제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⁹³⁾.

2) 주식양도소득의 계산

특정종목의 주식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수회에 걸쳐서 매입을 한 후

93) 이원적 소득세의 입장에서 본 자본이득과세의 장기적 구축방향에 대한 논의는 국중호·김진수(2007)를 참조하기 바란다.

에 그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은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계산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증권사를 통하여 종목별 매수가격의 평균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은 간단하다.

그러나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만일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한다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우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장기보유주식의 실제 취득가액과는 차이가 있게 되며, 당연히 주식양도차익도 실제와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이 더욱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개별법의 경우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인지를 신고해서 우대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선입선출법의 경우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 당시 1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우대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능하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3) 세율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세율을 정하는 것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달리 상장주식은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은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상장주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한편 누진세율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도입 초기에 증권업자에게 위탁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세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하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식양도차익과세로부터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원천분리과세를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원천분리과세제도는 거래세와 다를 바가 없다. 즉, 주식양도대금의 5% 상당액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로 부과하였는데, 이는 거래대금의 1%를 거래세로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은 이와 같은 원천분리과세와 양도이익의 26% (국세 20%, 지방세 6%)의 세율로 과세되는 신고분리과세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천분리과세를 함께 도입하여 신고분리과세와 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서이다. 만일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리과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복잡할 뿐 아니라 세금을 너무 많이 부담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투자행위에 따라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천분리과세는 결국 거래세와 마찬가지인

데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동일한 유형의 세금이 중복적으로 과세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양도차익과세제도 도입시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원천분리과세가 증권거래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후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분리과세만을 시행하여야 하겠지만, 원천분리과세는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투자자가 제도의 변화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또한 원천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경우 원천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도입하지 않는 방안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방안 모두 문제가 있다. 만일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원천분리과세를 도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제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만일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원천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인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할 것이므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굳이 정부가 막대한 행정비용을 지불하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분리과세시 세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현행 상장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보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로 우대하고, 중소기업외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 주식은 30%로 중과세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20%를 기본세율로 하고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시 동 세율을 기본세율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분리과세의 경우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원천분리과세의 경우는 매각대금의 5%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1%의 거래세는 탄력세율제도하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율보다 높은 만큼, 세수의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 거래세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 세율을 2배 이상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입 초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이자·배당 소득세율인 14%의 세율이 보다 나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4%의 세율은 자본이득과 자본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고, 원천분리과세제도하에서 0.7% 정도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셈이므로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갑작스런 대규모 인상에 대한 투자자의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원천분리 과세제도는 폐지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분리과세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장기보유 우대 여부

많은 국가들이 자본이득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대하고 있다. 단기자본이득은 대부분 투기의 결과로 보는 반면, 금융자산의 장기자본이득은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상 우대를 하는 것은 인플레이효과와 결집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분을 공제해 주는 등의 indexation 방식을 이용하여 세제상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장기우대제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상소득세를 적용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0%와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며, 25~35%의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장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대상 편입비율을 경감시키는 'Taper Reliefs'를 시행함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상장특정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2가지 특례가 있었으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10%의 우대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하면서 이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결집효과에 따른 과도한 누진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가 평균화(averaging)로서 이는 장기자본이득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실현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실현된 자본이득을 최고 5년⁹⁴⁾까지 나누어 실현된 것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노르웨이도 유사한 평균화 방식을 사용한다.

프랑스에서는 평균화 방식으로서 연분연승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과세대상 소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다시 5배수함으로써 전체 과세액을 결정하여 누진과세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다. 호주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배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는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대신 동결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즉, 자본이득의 실현을 피하기 위하여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래 가지고 있으려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동결효과는 세제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지적되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래의 정

94) 농장의 경우는 10년

책 목표이기도 하다. 동결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본이득세의 전반적인 세율을 낮추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분을 공제해 주거나 보유기간 연장에 따른 결집 효과를 완화해 준다는 측면 이외에도 주식의 장기보유를 권장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기보유에 대해 우대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1년 이상의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보유기간 연장에 따른 결집 효과를 주식보유기간별로 차등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면 보유기간별로 세율을 점차 낮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영국식의 기간별 체감적 공제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여부

현행 세법에서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손실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당해 주식의 처분이익에 한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은 주식 관련 양도손실과 양도차익 합산으로 순양도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3,000달러(부부 별산 신고시에는 1,500달러)를 한도로 경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순양도손실이 3,000달러보다 큰 경우 미공제된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모든 손실이 완전히 상계될 때까지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다. 영국은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차익에 의해서만 상계된다. 양도손실은 Taper Reliefs 이전의

과세대상 자본이득에서 공제하며,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초과손실의 소급공제는 납세자 사망 후 발생한 양도손실이 아니라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주식양도손실에 대해 주식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후에도 공제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해 처분연도 이후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제상 그 손실보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 통산을 허용하고 추가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다. 특히 항상 주가가 폭락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개인투자자인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양도소득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해 준다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단기적인 수익에만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 건전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먼저 양도손실 상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으로 상계의 대상을 국한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의 상계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소득과 상계를 허용한다면 의도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켜 전체 소득을 조작하여 절세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⁹⁵⁾, 주식시장이 침체에 들어가는 경우 세수손실이 일시에 커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다른 일반소득과의 통산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95) 이러한 조세재정거래를 막기 위하여 손실 공제의 한도를 두기도 한다.

이월공제 측면에서는 만일 손실공제를 할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결손금은 5년 또는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 5년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들 자산과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는 거래의 빈도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반드시 동일한 이월공제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5년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단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1년 정도로 한정하고, 그 후 세수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결손에 대해 2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식양도손실에 대한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도입시기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민감한 사안의 하나는 도입시기이다.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게 한다. 만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통하여 자본의 최종 수요자와 자본의 최종 공급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직접 금융시장으로서 역할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불안전성은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성숙도와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면,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충분조건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수년간 더 자본시장의 성장을 기다리더라도, 제도의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변경의 충격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는 도입 방안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가고, 도입 초기에 원천분리과세 제도를 동시에 허용하는 등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식의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수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여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지분을 3% 또는 지분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겠다.

〈표 IV-11〉 시가총액별 상장회사 분포(2010년말 기준)

(단위: 개, %, 백만원)

시가총액 기준 (KOSPI 계열)	회사수	구성비	시가총액	구성비
10조원 이상	27	3.46	645,201,368	56.50
5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28	3.59	195,897,159	17.15
2조원 이상 ~ 5조원 미만	46	5.90	143,071,924	12.53
1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39	5.00	55,830,824	4.89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43	5.51	29,882,435	2.62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63	8.08	24,352,355	2.13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179	22.95	31,758,334	2.78
5백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145	18.59	10,453,200	0.92
3백억원 이상 ~ 5백억원 미만	81	10.38	3,370,834	0.30
1백억원 이상 ~ 3백억원 미만	102	13.08	1,968,866	0.17
1백억원 미만	26	3.33	179,797	0.02
전체	779	99.87	1,141,967,097	100.00

자료: 한국거래소

〈표 IV-11〉을 통하여 현재 대주주의 기준인 지분율 3%와 100억원 이상의 지분을 개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 3,333억원 이상 되는 회사의 지분율 3%가 약 100억원에 해당한다. 시가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 약 30% 정도의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1개 이상의 회사에 분산투자하고 있는 대주주 등 다양한 투자 행태를 고려할 때, 지분율의 조정보다는 100억원의 절대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대주주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대주주의 기준이 지분율 5% 또는 지분총액 50억원 이상인 코스닥 상장 법인 등의 경우에도 지분총액을 1/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첫 단계로서 적절할 것이다.

5. 소결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한 것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육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지만, 주식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을 이룬 현 시점에 이르러 이제는 세부담의 형평성과 분배정의를 위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금융 관련 세제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과세상 불균형 문제⁹⁶⁾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식양도차익,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다. 단기적인 소폭의 충격이라면 큰 염려가 되지 않으나, 장기적이며 치명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 가능성이 확률상 매우 작더라도 여타 금융시장 및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당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그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계량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 GDP,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규모, 우리나라의 경제력,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극

96)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직접투자에서는 과세범위에 포함되나 간접투자에서는 제외되므로, 간접투자를 통하여 투자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채권 매매·평가차익, 해외주식 평가이익, 그리고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외화자산환차익 등의 경우에는 직접투자에서는 비과세되나, 집합투자에서는 과세되므로 직접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복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일차적인 여건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어떻게(how)’에 있다고 본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해답을 일본의 경험에서 찾고 있다. 즉,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도입 초기에는 사실상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손실공제와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일거에 거래세제도를 양도세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한다면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V.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정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1996년에 KOSPI200 선물 거래를 필두로 개설되었다.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으로는 KOSPI200 선물, KOSPI200 옵션(콜옵션과 풋옵션), 그리고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 관련 상품인 스타선물 등이 있다. 이러한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을 도입할 당시 성공적인 도입과 유치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제정책은 KOSPI200 선물과 KOSPI200 옵션 거래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2010년 기준으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규모는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수 관련 상품 상장 이후 개별주식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으로 주식선물, 주식옵션(주식콜옵션과 주식풋옵션) 등이 상장되었다. 개별주식옵션⁹⁷⁾시장은 2002년 1월에 개장하였고 개별주식선물⁹⁸⁾시장은

97) 유가증권본부에 상장되어 있고 유통주식수가 1천만주 이상, 소액주주가 1만명 이상, 1년간 총거래대금이 5천억원 이상인 보통주식 중에서 시가총액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30개 기업이 발행한 개별 주식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옵션 상품이다.

98) 개별주식옵션과 동일한 조건의 보통주식 중에서 시가총액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25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선물상품이다.

2008년 5월에 개장하였으나, 주가지수상품시장에 비해서는 아직은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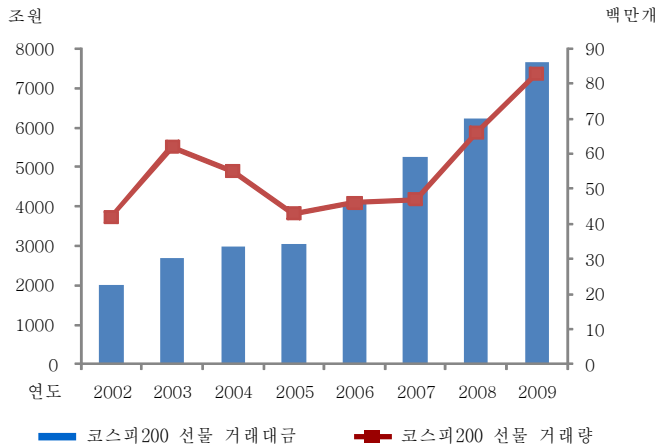
〈표 V-1〉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 규모 추이

(단위: 천개, 십억원)

	코스피200 선물		스타선물		코스피200 옵션		합계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2002	42,868	1,999,411	-	-	1,889,824	125,228	1,933,072	2,130,538
2003	62,205	2,677,990	-	-	2,837,725	159,687	2,900,658	2,847,146
2004	55,609	2,978,521	-	-	2,521,557	144,689	2,577,372	3,125,570
2005	43,848	3,046,204	104	1,327	2,535,202	140,825	2,579,196	3,188,820
2006	46,606	4,071,889	90	1,175	2,414,423	144,534	2,461,119	4,217,598
2007	47,758	5,272,838	22	363	2,709,844	218,374	2,757,625	5,491,575
2008	66,434	6,237,160	13	196	2,766,474	287,229	2,832,922	6,524,585
2009	83,117	7,652,807	0.3	3.3	2,920,991	256,578	3,004,108	7,909,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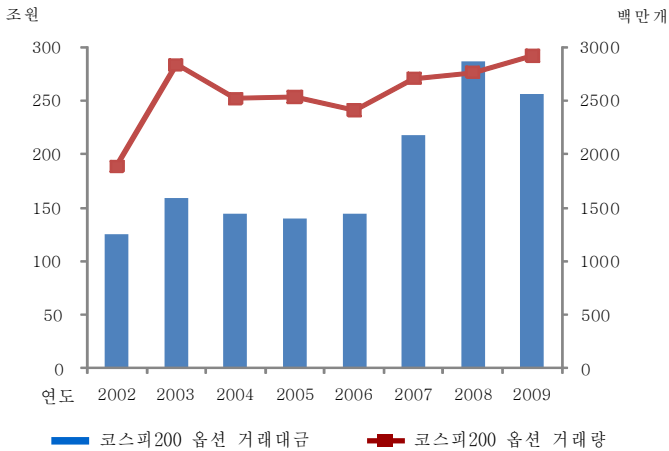
자료: KRX 한국거래소, 『KRX Market』 각 호.

[그림 V-1] 코스피200 선물 거래금액 및 거래량



자료: KRX 한국거래소

[그림 V-2] 코스피200 옵션 거래금액 및 거래량



자료: KRX 한국거래소

<표 V-2> 개별주식 관련 파생금융상품 규모 추이

(단위: 계약, 백만원)

	주식선물		주식옵션 소계		주식상품 합계	
	거래량	계약금액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2005	-	-	3,655	241	3,655	241
2006	-	-	1,295	183	1,295	183
2007	-	-	103	18	103	18
2008	11,552,111	6,845,701	21	-	11,552,132	6,845,702
2009	36,971,510	16,054,783	982	430	36,972,492	16,055,213

자료: KRX 한국거래소, 『KRX Market』 각 호.

나.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측면에서 본다면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지

나치게 투기 과열현상이 나타나서 주식시장을 흔드는 소위 ‘wag the dog’ 현상을 억제할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초 주가지수선물시장을 개설할 당시에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주가지수 관련 선물과 옵션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물 주식거래에 부과하고 있는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정부는 2004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시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시장참여자들의 강한 반발과 현물시장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중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삭제되어 현재까지도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일반 법인의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은 포괄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인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소득 역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준용하고 취급하고 있으며, 기본통칙⁹⁹⁾이나 예규 등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2.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가. 미국

미국의 광범위한 파생금융상품 중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은 각각 내국세법 1256조에서 규정(이하 §1256 계약)하고 있는 규제선물(Regulated futures contracts)과 비주식옵션(Non-equity option)에

99)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귀속시기 등】

해당한다¹⁰⁰⁾. 특히 이 두 가지 유형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헤지 목적 이외의 투자목적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 시가평가되는 자본손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소득세제의 특징인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가 주가 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자본이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장기이득에 대해 과세구간이 5%, 15%인 납세자에게는 5%, 25~35%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15%, 그리고 단기이득에 대해서는 경상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 이때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은 만기 이전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별하기 어렵다¹⁰¹⁾. 이에 따라 내국세법 §1256에서는 자본손익에 대해 40/60 특별 조항을 적용하여, 손익의 40%는 단기손익으로 60%는 장기손익으로 구분한 후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1256계약에서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거 3년 전까지 소급공제될 수 있으며, 동 공제금액은 40%는 단기자본손실로, 60%는 장기자본손실로 공제되며, 동 공제는 해당 소급연도의 §1256계약에서 발생한 자본이득하고만 상계할 수 있다¹⁰²⁾. 만일 3년의 소급으로도 공제하지 못하면 남은 부분은 차기로 이월할 수 있다.

〈표 V-3〉 미국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요

구분	소득인식 시기	소득의 성격
선물	- 시가평가(결제 후 재조정) - 헤지거래는 시가평가하지 않음	- 자본소득으로 취급 - 40%는 단기자본소득, 60%는 장기자본소득으로 간주 - 헤지거래의 경우는 경상손익
§1256옵션	- 시가평가	- 자본손익 - 40/60 규정 적용

자료: 홍범교(2005) p. 47 〈표 III-2〉의 일부

100)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 550, 2006.

101) 개별주식옵션이 아닌 주가지수 옵션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비주식옵션(Non-equity)에 해당한다(홍범교(2005) 참조).

102) 내국세법 1212(C)조 참조

나. 영국

영국은 1962년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부터는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로 구분하였으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자본이득으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1971년부터는 장단기 구분없이 동일세율 30%로 자본이득과세를 하기 시작하였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1985년 「Finance Act」에서 공인된 선물 거래소 및 증권거래소에서 장내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Schedule VI」 대신 자본이득제도(Capital Gains Regime)하에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개인납세자의 경우 공인거래소인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LIFFE)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지수선물(FT-SE 100주가지수)¹⁰³⁾ 등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으로 취급되어 주식양도차익과 동일하게 10%, 20%, 40%의 저축소득세율로 과세하였었고, Taper Reliefs 역시 적용되었다.

1988년부터는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다. 다만, 유가증권, 파생상품 모두 소매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취득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자본이득금액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있다¹⁰⁴⁾.

그러나 영국은 2007년에 자본이득 과세분야에서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3단계 누진세율(10, 20, 40%)체계에서 18%의 단일세율로 개편되었다. 또한 물가연동 공제 등 공제혜택은 폐지되었다. 2010년 6월 23일부터 18, 28%의 두 가지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103) HMRC, "Futures: scope of legislation: financial future", <http://www.hmrc.gov.uk/> 참조

104) 윤창현(2004) 참조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매매를 목적으로 거래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자본소득으로 취급하고 이를 일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한다¹⁰⁵⁾.

다. 일본

일본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1989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 이전에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해 부과되던 유가증권 거래세 및 거래소세는 1999년 4월 1일자로 시장의 효율화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폐지하였다.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인한 이익은 개인의 경우, 2003년까지는 잡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되는 「신고분리과세」 제도로 변경되었다. 다만 주식의 경우 개인납세자가 특별 계좌를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간 이익에 대해서 20%(소득세 15%, 주민세 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종료된 거래가 과세대상이 되며, 여러 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 선물·옵션거래 손익도 총액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때 선물·옵션거래 손익에서 필요경비와 손실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필요경비로는 거래에 필요한 인터넷 통신비, 신문·도서비 등 정보료, 세미나수강료,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이 인정된다.

옵션거래시 손익을 확정하는 것은 경우마다 다르다. 매수 포지션에서 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반대매매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취한 프리미

105) HMRC, "Taxing Derivative Contracts: Introduction: History", <http://www.hmrc.gov.uk/> 참조

업에서 지불한 프리미엄을 공제하고 매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거래 차익이 된다. 그러나 반대매매하지 않은 채 권리행사를 하거나 권리행사 없이 만기가 된 경우에는 그때 손익이 확정된다. 연내 확정된 거래분만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손실금액은 지불프리미엄과 매매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표 V-4〉 일본의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양도차익 과세제도

1. 과세 방법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
2. 손익 통산	상품 선물거래와 관련되는 매매 손익과의 통산이 가능
3. 세율	20%(소득세 15%, 지방세 5%)
4. 손실의 이월	2004년 1월 1일 이후의 결제로 생긴 손실액 가운데, 그 해에 모두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단 주식의 양도이익, 외환 증거금 거래의 매매 손익과의 통산은 불가)
5. 전매, 환매 또는 최종 결제에 의해 이익이 생겼을 경우(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 국제 선물거래)	해당 이익은 잡소득으로서 신고분리과세
6. 납세 방법	확정 신고
7. 이익의 계산 방법	잔금 결제한 결과 생긴 매매 손익에서 위탁 수수료 및 수수료에 부과되는 소비세 등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봄
8. 증서의 제출	증권 회사는 유가증권 선물거래 등에 대해 잔금 등 결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 선물거래 등에 대해서 선물거래에 관한 조서를 잔금 등 결제가 있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권회사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자료: <http://sec.himawari-group.co.jp/tax2010/2-2.html>

한편 주가지수 선물거래 및 주가지수 옵션거래와 관련되는 매매 손익(잔금 결제에 의한 매매 손익으로 한정)은 상품 선물거래(상품의 수수를 하는 것은 제외)와 관련되는 매매 손익과 손익통산할 수 있으나,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의 이익과는 손익통산할 수 없다. 그리고 손익통산을 하고 남은 손익의 경우는 물론 순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 신고를 해야만 3년간의 이월공제가 인정된다¹⁰⁶⁾.

라. 시사점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의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각국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장기이득에 대해 과세구간이 5%, 15%인 납세자에게는 5%, 25~35%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15%, 그리고 단기이득에 대해서는 경장소득세율 35%가 적용된다. §1256계약에서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거 3년 전까지 소급공제될 수 있으며, 동 공제금액은 40%는 단기 자본손실로, 60%는 장기자본손실로 공제되며, 동 공제는 해당 소급연도의 §1256계약에서 발생한 자본이득하고만 상계할 수 있다. 만일 3년의 소급으로도 공제하지 못하면 남은 부분은 차기로 이월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주가지수선물(FT-SE 100주가지수) 등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으로 취급되어 주식양도차익과 동일하게 10%, 20%, 40%의 저축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물론 Taper Reliefs 역시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인한 이익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된다. 연간 이익에 대해서 20%(소득세 15%, 주민세 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주가지수 선물거래 및 주가지수 옵션거래

106) ORIX증권, 「주가지수선물·옵션 Q&A」

www.orix-hiroba.jp/question/archives/2006/11/post__1454.html, 2006. 11. 13.

거래와 관련되는 매매 손익은 상품 선물거래와 관련되는 매매 손익과 손익통산할 수 있으나,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의 이익과는 손익통산할 수 없다. 그리고 손익통산을 하고 남은 손익의 경우는 물론 순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 신고를 해야만 3년간의 이월공제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규모가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규모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파생금융상품 시장도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거래세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절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선진화와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주가지수 선물 및 주가지수 옵션의 양도손실은 동일 상품의 양도차익과만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포괄적 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과 투자 기간에 따라 일단 같은 분류의 거래일 경우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가지수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고 주가지수 옵션은 매달 만기가 돌아오므로 만기가 먼 상품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제도는 필요없다고 판단된다.

3. 도입방안

가. 소득세 과세방안¹⁰⁷⁾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2004년

107) 본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홍범교(2007)에 근거하고 있다.

말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처음 시작될 때, 정부에서는 유치산업 육성의 목적으로 소득세 및 거래세 중 어느 것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KOSPI200 관련 상품의 경우,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이론적인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KOSPI200 관련 상품과 3년 국채선물 그리고 달러선물을 제외한 다른 장내파생금융상품의 경우는 어떠한가? 모든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때, 세금의 부과는 이들 기타 파생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세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미미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 상품에 대한 위험회피 수요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세금의 부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렇다고 비과세 정책이 이러한 상품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더욱이 한계가 있다. 이들 기타 상품에 대한 세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으나 일단 거래량이 미미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보다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앞으로 파생금융상품에 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과세원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현물시장의 형평성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도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물시장과의 균형된 과세체계이다. 그것은 파생상품은 현물에서 파생된 상품이기에 때문에 불가분의 연계관계가 있으며, 형평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관계에 대하여 간단한 균형관계식을 통하여 살펴보자.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인 주식 선물과 기초 주식간의 균형가격관계

를 단순화된 가정하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F_0 를 선물가격, S_0 를 현물주식 가격, r 을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하자.
- ▶ 만일 $F_0 < S_0(1+r)$ 이면 선물가격이 현물을 만기까지 보관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선물계약을 사고, 현물주식을 공매도한다.
 - 만기에 선물계약에 따라 현물주식을 인도 받고 주식을 상환한다.
 - 이 경우 $\{S_0(1+r) - F_0\}$ 만큼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 반대로 만일 $F_0 > S_0(1+r)$ 이면 선물가격이 현물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선물계약을 팔고, S_0 만큼 대출받아 현물주식을 매입한다.
 - 만기에 선물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도하고, $S_0(1+r)$ 만큼 현금을 상환한다.
 - 이 경우 $\{F_0 - S_0(1+r)\}$ 만큼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 따라서 차익거래에 의하여 선물과 현물주식 간에 다음과 같은 균형가격 관계가 성립한다.
 - $F_0 = S_0(1+r)$

이러한 균형가격이 성립하는 것은 만기에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이 수렴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연계성 때문에 선물이 현물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물시장, 나아가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은 파생금융상품이 얼마나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파생금융상품 계약조건이 위험회피에 얼마나 적절한가에 따라 그 수요가 결정되고, 적절한 투기 수요의 존재로 인한 유동성도 위험회피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현물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상품과 현물상품 간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양도차익과세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비대칭적으로 양도소득과세를 할 경우 차익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파생상품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차익거래가 현·선물 시장 가격 간의 균형관계를 이용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동 수익을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손익으로 분리하여 선물시장 계정에서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¹⁰⁸⁾.

만일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자들이 대부분 법인이고, 그들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법인세에서는 현물시장에서의 손익도 함께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 KOSPI200 선물의 경우 4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지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현물시장에서의 과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게 되며, 형평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차익거래나 위험회피거래와 같이 현·선물 시장의 연계관계를 이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한 결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현물시장과 연계관계가 없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투기거래에 의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현물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도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만 보아도 만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양도차익과세가 이루어진다면, 현물시장에서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시장인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보면, 그 기초상품인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양도차익과세가 실현되고 있지 않고,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염려하여 언제 실현될지도 미지수이다.

현행의 다른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비대칭적인 과세를 피하여 파생

108) 윤창현(2004)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현물시장에서의 소액주주 비과세와 같은 방식으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소액거래를 구분하고, 이들 소액거래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겠는가? 파생상품시장에서 소액 거래자를 분류하여 비과세하기는 어려우며,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에서는 주어진 발행주식 수 및 시가총액이 있어서 소액주주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파생상품 시장의 미결제약정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에 대칭되는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소액 거래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이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액주주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미결제약정의 절대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소액 보유자를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면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위험회피거래자의 경우, 위험회피 수요의 규모에 따라 미결제약정을 대체적으로 많이 보유한다. 결과적으로 파생상품의 진정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위험회피거래자는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소규모의 투기거래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물론 위험회피거래의 경우에 위험회피 대상거래와 손익을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2) 손실 공제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자본손실에 대한 과세 취급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양도차손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험회피거래나 차익거래와 같은 현·선물 연계거래의 경우에는 양 시장에서의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면 별도의 손실공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우선 위험회피거래는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회피 포지션이 완벽할수록, 현물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손익공제를 허용한다면, 통합 계정에서 손실의 발생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베이스(basis)의 변화에 따라 다소간의 손실이 실현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성격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목적에 충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손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익거래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차익거래는 말 그대로 균형가격 간의 괴리를 이용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 간의 손익공제만 허용한다면, 통합 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일은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거래의 경우에는 양시장의 연계거래에서 손실공제를 허용하는 한, 이월공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투기거래의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기거래가 지나치게 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투기거래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투기거래의 존재로 인하여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자본형성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현물거래와의 연계성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와 같이 상품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실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투기거래에 있어 이월공제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손익이 제로섬 게임인 것을 감안한다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소득의 성격

미국과 같이 포괄주의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것이 소득의 성격이다. 즉,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성격이 자본소득인지 경상소득인지 하는 문제와 장기투자소득인지 단기투자소득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이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우대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납부세액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의한 소득의 성격은 기초금융자산의 성격, 거래의 주체 및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초금융자산이 자본자산일 경우, 해당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이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위험회피거래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영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사한 논리로 달러와 같이 자본자산의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들의 매매 손익도 경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차익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무위험으로 현·선물 시장에서의 가격 괴리를 이용하는 거래로서, 거래자의 일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어떤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목적으로 본다면 투기거래에 가깝다고 하겠다. 따라서 차익거래의 경우에도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소득과세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을 판별하는 것이 포괄주의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 2000년대 중반에 판매되었던 엔화스왑예금의 사례가 소득의 성격 파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엔화스왑예금은 개인이 은행에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엔화예금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높지 않으나,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수익을 합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수익을 순수 이자수익과 선물환이라는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나눈다면 순수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파생상품 수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전체 수익이 정기예금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모두 이자소득세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¹⁰⁹⁾. 이와 같이 소득의 성격이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열거주의 제도하에서는 소득성격의 파악이 보다 중요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열거주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차익은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미국과 같이 자본이득과 경상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손익통산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위험회피거래나 차익거래와 같은 연계거래의 식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열거주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장단기 성격에 대한 구분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단편적으로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공제제도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장단기 이득을 구분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는 없다¹¹⁰⁾.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장기우대제도는 자본이득세 전반에 걸쳐 투자기간에 따른 우대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파생금융상품

109) 엔화스왑예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노영훈(2005) 참조.

110) 이자나 배당은 자본소득이나, 자본이득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예금금리 우대조치, 소액주주의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세를 감면과 같은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 양도차익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자본 형성의 일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회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동 소득에 대해서도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파생금융상품 중에서 장내 상품의 경우와 같이 통상적으로 1년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이 되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¹¹¹⁾.

4) 소득의 인식시기

소득의 인식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결제기준 또는 현금기준(payment basis or cash basis), 시가기준(mark-to-market basis), 발생기준(accruals basis) 등을 들 수 있다.

결제기준은 반대거래 또는 권리행사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 즉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역사적 원가주의와 실현주의 원칙에 충실한 회계처리방법이나 손익이 이연되어 기간손익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회피거래의 경우에는 손익의 기간 불일치로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가기준은 과세연도 말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실현 손익을 반영하게 되어 수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단점이 있다. 동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시장가격의 인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풍부한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장외시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동 방식은 납세이연을 위한 거래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111)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KOSPI200 선물과 옵션을 보면 각각 1년 이내의 4개 결제월과 6개월 이내의 4개 결제월 상품을 상장하고 있다.

발생기준은 결제기준 또는 현금기준이 수익항목과 비용항목 간의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다.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를,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수익·비용 대응 원칙(matching principle)에 의거하여 기장한다. 즉,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이 인식되는 때에 그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현금의 수취나 지급에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인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최초 거래 계약체결의 시기와 반대거래 계약체결의 시기 간에 차이가 있고, 동 기간 동안 계약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채택하는가는 과세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유발하게 된다.

파생금융상품의 소득 인식 시기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상품별로 상이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장내거래로 인하여 객관적인 시장가격의 파악이 용이한 선물 및 장내 옵션은 시가평가된다. 한편, 선도나 옵션 거래 등은 결제가 일어날 때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결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명목원금계약은 다소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체로 손익을 발생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가평가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 변동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여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단점이 있고, 위험회피 회계에 적용하는 경우 대상 기초자산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기장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동성의 증폭은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끌게 됨으로써 본래 목적인 바와 같은 위험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거에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른 가치 변화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나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위험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

에 따른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평가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제에 시가평가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주의를 선택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시가 기준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결제가 일어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시가평가가 자산의 가치를 보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도입 시에는 일단 일본과 같은 절충적인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거래세 과세방안

1) 차선택으로서의 거래세

우리나라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과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주식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과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비과세제도를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차선택으로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거래세의 부과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시장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적인 시장의 통합과 거래소 간의 합병·제휴 등 국제적인 경쟁을 고려하고, 소득세 체계로 나아가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거래세의 도입은 금융투자업에 다소나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평성의 측면과 재정수요 등을 감안하고, 현재의 파생금융 상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판단한다. 거래세는 또한 징세행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거래세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투기거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원래 위험회피를 위하여 고안된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에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거래는 파생상품거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거래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7년 말부터 불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자금의 투입이 있었고, 사후적으로 이러한 재정자금의 환수와 향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금융거래세의 부과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장개방과 자율화, 규제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시장의 가격 기능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투기의 억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거래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하겠다.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게 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의 배분이 일어나 자본비용을 낮추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거래세의 장점을 하나 더 열거한다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 면세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거래세의 경우에 이러한 차별이 없다¹¹²⁾.

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거래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시

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어느 정도 시장의 위축은 투기거래의 억제로 나타나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것이며,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을 보면 지수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대체투자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그 대체 탄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로의 거래 유출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해외 시장에서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지수를 상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것인지는 결국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의 문제이다. 최근 전자·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하여 원격지 거래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현물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한, 부수되는 사무비용 등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아무래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래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살펴보면 거래세 도입에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얻게 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유관기관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거래세는 수수료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되, 다만 수취의 주체가 다를 뿐이다. 동 수수료는 선물옵션 거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는데, 이것은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경쟁 우위에 있다. 예를 들어, 옵션 거래에 드는 거래비용은 차상위 거래소와 비교할 때 1/15에 지나지 않는다¹¹³⁾.

거래세 도입 단계에서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거래세의 도입만으로 금융시장에 지속적

112)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상품의 개발은 외국증권회사가 하고 우리나라 증권선물회사들은 이러한 상품을 파는 창구 역할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수익의 큰 부분은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1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홍범교(2008)를 참조.

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단계에서는 거래비용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정도로 낮은 세율의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세부 고려 사항¹¹⁴⁾

가) 부과 대상

거래세의 부과는 KOSPI200 선물 및 옵션에 대하여 먼저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시장에서 거래량이 충분치 못한 여타 파생상품시장 육성의 차원에서 KOSPI200 선물 및 옵션에 대하여 먼저 거래세를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거래소세가 부과될 당시, 동경금융선물거래소(TIFFE)에서 거래되는 달러·엔 통화선물, 美달러 단기금리선물, 일본엔 단기금리선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세율경감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TIFFE가 다른 거래소보다 늦게(1989년) 개장하여 이들 상품의 상장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배려 조치였다. 우리나라의 수수료 체계를 보더라도 거래가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나) 납세의무자

KOSPI200 선물과 옵션의 경우, 한국거래소¹¹⁵⁾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외거래 등까지 고려한다면, 대체결제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의 경우, 이를

114) 홍범교(2008) 참조.

115) 자통법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게 되며, 파생상품의 결제업무도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하게 된다(자통법 제378조).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¹¹⁶⁾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궁극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⁷⁾.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파생상품을 금융투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생상품의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부과방식

징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의 부과방식은 현재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수수료는 매수·매도 시 각각 적용되고 있으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거래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¹¹⁸⁾. 이 경우, 세율은 증권거래세와 같이 매도자만 납부하는 경우에 비하여 1/2 수준으로 책정하면 될 것이다.

선물의 경우, 계약체결 거래와 반대매매 모두 거래세 부과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계약을 보유하여 현금결제를 하게 될 경우(KOSPI200 선물)에도 최종거래로 보아 거래세 부과는 가능하다.

옵션의 경우, 계약체결 거래와 행사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 부과가 가능하다. 옵션 행사 시 OTM¹¹⁹⁾ 상태에서 옵션의 가치가 없이 행사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옵션 행사 시 ITM¹²⁰⁾ 상태라면 KOSPI200 옵션도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최종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거래세 부과가 가능하다.

116) 자통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에서 파생상품의 거래를 취급하게 된다.

117) 현행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1/2의 세율로 양도·양수 시 모두 부과하는 것을 상정한다.

118) 스웨덴과 대만의 경우에도 양쪽으로 징수한다.

119) Out of the money는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고, 풋옵션의 경우는 그 반대로 옵션의 가치가 0인 경우를 말한다.

120) In the money는 OTM의 반대로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로 옵션보유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라) 과세표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을,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가격(premium)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KOSPI200 선물의 경우, 'KOSPI200 지수 수준 × 50만원'이 약정금액이 될 것이며, KOSPI200 옵션의 경우, 실제 지불가격(premium)¹²¹⁾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

마) 세율

세율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옵션의 경우는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옵션의 세율이 선물의 세율보다 높다. 현물 주식에 비해서는 과세표준이 훨씬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도입 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험 등을 참고로 할 때, 거래세 최초 도입 시 선물의 경우 최대 세율은 0.01%, 옵션의 경우는 0.1%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한다. 선물의 경우 0.001~0.01% 범위 내에서, 옵션의 경우에는 0.01~0.1%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최대 세율의 경우에도 대만의 1/2 수준이며, 매도·매수자 각각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대만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결정할 경우, 대만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된다.

세수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세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래세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를 생각하면 낮은 세율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양면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롭게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파생금융상품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증가가 해외 유사 거래를 이용할 경우의 거래비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1) 시가(quotation) × 10만원

일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상태를 타파하는 측면에서 초기에 낮은 세율로 인하여 세수가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거래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일한 세율하에서도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정책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입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당시 현물 주식 시장에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형평성 논리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 비과세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현재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대안은 거래세의 부과이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아직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증권거래세법안에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를 규정하는 법안으로서 과세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선물은 약정금액, 옵션은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하며 영(0)의 세율이 적용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일단 영(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4. 소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일단 거래세의 형태로 도입한 후에 양도차익과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형태로 전환될 경우,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류과세의 형태가 될 것을 전제로 하였다. 향후 이러한 자본이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기회로 결론을 미루고자 한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은 1996년에 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4,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개인별 금융소득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오히려 도입 초기보다 종합과세의 범위는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기준을 낮추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조를 진정한 종합과세체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포기하고 이원적 소득세제에 가까운 체제로 갈 것인지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는 금융소득의 범위에 이자·배당 소득 등 소위 자본소득만 포함하고 있다.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의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현재의 기조는 자본이득세는 분류과세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관련이 없는 체제이다. 향후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모두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별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이원소득세제와 유사한 체제로 나아가되 자본이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할지¹²²⁾는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122) 합산하는 경우에도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거나, 아니면 통합자본이득에 대해서 노동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체계와는 별개의 완화된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VI.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본장에서는 일부 OECD 회원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세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역할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으로서 자본이득과세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우리나라의 상속세 현황

가. 상속세 과세현황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비율은 <표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피상속인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비율은 2004년 0.7%, 2005년 0.8%, 2006년 0.7%, 2007년 0.7%, 2008년 1.0%, 2009년 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은 2004년 30.6%, 2005년 33.4%, 2006년 26.6%, 2007년 31.0%, 2008년 44.6%, 2009년 51.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과세현황을 <표 VI-2>에서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은 8명에 불과하였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699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1조 5,464억원의 17.4%를 차지하였다.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은 312명이었으며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1조 625억원으로 전체 상

속세액 1조 5,464억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68.7%를 차지하였다. 상속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은 1,292명이었으며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1조 4,184억원으로 전체 상속세액 1조 5,464억원의 91.7%를 차지하였다.

〈표 VI-1〉 상속세 과세비율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합계		과세			과세미달	
	피상속인 수	상속 재산가액	피상속인 수	상속 재산가액	총 결정세액	피상속인 수	상속 재산가액
2004	258,021 (100.0)	15,668,786 (100.0)	1,808 (0.7)	4,791,927 (30.6)	953,973	256,213 (99.3)	10,876,859 (69.4)
2005	227,004 (100.0)	13,891,030 (100.0)	1,816 (0.8)	4,644,911 (33.4)	725,607	225,188 (99.2)	9,246,119 (66.6)
2006	304,215 (100.0)	17,804,629 (100.0)	2,221 (0.7)	4,736,341 (26.6)	757,582	301,994 (99.3)	13,068,288 (73.4)
2007	355,789 (100.0)	21,103,460 (100.0)	2,603 (0.7)	6,542,861 (31.0)	1,166,555	353,186 (99.3)	14,560,599 (69.0)
2008	383,001 (100.0)	19,362,502 (100.0)	3,997 (1.0)	8,635,999 (44.6)	1,332,859	379,004 (99.0)	10,726,503 (55.4)
2009	288,503 (100.0)	19,805,111 (100.0)	4,340 (1.5)	10,108,267 (51.0)	1,546,448	284,163 (98.5)	9,696,844 (49.0)

주: 1. 2009년 기준임.

2.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0)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피상속인 중에서 불과 1.5%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될 뿐 아니라, 과세대상인 피상속인 중에서도 불과 7.2%에 해당하는 312명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 상속세의 2/3가 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과세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과세		
	피상속인 수	상속재산가액	총 결정세액
1억 이하	81 (1.9)	5,557 (0.05)	87 (0.006)
3억 이하	389 (9.0)	72,765 (0.7)	420 (0.03)
5억 이하	192 (4.4)	77,702 (0.8)	1,444 (0.09)
10억 이하	806 (18.6)	618,024 (6.1)	18,582 (1.2)
20억 이하	1,580 (36.4)	2,289,724 (22.7)	107,507 (7.0)
30억 이하	615 (14.2)	1,503,182 (14.9)	149,981 (9.7)
50억 이하	365 (8.4)	1,418,069 (14.0)	205,944 (13.3)
100억 이하	207 (4.8)	1,458,184 (14.4)	297,614 (19.2)
500억 이하	97 (2.2)	1,768,732 (17.5)	495,015 (32.0)
500억 초과	8 (0.2)	896,328 (8.9)	269,854 (17.4)
합계	4,340 (100.0)	10,108,267 (100.0)	1,546,448 (100.0)

주: 1. 2009년 기준임.

2.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2010)

상속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표 VI-3〉에서 살펴보면 2009년 금액기준으로 토지가 가장 많은 3조 4,088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40.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건물이 2조 2,542억원(27.0%), 금융자산이 1조 2,991억원(15.6%), 유가증권이 8,799억원(10.5%), 기타 상속자산이 5,072억원(6.1%)의 순이었다.

〈표 W-3〉 자산 종류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과세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6	2,221	4,021,351	n.a.	1,839,823	n.a.	705,798	n.a.	575,872	n.a.	647,900	n.a.	251,958
2007	2,603	5,639,492	1,876	2,293,302	1,821	1,208,156	506	905,222	2,311	931,546	1,127	301,266
2008	3,997	7,274,015	2,787	2,982,825	2,892	1,977,689	647	915,197	2,755	1,049,041	1,220	349,263
2009	4,340	8,349,239	3,053	3,408,839	3,134	2,254,206	771	879,869	3,039	1,299,084	1,393	507,241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국세청(2010)

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제도

상속세 과세체계는 일반적으로 유산세 체계와 유산취득세 체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유산세 체계는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각 상속세를 부담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체계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개인별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한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와 유산취득세 체계 중에서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재산의 범위는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며,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결정되면, <표 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의 상속세공제를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표 VI-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총 다섯 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표 VI-4> 상속세 공제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자공제	-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 1인당 3,000만원 - 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 연수 - 1인당 3,000만원 - 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 연수	최소 5억원 30억원 한도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이 - 2억원 이하 - 2억~10억원 - 10억원 초과	- 가업상속재산가액 - 2억원 - min(가업상속재산×40%, 최대 100억원)	최대 100억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 2,000만원 이하 - 2,000만~1억원 - 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전액 - 2,000만원 -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를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		

주: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와 일괄공제 중 선택

자료: 기획재정부(2009)

〈표 VI-5〉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7조).

2. 상속세 존폐에 관한 논쟁

가. 사망 시점에서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취급방법

자산의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시점에서 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를 취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① 과세: 사망 시점에서 사망자가 자산을 처분하여 이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과세
- ② 유예: 이득이 발생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미실현 이익), 상속자가 실제로 자산을 처분할 때 모든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 이 경우, 자산의 취득가격은 피상속자가 자산을 취득한 원래 가격으로 계산
- ③ 면세 또는 비과세

〈표 VI-6〉은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세의 과세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일본,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거나, 직계자손에게 상속되는 농장 등은 과세를 유예하는 예외 조항을 두기도 한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는 과세를 유예한다. 나중에 상속인이 동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본이득은 피상속자가 자산을 처음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한다¹²³⁾. 이 방법은 별도의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상속 시점에서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표 VI-6〉 상속·증여시의 자본이득과세¹⁾

형 태	국 가	상 속	증 여
분리과세 국가	프랑스	과세	과세
	아일랜드	과세	과세
	스웨덴	유예	유예
	스위스 ²⁾	비과세	비과세
	영국	과세	과세
	일본	과세	과세
종합과세 국가	호주	유예	유예
	캐나다	유예	유예
	덴마크	과세	과세
	독일	과세	과세
	룩셈부르크	과세	과세
	노르웨이	면세	면세
	스페인	유예	유예
	미국	과세	과세

주: 1) European Tax Handbook 등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증여 시의 자본이득과세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과세 현황을 수록함.

2)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비과세, 지방정부에서 과세.

자료: European Tax Handbook(2010) 및 각국 국세청 홈페이지

123) 상속 시점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자산을 두 명의 상속인이 상속할 때, 하나는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부터 자산가치의 변동이 없고, 다른 하나는 취득 이후 자산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두 자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각각 다른 과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아일랜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에 대하여 면세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자의 사망시점에서 동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 방식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사망 직전에 실제로 자산을 처분하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동결효과를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취급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상속세 존폐론

한상국·배준호·이광재(1996)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자산과세, 소득과세 보완, 노령기 응익과세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²⁴⁾. 먼저 자산과세는 자산이 가져오는 소득은 노동소득과 달리 연령과 더불어 감소하는 일이 없고 여가의 희생도 수반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자산은 과세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자산과세를 도입하여 불공평한 부의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세제가 수행해야 할 공평성 제고 기능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과세 보완은 소득의 발생단계에서 행해지는 소득과세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 이전되는 시점에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탈세 소득과 자산인플레이션에 의해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현행 소득세제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령기 응익과세는 은퇴세대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부의 상당부분이 청장년기 세대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이전되는 부분

124) 한상국·배준호·이광재(1996), pp. 76~101.

이라는 점에서 노령기 세대인 피상속인은 이상의 이전급부에 대한 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연금제도로 인해 세대간 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와 대칭적 관계에 있는 자산 승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사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이론은 한상국·배준호·이광재(1996)가 제시한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근거 이외에도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출발점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도덕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상속세는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에게만 그 부담이 귀착되고 있다. 상속세는 미국의 경우 사망자의 2% 미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자의 1.5% 미만이 부담할 정도로 일부 부유층의 황제에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자의 자녀들이 부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의 수혜를 많이 받는 계층과 상속의 수혜를 적게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가능한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첫째,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과세되는 비논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사망세(death tax)라는 것이다. 상속세는 인간의 사망 시점에 부과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고 낭비하고 수준 높은 소비생활을 즐겼던 사람에게는 면세될 뿐 아니라 상속인들의 슬픔을 가중시키는 비논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세금이라고 하여 오래전부터 사망세라고 불렀던 것이다. 조동근(2008)도 상속세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피상속인 유산을 떼어가는 사망세라고 했다.

둘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형성하면서 소득세를 이미 부담하였는데 이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속세 지지론자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이며, 만일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득은 과세누락이 된다는 것이다¹²⁵⁾. 즉, 상속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그 재산의 가치상승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양도되는 시점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상속세는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먼저 상속세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보다 피상속인이 될 사람의 통상적인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어 상속과세의 부담액 이상으로 저축을 감소시키고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그 결과 투자를 감소시킨다. 또한 최광(2008)은 국가간 자본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폐쇄경제 시절에나 통하던 정책수단을 고수하게 되면 자본의 유출 등에 의한 경제성장의 둔화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고용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 상속세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Beach (2000)는 유동성 있는 저축이 부족한 농장주들의 유산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과중하게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농장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청산되고 높은 자본비용이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게 될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김정호 (2008)는 중소기업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 재산 상속이 뛰어난 지능이나 미모, 신체조건, 운동능력, 예술적인 능력, 참을성, 치밀함, 독립심 등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불평등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ii) 경영권을 물려주기가 어려울수록 기업가들은 자신의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소비에 열을 올리거나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쉬운 형태의 재산을 축적하려 할 것이다.

125) Gale & Slemrod(2000)

iii)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바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McCaffery(1999)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주요국의 사례

가. 상속세 유형¹²⁶⁾ 및 국가별 상속세제 현황¹²⁷⁾

상속세(증여세 포함)는 부의 이전과 관련한 조세(wealth transfer taxes)로, 취득형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유산형 상속세(estate tax)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취득형 상속세는 ‘취득인인 상속인’을 납세자로 하며, ‘취득인’이 받는 상속(증여)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근친성에 따라 세율과 공제대상을 달리하고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유산형 상속세는 ‘고인인 피상속인’이 납세자이며, ‘이전인’이 주는 유산(증여)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 세제는 근친성에 따라 세율과 공제대상을 달리하고 세금부담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배려를 하지 않는다(〈표 VI-7〉 참조).

126) <http://www.taxpolicycenter.org/>, "Wealth Transfer Taxes: What is an Inheritance Tax?", October 15, 2009. 정리

127) <http://www.agn-europe.org>, Tax Surveys, Gift & Inheritance Tax A European Comparison 2010. 정리

〈표 VI-7〉 상속세 유형 비교

구분	취득형 상속세	유산형 상속세
납세자	상속인(수증인)	피상속인(증여자)
과세기준	‘취득인’이 받는 상속자산	‘이전인’이 주는 유산자산
이해당사자간 근친성에 따른 세부담 조정	○	×

또한 취득형 상속세는 유산형 상속세와 달리, 피상속인(증여자)에게 그들의 부를 보다 널리 분배하도록 하는 유인을 갖는다. 즉, 상속인은 누구든지 상속공제(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아지게 된다¹²⁸⁾.

아울러 취득형 상속세는 과세기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Accessions tax’는 상속인(수증자)이 평생 이전받은 유산 혹은 증여자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둘째 ‘Annual inheritance tax’는 특정 연도에 1명의 상속인(수증자)이 받은 유산 및 증여자 자산에 과세한다. 마지막으로 ‘Inclusion tax’는 유산과 증여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적용 세율은 이전자산의 규모(증여 또는 상속)와 해당 상속인(수증자)의 여타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된다.

Tax Policy Center(2009)¹²⁹⁾는 산업화된 3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부의 이전세 유형을 조사하였다([그림 VI-1] 참조). 그 결과 조사대상 국가 대부분이 유산형 상속세(estate & gift tax)보다 취득형 상속세(inheritance tax)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³⁰⁾. 그리고 34개국 중 절반 이상이 취득형 상속세 중 ‘Annual

128) 현재 미국은 2010년 현재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연방 차원에서 2010년 현재 폐지되었으며, 일부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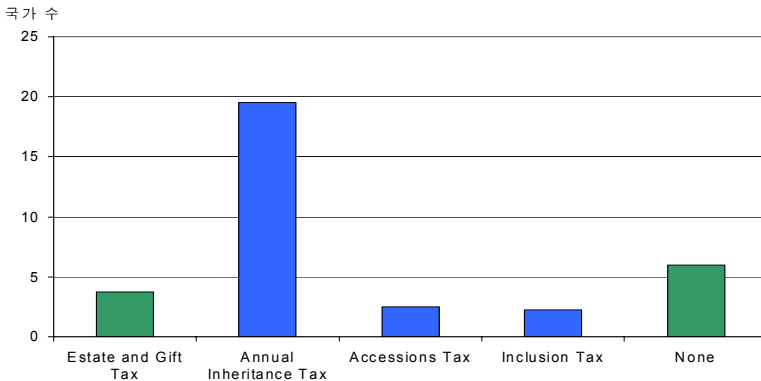
129) [그림 VI-1]의 인터넷 자료

130) ‘취득형 상속세’가 ‘유산형 상속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는 전자가 후자보다 조세회피방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inheritance tax' 유형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몇 개 국가만이 'Accessions tax'와 'Inclusion tax'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산형 상속세는 미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유산형 상속세가 폐지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유산형 상속세에서 취득형 상속세로 변경되었다.

[그림 VI-1] 34개국의 상속세 유형



자료: <http://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key-elements/estate/inheritance.cfm>

"Wealth Transfer Taxes: What is an Inheritance Tax?", 2009. 10. 15. 재인용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또 다른 일부에서는 유산형 상속세가 취득형 상속세 보다 관리가 쉽다고 하는데, 이는 관련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는 여러 상속인에게 유산을 남기는 데도 불구하고, 유산형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인 피상속인 기준으로 신고서가 제출되는 반면 취득형 상속세는 납세자인 수명의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련 서류관리에 있어 전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취득형 상속세 과세에 있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상속인 수는 실제 상속인 수 대비 절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서류면에서 유산형 상속세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AGN International(2010)¹³¹⁾에서도 매년 유럽지역의 증여 및 상속세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¹³²⁾. 약 30개국을 대상으로 증여 및 상속세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의 5개국에서 증여 및 상속세제가 모두 폐지되었다. 반면 몰타와 루마니아는 상속세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사대상 국가들은 증여 및 상속세제를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조사는 <표 VI-8>에서 보듯이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자산 과세면제 여부, 표준적인 상속세율 유무, 상속세 신고기한 유무, 세율 적용시 이전자산가액 및 이해당사자 간 관계 반영 여부 및 자산 유형별 자산가액산정 시 인정 범위 등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폴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산에 대해 과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녀 이전자산에 대한 과세 면제는 배우자 면제보다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및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의 경우 상속가액의 50%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세율 적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 유형에 따라 인정가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거주 주택(family home)의 경우 대개 시가로 과세되나, 일부 국가에서는 시가의 일정비율만 과표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 80%, 리히텐슈타인 50%, 포르투갈 90%, 스페인 58%, 스웨덴은 75%를 과표로 한다. 주식의 경우는 상장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자산가액 인정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상장주식의 과표는 시가의 75%, 비상장주식의 과표는 30%이다.

131) http://www.agn-europe.org/htm/firm/news/ttf/2010/Brochure_Gift&Inheritance2010.pdf

132) 특히 국가별 납부할 상속세 수준의 비교를 위해 납세자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개인으로 2010년 1월1일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총보유자산은 260만유로(주택 60만유로, 현금 100만유로, 상장주식 30만유로, 비상장주식 70만유로)를 가진 자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표 VI-8〉 유럽국가 상속세제 비교(2010)

국가	무상이전세제		일반 상속/ 증여 세율	세율 고정 여부	신고 기한 유무	세율적용 기준		과세면제 여부		시가반영비중			
	증여세	상속세				이전 자산 가액	이전 당사자 간관계 (근친성)	배우자 이전 자산	자녀 이전 자산	거주 주택	현금	상장 주식	비상 장 주식
오스트리아	N	N	N	N	N	Y	Y	N	N	0%	0%	0%	0%
벨기에	Y	Y	N	N	Y	Y	Y	N	N	100%	100%	100%	100%
불가리아	Y	Y	Y	N	Y	Y	Y	Y	Y	100%	100%	100%	100%
키프로스	N	N	N	N	N	N	N	N	N	0%	0%	0%	0%
체코	Y	Y	N	N	Y	Y	Y	Y	Y	100%	100%	100%	100%
덴마크	Y	Y	Y	Y	Y	N	Y	Y	N	100%	100%	100%	100%
에스토니아	N	N	N	N	N	N	N	N	N	0%	0%	0%	0%
핀란드	Y	Y	N	N	Y	Y	Y	Y	Y	100%	100%	100%	100%
프랑스	Y	Y	N	N	Y	Y	Y	Y	N	80%	100%	100%	100%
지브롤터	N	N	N	Y	N	Y	Y	Y	Y	0%	0%	0%	0%
그리스	Y	Y	N	N	Y	Y	Y	N	N	100%	100%	100%	100%
헝가리	Y	Y	N	N	N	Y	Y	Y	Y	100%	0%	100%	0%
아일랜드	Y	Y	Y	Y	Y	Y	Y	Y	N	100%	100%	100%	100%
이탈리아	Y	Y	N	N	Y	Y	Y	N	N	100%	100%	100%	100%
리히텐슈타인	Y	Y	N	N	N	Y	Y	N	N	50%	100%	100%	70%
룩셈부르크	Y	Y	Y	N	N	Y	Y	Y	Y	100%	100%	100%	100%
몰타	N	Y	N	N	Y	Y	Y	Y	Y	50%	100%	0%	100%
네덜란드	Y	Y	N	N	Y	Y	Y	N	N	100%	100%	100%	100%
노르웨이	Y	Y	Y	N	Y	Y	Y	Y	Y	100%	100%	100%	60%
폴란드	Y	Y	Y	N	Y	Y	Y	N	N	100%	100%	100%	100%
포르투갈	Y	Y	Y	Y	N	N	Y	Y	Y	90%	100%	100%	100%
루마니아	N	Y	Y	Y	Y	Y	N	N	N	100%	100%	100%	100%
세르비아	Y	Y	Y	N	Y	Y	Y	Y	Y	0%	0%	0%	0%
슬로바키아	N	N	N	N	N	N	N	N	N	0%	0%	0%	0%
스페인	Y	Y	N	N	Y	Y	Y	Y	Y	58%	100%	100%	5%
스웨덴	N	N	N	N	N	N	N	Y	Y	75%	100%	75%	30%
스위스	Y	Y	Y	N	Y	Y	Y	Y	Y	100%	100%	100%	100%
우크라이나	Y	Y	Y	Y	Y	Y	Y	Y	Y	100%	100%	100%	0%
영국	Y	Y	Y	Y	Y	Y	N	Y	N	100%	100%	100%	0%

주: 1) 표시 국가는 2010년 현재 상속증여세제 시행하지 않는 국가이며, 오스트리아는 2008.7.31.에 폐지하였음. 이탈리아는 2001년(베를루스쿠니 정권) 폐지하였다가 2007년(프로디정권)에서 재도입함.

자료: <http://www.agn-europe.org>, "Gift & Inheritance Tax A European Comparison 2010". 도표정리

나. 국가별 세제 현황

1) 상속세 폐지국가

가) 캐나다

(1) 상속세제 변천과 특징

캐나다 연방정부는 1971년 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던 연방상속세(estate and gift taxes)를 폐지하였다. 연방상속세 폐지 사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산의 무상이전 시(사망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별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둘째, 연방상속세의 기능에 대해 당시 신랄한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조세양여협정(Dominion-Provincial Tax Rental Agreement)¹³³⁾으로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상속세 순세수(net revenue)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방상속세 폐지 이후 10개 주¹³⁴⁾ 중 6개 주정부에서 상속세제가 재도입되었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체결했던 조세양여협정에 의해 양여받았던 연방상속세 세수의 75%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나타난 반응이었다. 하지만 주상속세 역시 연방상속세 폐지의 경우처럼 사망 시 간주실현이득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1973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를 필두로 주상속세법을 폐지하기 시작하여 1986년 퀘벡주를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상속세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추가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또 다른 과세형태인 증여세 역시 1969년 연방상속세

133) 1947년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연방상속세 세수분의 50%를 양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상속세 폐지하는 협정이 처음 체결되었다.

134) 전체 13개 주 중 폐지 전부터 주상속세제를 별도로 운영하던 3개 주 제외

와 통합하였으나, 1971년 이후 폐지되면서 주상속세 부활과 더불어 주 정부 차원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가 이 역시 주상속세 소멸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다.

요약하면, 현재 캐나다 소득세법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사망 시의 유산상속과 생전 증여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제(증여세 포함)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 대신 상속세의 납세자인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상속인에게 대상자산을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에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¹³⁵⁾.

(2)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캐나다는 피상속인이 벌어들인 모든 수입(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료, 로열티, 연금 및 고용보수 등)에 대해 연방소득세와 주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노후연금상품(registered retirement pension plans, RRPP)과 노후소득펀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RRIF)의 자산 가치도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자산 역시 사망 직전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공정시장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실현되는 자본이득(또는 자본손실)을 과세소득과 통산한다. 다만 간주실현에 의한 자본이득 혹은 자본손실은 일부(50%)만 소득에 포함하거나 혹은 공제하는데¹³⁶⁾, 그 이유는 자본이득에 존재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만일 간주자본손실이 간주자본이득보다 더 커서 실질손실(net loss)이 남는 경우, 이를 사망 연도에 발생한 다른 유형의 과세소득과 공제하거나 또는 고인인 납세자가 사망하기 전 3년간 발생한 과세대상 자본이득에 대해 소급하여

135) ITA 제70조(5)

136) 자본이득의 일부만을 과세소득에 합산하는 이유는 자본이득에 존재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제할 수 있다¹³⁷⁾. 간주처분규칙(Deemed disposition rules)의 사례를 들어보면, 부모가 100캐나다달러에 취득한 주식을 그 주식의 공정시장 가액이 500캐나다달러로 평가되는 때 이를 자녀에게 상속했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그 주식을 자녀에게 500캐나다달러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이득은 400캐나다달러가 되고 부모는 200캐나다달러($400 \times 50\%$)의 자본이득을 과세소득에 합산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500캐나다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600캐나다달러를 받고 양도하면 100캐나다달러의 자본이득이 실현되고 그 중 50%인 50캐나다달러가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다¹³⁸⁾.

이러한 피상속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율’과 과세연도 마지막 일자에 거주했던 ‘해당 주지역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표 VI-9〉 & 〈표 VI-10〉 참조), 피상속인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실효한계세율은 〈표 VI-9〉에 나타난 세율의 1/2이다. 〈표 VI-10〉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지역별 결합 최고한계세율로 연방소득세율을 포함하고 있다.

〈표 VI-9〉 캐나다 연방소득세율

(단위: CAD, %)

과세소득	소득세율
40,970 이하	15
40,971~81,941	22
81,942~127,021	26
127,021	29

자료: <http://online.ibfd.org/kbase/>, Collections/Country Keyfeatures/Income Tax, (Canada Part).

137) ITA 제111조(1), 제111조(2)

138) <http://online.ibfd.org/kbase/>, Collections/Country Keyfeatures/ Inheritance and Gift Taxes, (Canada Part).

〈표 VI-10〉 캐나다 결합세율

(단위: %)

주지역	결합세율(combined rate)
Newfoundland and Labrador	44.5
Prince Edward Island	48.3
Nova Scotia	47.4
New Brunswick	43.3
Quebec	48.2
Ontario	46.4
Manitoba	46.4
Saskatchewan	44.0
Alberta	39.0
British Columbia	43.7
Yukon	42.4
Northwest Territories	43.1
Nunavut	40.5

주: 결합세율에는 연방 및 주지역 소득세율 외에 부가세(surtax)와 비례세(flat tax)가 포함됨.

자료: <http://online.ibfd.org/kbase/>, Collections/Country Keyfeatures/Income Tax, (Canada Part).

나) 스웨덴

(1) 상속세제 변천과 특징

스웨덴은 1884년 유산형 상속세를 최초 상속세제로 도입하였으며, 당시의 세율은 현재보다 월등히 낮아서 법적 상속인이 있을 때는 0.5%, 없을 경우는 0.6%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유산형 상속세는 1895년에 취득형 상속세 형태로 대체되었으며, 1915년에는 증여세제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에는 취득형 상속세 외에 유산형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계속 무산되었다. 대신 기존의 취득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대폭 높아졌고, 부유세(wealth tax)가 도입되면서 이들 계층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948년 마침내 유산형 상속세가 도입되면서 상속세는 취득형과 유산형의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게 되었다. 유산형 상속세는 약 10년간 지속되다가 1959년 폐지되었으며, 이때에도 이를 대신하여 취득형 상속세 부담이 강화되었다.

취득형 상속세(증여세 포함)를 통해 ‘형평성’을 강조하는 상속세 정책이 이후 지속되다가 2004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스웨덴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에 대한 취득형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하였다¹³⁹⁾. 이러한 변화는 「1991년 세제개혁」¹⁴⁰⁾의 흐름이 200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속세제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1991년 세제개혁」의 정책목표인 ‘경제성장’을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2005년 상속세제를 폐지하였다고 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다.

139) Eliason & Ohlsson(2010) 참조

140) 「1991년 세제개혁」은 스웨덴의 지나치게 높은 세부담과 정부지출 규모로 특징지어진 재정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저조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제 등에서 정책목표를 ‘형평성’에서 ‘경제성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한계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2)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낮은 단일세율을 부과하며 3)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수단이 활용되었다.

〈표 VI-11〉 스웨덴 상속증여세제의 변천

연도	주요 내용
1884	취득형 상속세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세율은 법적 상속인이 있을 경우는 0.5%, 없을 경우는 0.6%이었음.
1894	상속세제의 세율이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 최대 1.5%
1915	현대적 의미의 증여세제가 처음으로 도입
1933	정부는 유산형 상속세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대신에 기존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높였음.
1934	정부는 유산형 상속세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의회에서 무산되었음. 대신 부유세(wealth tax)를 시행
1941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
1948	유산형 상속세(estate tax) 시행
1959	유산형 상속세제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취득형 상속세와 증여세 세 부담 증가
2004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취득형 상속세를 폐지
2005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2008	부유세 폐지

자료: <http://ucfs.nek.uu.se/>, <http://ucfs.nek.uu.se/>, "The legacy for the Swedish gift and inheritance tax", 1884~2004, 2009, 8.

현진권(2010), p. 162. 도표 참조.

상속세제의 완전 폐지까지 상속 및 증여세의 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표 VI-12〉와 같다. 취득형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유산형상속세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던 1933년과 유산형 상속세가 폐지된 1959년에 세 부담 강화정책으로 인해 세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 세제개혁 시행으로 개혁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여파로 1992년부터 세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상속세제 폐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취득형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인 범주에 따라 세율 적용에 차이를 보인다. 반면 유산형 상속세는 상속인 범주와 상관없이 시행기간 내내 50%(최고한계세율)의 고정세율이 적용되다가 1959년 폐지되었다.

〈표 W-12〉 상속세율 변천(1884~2004)

(단위: %)

근거법	과세기준	시행일	세율			
			배우자 및 직계비속	부모 및 형제자매	교회 및 재단 등 공익단체	기타
1883 SO ¹⁾	유산형	1884. 1. 1.	0.5	0.5	0.5	0.5
1884 SO	유산형	1885. 1. 1.	0.5	0.6	0.6	0.6
1894 SO	취득형	1895. 1. 1.	1.5	3	3	3
1908 SO	취득형	1910. 5. 1.	4	8	12	16
	취득형	1911. 9. 1.	4(4.5) ³⁾	8(8.7)	12(13)	16(18)
1914 IGL	취득형	1918. 1. 1.	8(12.5)	12(16.5)	12(13)	16(18)
	취득형	1933. 1. 1.	20	24	30	35
1942 IGL	취득형	1942. 1. 1.	20	24	30	35
	취득형	1959. 1. 1.	60	65	30	65
	취득형	1971. 1. 1.	65	72	30	72
	취득형	1983. 1. 1.	70	75	30	75
	취득형	1987. 1. 1.	60	65	30	65
	취득형	1992. 1. 1.	30	30	30	30
폐지	취득형	2005. 1. 1	-	-	-	-
		2004. 12. 17 ²⁾	-	-	-	-
1947 EL	유산형	1948. 1. 1.	50	50	50	50
	유산형	1958. 1. 1.	50	50	50	50
폐지	유산형	1959. 1. 1.	-	-	-	-

주: 1) SO는 인지세조례(Stamp Ordinance), IGL(AGL)은 상속 및 증여세법(Inheritance and Gift Tax Law), EL은 Estate Tax Law(유산세법)

2)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아시아 쓰나미로 많은 스웨덴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2004. 12. 17~12. 31 기간 동안의 사망에 대해 과세 면제

3) () 안은 최고한계세율(the highest marginal tax rate)을 의미

자료: <http://ucfs.nek.uu.se/>, "The Legacy of the Swedish Gift and Inheritance Tax", 1884~2004, 2009, 8, p. 24. 도표 참조.

(2) 자본이득 과세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다. 소득세법(ITA)은 제4장에서 유산과세(taxation of estate)에 대해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소득세제는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이원적인 소득과세체계(dual income tax system)의 구조를 갖는다. 소득유형은 고용소득(employment income) 및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을 일컫는 근로소득(earned income)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적용되면 최고 59.17%까지 고율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는 없고 국세만 부과되며, 30%의 단일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한다(〈표 VI-13〉 참조).

〈표 VI-13〉 소득유형별 스웨덴 소득세율

(단위: SEK, %)

소득 유형	과세표준	국세	지방세		총조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근로 소득	380,200 미만	-	28.89	34.17	28.89	34.17
	380,200~538,800	20	28.89	34.17	48.89	54.17
	538,800 초과	25	28.89	34.17	53.89	59.17
자본 소득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30% 단일 세율 부과					

자료: <http://www.taxrates.cc/html/sweden-tax-rates.html>

한편 유산에 의한 소득으로 고용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모두 가능하며, 이 역시 각 소득유형별 과세방식의 적용을 받는다¹⁴¹⁾. 특히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이전받은 자산에 의한 소득은 취득인이 자산을 처분

141) <http://online.ibfd.org/kbase>, IFA Cahiers 2010 - Volume 95B, Death as a Taxable Event and Its International Ramifications(Sweden Part), p. 734와 정유석(2009), p. 170을 참조하여 정리

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자본이득이며, 이는 자산처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때 자본이득은 취득인이 승계받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상속인의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상속인 취득 후 소요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자들 간의 증여 및 상속에 의한 신규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2) 상속세 완화 국가

가) 미국

(1) 무상이전 관련 세제 변천

미국 연방정부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및 세대생략상속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GSTT)를 부과하고 있다. 처음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분리과세 되었으나, 1976년 이후 무상이전을 하나의 과세체계로 통합하면서 생긴 증여한 자산을 사망으로 인한 유산에 누계하여 과세하고 있다. 또한 1976년에 미국 의회는 피상속인이 자녀세대를 생략하고 손자녀 또는 그 이후 세대에게 직접 상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속세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대생략상속세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와 합산하여 납부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상속세 및 세대생략상속세와 증여세가 서로 연계되어 통합·관리됨으로써 자산이전 관련 제반세금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미국의 상속관련 과세체계는 설명하기에 조금 복잡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세대생략상속세 포함)와 증여세 과세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인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의 한시적인 적용과 후속법

안의 입법 지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제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2001년 세제개혁법안(EGTRRA)”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속세 및 세대생략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다 2010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적 폐지는 연차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인하하고, 상속세가 면제되는 상속공제액은 확대시키는 방법에 의한다(〈표 VI-14〉 참조). 다음으로 증여세는 2010년 이후에도 폐지되지 아니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를 보완하는 증여세 기능을 생각해 종전의 45% 세율을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인 35%와 일치시킨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증여부터 적용한다.

〈표 VI-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내용 변경 계획(EGTRRA 기준)

(단위: 백만달러, 달러, %)

구분	유산세적용 면제금액	유산세 표준세액공제	증여세적용 면제금액 ¹⁾	유산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2002	1.0	345,800	1.0	50
2003	1.0	"	"	49
2004	1.5	555,800	"	48
2005	1.5	"	"	47
2006	2.0	780,800	"	46
2007	2.0	"	"	45
2008	2.0	"	"	45
2009	3.5	1,455,800	"	45
2010	폐지	0	"	35
2011	1.0	345,800	"	55

주: 1) “2001년 법안”에서 유산세는 2010년 폐지 전까지 면제금액의 규모를 증가시키나, 증여세는 2001년 675,000달러에서 1,000,000달러로 증가시킨 후에는 물가와도 연동시키지 않은 채 이를 유지함.

자료: CCH(2008), pp. 4~7 참조하여 작성

“2001년 세제개혁법안(EGTRRA)”은 한마디로 2009년까지 상속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다 2010년에 폐지하되, 그해 말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2009년 말까지 상속세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¹⁴²⁾, 2010년 한 해 동안 2001년 법안에 의해 일단 상속세(세대생략상속세)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0 Tax Relief Act”¹⁴³⁾에서 연방상속세·증여세·세대생략상속세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1~2012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1인당 500만달러까지 상속세 공제인정금액은 증가시켰으며, 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낮추었다. 단, 2010년은 상속인에게 상속자산의 가치를 피상속인 사망시점의 시장가액으로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step-up basis) 500만달러까지는 면제해주고 초과액에 대해 35%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상속자산의 가치를 피상속인이 자산을 구매한 시점의 시장가액으로 평가하여(carryover basis) 비과세하는 방

142) 미국에서는 클린턴 정부 말기부터 연상 상속세의 폐지가 논의되었고, 부시정부 하에서 상속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취지의 입법(2001년 법안)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빌게이츠, 워런버핏 등 미국 부자들의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 등으로 인하여 2006년 6월 상속세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상속세 과세가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민주당 정부가 승기를 잡으면서 이번에는 미 하원에서 2009년 12월 상속세를 영구화하는 법안(Permanent Estate Tax Relief For Families, Farmers and Small Business Act of 2009)을 통과시켰으나 미 상원은 다시 동 법안을 부결하였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다수파는 상속세법의 근본적 개정은 미루더라도 2009년 상속세 체제의 연장만이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이마저도 상원의 공화당 측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같은 첨예한 정치적 대립 끝에 미 의회는 2009년 말까지 상속세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였다.(자료: <http://www.lawtimes.co.kr/>, “2010년 미국 상속세의 한시적 폐지와 전망”, 2010. 2. 22.)

143) The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법 중 택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개정 세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되 2012년 12월 30일에 소멸되며, 그때까지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2013년부터는 “2001년 법안(EGTRRA)”에 의해 55%의 최고세율과 1인당 최대 공제금액 100만달러로 회귀될 예정이다(<표 VI-15> 참조).

〈표 VI-1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내용 변경 계획
(2010 Tax Relief Act 기준)

구분	유산세적용 면제금액	증여세적용 면제금액 ¹⁾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
2009	\$3,500,000	\$1,000,000	45%
2010	\$5,000,000 or \$0	\$5,000,000	35% or 0%
2011	\$5,000,000	\$5,000,000	35%
2012	\$5,000,000	\$5,000,000	35%
2013	\$1,000,000	\$1,000,000	55%

자료: <http://wills.about.com/od/understandingestatetaxes/a/overviewfed.htm>,
“Overview of Current Federal Estate Tax Laws”.

(2) 2010년도 무상이전 관련 세제

자산이전 관련 현행 세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2009년도 세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표 VI-16> 참조).

우선 2009년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상속공제금액은 350만달러이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를 위해 2가지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증여자가 일생 동안 증여한 재산가액의 100만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applicable gift-tax exclusion)이고, 두 번째는 매년 1인당 13,000달러(부부는 26,000달러)이하로 증여함으로써 비과세되는 방법(annual exclusion gifts)이다. 이때 증여공제 인정 한도를 초과한 증여분은 증여와 상속을 누계하여 과세하는 통합된 이전과세체계

에 의거해, 증여자 사망시 총유산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과세가 이연된다. 과세대상 초과 증여분 및 상속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면 과세면제를 위한 공제금액에 제한이 없는 배우자공제(unlimited marital exemption)가 적용된다. 단 배우자에 대해 신탁상속(legacy in trust)하는 경우에는 신탁유형이 QTIP신탁¹⁴⁴⁾에 한해 무제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 아님’ 배우자 증여의 경우는 배우자공제를 연간 133,000달러까지만 허용¹⁴⁵⁾하였다.

반면 2010년은 “2001년 EGTRRA”에 의하면, 상속세 및 세대생략상속세는 폐지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자산을 피상속인 취득시점의 시장가액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대신 추후 자산을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 Tax Relief Act”가 제정되면서 2010년의 상속세 과세는 2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상속자산을 피상속인 사망시점의 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500만달러 면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5%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상속자산을 피상속인 취득시점의 시장가액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대신 이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는 “2010 Tax Relief Act”에 의해 2010년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최고세율 35%와 100만달러의 공제금액이 인정되며, 2010년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자본이전 과세체계를 재통합에 의거해 35% 세율과 500만달러까지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144) QTIP 신탁이란 배우자가 1년에 최소 1번 이상 소득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생존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신탁 소득을 줄 수 없는 신탁형태를 말한다.

145) IRC §2523(i)(2)

〈표 VI-16〉 미국의 상속 및 증여세제(2009/2010 비교)

구 분		2009	2010
상속세 (Estate Tax) ¹⁾	과세대상	국내외 모든 자산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공제금액	350만달러	500만달러
	세율	45%	35%
	배우자공제	제한 없음 ²⁾	
증여세 (gift tax)	과세대상	국내외 모든 자산의 증여 이전	증여세 유지
	공 제 금 액	평생공제인정액	100만달러
		연간공제인정액	수증자 1인당 연간 \$13,0003)
	세율	45%	35%
	배 우 자 공 제	시민권자	제한 없음
		비시민권자	연간 \$133,000

- 주: 1) 세대생략상속세 포함. 단 2010년의 세대생략상속세율은 0%이며, 2011~2012년은 35%임.
- 2) '미국 시민권자 아닌' 배우자 상속이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무제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단 총상속액(gross estate)이 \$60,000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 3) 1인의 수증자가 증여자가 다르면 세금 없이 무제한 증여받을 수 있음.
- 자료: The Wall and Broad Report, "New usa tax laws for 2011 and 2010 year end planning. How they affect you in simple terms. Very-good-reading," 2011. 3. 7.
- CCH Tax Briefing, "President Signs Two-Year Extension Of Bush-Era Tax Cuts, Payroll Tax Relief, Estate Tax Compromise," pp. 9~10. 2010. 12. 21.
- <http://willtrustsestates.blogspot.com/2007/02/brief-overview-of-japanese-inheritance.html>.
- [http://online.ibfd.org/kbase/, Collections/Country Keyfeatures/Inheritance and Gift Taxes\(United States Part\)](http://online.ibfd.org/kbase/, Collections/Country Keyfeatures/Inheritance and Gift Taxes(United States Part)).
- [http://online.ibfd.org/kbase, IFA Cahiers 2010 - Volume 95B. Death as a Taxable Event and Its International Ramifications\(United States Part\)](http://online.ibfd.org/kbase, IFA Cahiers 2010 - Volume 95B. Death as a Taxable Event and Its International Ramifications(United States Part)).

(3) 무상이전받은 자산 양도시 과세¹⁴⁶⁾

무상이전받은 자산 처분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상취득자 즉 수증자 및 상속인의 취득가액의 결정방식이다.

그동안 미국은 생전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carryover basis) 받는데 비해, 상속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step-up basis).

그런데 이와 같은 무상이전 형태별 취득가액 결정방식의 차이는 무상이전자의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하여 전혀 다른 과세결과를 가져온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미실현자본이득은 취득가액승계에 따라 수증자가 승계하고 당해 증여 시점에서 자본이득 과세는 연기된다. 이후 수증자가 당해 취득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증여자의 미실현자본이득이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시점의 유산의 시장가격에 따라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즉 ‘과세공백’의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상속에 의한 재산이전’이 ‘생존 중 처분’ 내지 ‘생전 증여에 따른 과세이연’에 비해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세불공평의 문제에 대해 “2001년 세계개혁법안(EGTRRA)”은 증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나, 상속의 경우는 2010년부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에 의한 무상이전을 유상양도로도 간주하지 않아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무상취득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무상취득자의 자본이득은 상속시점의 시장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step-up 방식 대신 수정취득가액 승계방식(modified carryover basis)¹⁴⁷⁾¹⁴⁸⁾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146) 채현석(2007), pp. 100~103 재정리.

147) 기존 상속세법에서 ‘step-up basis’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피상속

있다. 이렇게 자본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증여에 의하던 상속에 의하던 무상이전자에게 발생한 자본이득은 동일하게 취득자가 무상이전 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즉 상속재산 처분시 자본이득 산정방식의 변화를 통해, 그동안 안고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본이득 과세공백 문제를 다소나마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신규 법안(2010 Tax Relief Act)에 의해 2012년까지 상속세 과세가 연장되면서 수정취득가액승계방식(modified carryover basis) 도입과 관련하여 2010년¹⁴⁹⁾에 한해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2011년과 2012년까지는 기존 step-up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¹⁵⁰⁾.

나) 영국

(1) 무상이전 관련 세제 변천¹⁵¹⁾

영국은 1894년에 유산세(Estate duty)를 도입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 사회당 정권에 의해 사망 전 7년간 세 부담 없이 자산을 증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계기로 ‘자본이전세’로 변경되었다. 자본이전세는 생전증여를 통해 조세회피를 할 수 없도록 일생 이루어진 자산의 모든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였는데, 이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적

인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상속시점의 시장가격을 토대로 제한 없이 증가할 수 있었음. “2001년 EGTRRA”에서 도입한 ‘modified carryover basis’는 상속시점의 취득가액 증가 폭을 ① 일반적 상속의 경우 130만 달러까지 ② 배우자 상속의 경우는 300만달러까지로 제한하여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148) <http://wills.about.com/od/understandingestatetaxes/qt/2010-Estate-Tax-Rules.htm>

149) 2010.1.1~2010.12.31.기간동안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150) <http://tax.cchgroup.com/downloads/files/pdfs/legislation/bush-taxcuts.pdf>, p9.

151) [http://online.ibfd.org/kbase/Collections/Country_Keyfeatures/Inheritance and Gift Taxes\(United Kingdom Part\)](http://online.ibfd.org/kbase/Collections/Country_Keyfeatures/Inheritance_and_Gift_Taxes(United_Kingdom_Part)). & [http://online.ibfd.org/kbase, IFA Cahiers 2010 - Volume 95B, Death as a Taxable Event and Its International Ramifications\(United Kingdom Part\)](http://online.ibfd.org/kbase, IFA Cahiers 2010 - Volume 95B, Death as a Taxable Event and Its International Ramifications(United Kingdom Part)).

접근방식이었다.

그러나 1986년에 보수당은 자본이전세를 상속세(IHT)로 대체하면서 다시 한번 생전 증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7년의 누적기간(the seven-year cumulation period)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영세율 구간(nil rate band)과 저율의 세율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2006년에 다시 사회당 정권에 의해 IHT가 사망시 상속재산 외에 사망 전 7년내 증여분까지 과세되는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한편 일반 증여(사망 전 7년간의 증여 제외)의 경우는 IHT와 같이 별도의 증여세제를 적용하는 대신 「TCGA 1992」¹⁵²⁾에 따라 증여재산의 처분으로 간주하여 증여 시점의 시가에 의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2) 현행 세제

현재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생전증여(lifetime gift) 후 7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이러한 영국의 상속세제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영국 상속세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영세율 구간을 개인별 최초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설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상속가액에 대해 40%의 상속세율로 과세한다.

〈표 VI-17〉 영국 상속세 비과세 한계금액

(단위: 파운드)

기간	상속세 비과세 한계금액
2007~2008년	300,000
2008~2009년	312,000
2009~2010년	325,000
2010~2011년	350,000

자료: <http://www.hmrc.gov.uk/rates/iht-thresholds.htm>

152)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17(1)(a).

둘째, 생전증여 후 7년내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생존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Taper Relief’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하하여 산정한다는 점이다¹⁵³⁾. 산정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증여 최초 시점이 7년 미만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면 7년간 증여된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다. 다음으로 생전증여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계금액의 원칙이 적용되어 증여자 사망연도의 한계금액을 공제한 후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액에서 <표 VI-18>에 의해 계산된 감면액(Taper Relief)을 다시 공제한다¹⁵⁴⁾. 실례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증여자인 Joe가 2006년 1월 15일에 35만파운드를 증여하고 2009년 4월 15일에 사망하였다. 2009년도 비과세 한계금액은 32만 5천파운드이고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은 2만 5천파운드이며 여기에 40%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액은 1만파운드가 된다. 증여 후 사망시점까지 기간은 3년을 조금 넘겼기 때문에 납세액 1만파운드에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2천파운드를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최종 납세액은 1만파운드에서 8천파운드로 낮아지게 된다.

〈표 VI-18〉 증여에 대한 Taper Relief 적용률

(단위: %)

증여시점과 사망시점간 시차	감면율
3~4년	20
4~5년	40
5~6년	60
6~7년	80

자료: <http://www.hmrc.gov.uk/inheritancetax/how-to-value-estate/gifts.htm>

153) <http://www.hmrc.gov.uk/inheritancetax/how-to-value-estate/gifts.htm>
& IBFD_UK, pp. 807~808을 참고하여 정리

154) 1984 IHTA Sec 7(4)

아울러 특정 상속인인 경우 상속(증여 후 7년 내 사망시 증여액 포함)가액이 한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또는 예외적인 몇 가지 증여의 경우에도 비과세된다(〈표 VI-19〉 참조).

〈표 VI-19〉 한계금액 외에 비과세 적용되는 공제유형

유형	내용
배우자공제	배우자(동성배우자 포함)에 대해 이전자산가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PET(Potentially exempt transfers)	증여자가 증여 시점으로부터 7년 후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비과세
자선기관기부공제	적격자선단체(Qualifying charity)인 경우 기부액이 상속세 비과세 한계금액을 초과해도 비과세
연간공제	매년 개인의 최초 증여 후, 총 증여액 3,000파운드가 될 때까지 비과세
소액증여공제	1년에 1인당 250파운드
결혼공제	결혼에 관한 다양한 소액 증여

자료: IBFD_UK & <http://www.hmrc.gov.uk/inheritancetax/intro/basics.htm>

(3) 무상이전시 자본이득세¹⁵⁵⁾

상속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에 과세하지 않으며, 무상취득자가 그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이 경우 자본이득(혹은 손실)은 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의 자산의 시가와 자산을 상속받는데 지출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증여에 의한 무상이전은 증여 시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시점의 시가에 의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한다. 단, 배우자 증여

155) <http://www.hmrc.gov.uk/cgt/intro/gifts-inherit-divorce.htm> & <http://www.hmrc.gov.uk/rates/cgt.htm>

에 대해서는 증여 시점이 아닌 이전받은 배우자가 증여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자산을 증여받기 위한 지출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배우자 이외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증여 시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의 또 다른 형태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친인척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아닌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자본이득세율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종전 18%의 단일세율 대신 개인의 총과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8%와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기업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본이득(Gains qualifying for entrepreneurs' relief)의 세율은 10%이다.

〈표 VI-20〉 개정된 자본이득세율

세율	적용 대상
18%, 28%	개인의 총과세소득금액에 따라 적용
28%	고인의 신탁관리인 또는 유산관리인에 적용
10%	기업가공제 적용대상 자본이득

자료: <http://www.hmrc.gov.uk/rates/cgt.htm>

일생 받을 수 있는 기업가공제 한도액(the lifetime limit of gains qualifying for entrepreneurs' relief) 역시 200만파운드¹⁵⁶⁾에서 500만파운드로 증가하였다.

다. 시사점

상속세(증여세 포함) 폐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국가

156) 2010. 4. 3~2010. 6. 22 동안 적용된 금액이며, 그 이전은 100만파운드이다.

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가 도입 목적에 부합한 기능을 발현하는가 하는 측면이다.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고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부의 집중 방지 및 기회균등의 왜곡을 바로잡으며, 세수를 증대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경험적 결과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 및 증여 등의 무상이전 시 자본이득만 과세되지 않고 모든 가치가 과세되는 과세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점과 제도 운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징세비용에 비해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세수비율이 1% 이내로 과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표 VI-21>에서도 보듯이 각국별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대부분 1% 미만이며, 단지 벨기에, 프랑스, 일본, 한국만이 1%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둘째, 상속과세로 징수되는 세수입의 지배·관리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어느 주체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측면이다¹⁵⁷⁾. 이에 대해 Beach(1996)는 상속세의 폐지는 경제에 방대하고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즉 사망세를 폐지하면 그 때부터 9년간 국민생산이 매년 110억달러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매년 14만 5천 개씩 창출되며, 개인 소득은 매년 평균 현재의 계획을 초과해서 80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상속과세로 미미하게 징수되던 세수입을 소득세수 증가로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157) 김완일(2010), p. 406 참조.

〈표 VI-21〉 GDP 및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2006/2007)

(단위: %)

	2006		2007	
	GDP 대비	총조세 대비	GDP 대비	총조세 대비
호주	0.00	0.00	0.00	0.00
오스트리아	0.05	0.12	0.06	0.14
벨기에	0.62	1.39	0.62	1.40
캐나다	0.00	0.00	0.00	0.00
체코	0.02	0.07	0.01	0.03
덴마크	0.21	0.43	0.23	0.47
핀란드	0.26	0.58	0.26	0.59
프랑스	0.46	1.04	0.47	1.08
독일	0.16	0.46	0.17	0.48
그리스	0.11	0.34	0.13	0.41
헝가리	0.07	0.18	0.05	0.13
아이슬란드	0.08	0.20	0.13	0.31
아일랜드	0.19	0.62	0.21	0.67
이탈리아	0.00	0.01	0.01	0.02
일본	0.00	1.06	0.00	1.03
한국	0.00	1.05	0.00	1.10
룩셈부르크	0.14	0.39	0.13	0.35
멕시코	0.00	0.00	0.00	0.00
네덜란드	0.34	0.86	0.33	0.88
뉴질랜드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0.10	0.22	0.11	0.26
폴란드	0.02	0.07	0.03	0.08
포르투갈	0.00	0.01	0.01	0.02
슬로바키아	0.01	0.00	0.00	0.00
스페인	0.27	0.74	0.28	0.73
스웨덴	0.00	0.01	0.00	0.00
스위스	0.17	0.58	0.17	0.58
터키	0.02	0.06	0.01	0.06
영국	0.27	0.74	0.28	0.77
미국	0.24	0.89	0.23	0.81
OECD 평균	0.13	0.40	0.13	0.41

주: 0인 국가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거나 이미 상속·증여세 폐지 국가임.
 자료: OECD(2008, 2009)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징세비용 대비 낮은 수준의 상속세 세수와 상속세 폐지 시 민간주체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상속세 존치 이유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세 폐지를 고려하는 경우 과세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소득인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상속 시점에 상속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흐름속에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였으며, 그 후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역시 상속세제를 폐지하였다. 미국, 영국의 경우는 상속과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속·증여세 추세에 주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표 VI-22〉 주요국의 상속세제 현황

유형	해당 국가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과세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 유지 및 세부담 완화	영국, 독일, 한국, 미국, 일본
기타(폐지 검토)	미국

주: 영국은 상속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증여세는 폐지 후 자본이득세로 과세됨.
자료: 정유석(2009), p. 168의 〈표〉 참조.

4.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가. 상속세의 폐지 가능성 검토

상속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다양한 논리를 제2절에서 살펴보았다. 상속세가 사망 시점에 과세되는 비논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사망세

(death tax)라는 점,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소득세와 이증과세라는 점, 상속세는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상속세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급진적인 주장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¹⁵⁸⁾.

그러나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도 어느 정도 논리적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상속세가 사망 시점에 과세되는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망세라는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슬픔에 처해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라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슬픔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다.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로 전환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면 상속인들의 슬픔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상속세가 피상속인이 부담한 소득세와 이증과세라는 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형성하면서 소득세를 이미 부담하였는데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소득세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빠짐없이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그 과정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그 재산의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세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양도되는 시점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을 반드시 소득세와 이증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상속세는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158) McCaffery(1999)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상속세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보다 피상속인이 될 사람의 통상적인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어 상속과세의 부담액 이상으로 저축을 감소시키고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그 결과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과연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2절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 우리나라 전체 피상속인(28만 8,503명)중에서 불과 1.5%의 피상속인(4,340명)의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될 뿐 아니라, 과세대상인 피상속인 중에서도 불과 7.2%의 피상속인(312명)의 상속재산에 대해 우리나라 상속세 1조 5,464억원의 3분의 2가 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피상속인의 0.1%가 우리나라 상속세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달리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담하는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가 상속세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클 것인지는 의문이다. 물론 상속세를 부과하면 부과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겠지만, 이것이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상속세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다. 중소기업이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고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상속세의 일시적 납부로 인한 중소기업의 사업 중단은 가능한 한 방지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승계에 대해서 현행 세법에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명이 정상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최대 6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상속공제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중소기업을 승계받는다면 상속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

속인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리는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더구나 이러한 주장은 상속세가 우리 사회에서 기회균등의 가치와 능력 위주의 사회구조를 보장한다는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극소수의 부유층의 경우 선대의 막대한 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후대에게 고스란히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기회균등의 가치와 능력 위주의 사회구조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와서 부유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부유층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공봉사와 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40명의 부유층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하였다¹⁵⁹⁾. 모든 부유층이 이와 같이 자발적인 기부를 한다면 상속세가 필요없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속세는 강제적인 것이지만 기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회적 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나.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방법만 다를 뿐 과세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159) <http://givingpledge.org>

에게 무상이전 시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그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그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¹⁶⁰⁾. 이와 같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의 무상이전에 대해 자본이득세로 과세한다면, 현행 소득세법은 유상이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범위를 넓혀서 무상이전에 대해서도 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면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방안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처분 시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제1안)

제1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상속 시점의 재산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0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였고 사망 시점의 시가가 20억원이었으며, 상속인은 그 후 이 토지를 5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 시점의 시가 20억원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 30억원(50억원 - 20억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속 시점의 재산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얻은 자본

160) 증여세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이득에 대해서는 영원히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이 방안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을 소득의 미실현 상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처분 시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제2안)

제2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서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피상속인의 자본이득과 상속인의 자본이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0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였고 사망 시점의 시가가 20억원이었으며, 상속인은 그 후 이 토지를 5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10억원을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 그리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 40억원(50억원 - 10억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즉, 10억원의 피상속인의 자본이득과 30억원의 상속인의 자본이득의 합계액인 40억원의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피상속인이 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고, 상속인이 재산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 재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최명근(2007)이 지적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상속한 특정재산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면세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과세받지 않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최소한 두 세대 혹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소급하여 그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과세관서가 추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상속시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세부담을 회피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상속인은 그 재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어 자산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자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상속 시 상속재산에 대해 유상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의 처분 시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취득가액으로 대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제3안)

제3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때에 무상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이를 유상양도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그 자산의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향후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0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였고 사망 시점의 시가가 20억원이었으며, 상속인은 그 후 이 토지를 5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이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의 자본이득 10억원(20억원 - 10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의 무

상이전시점의 가액 20억원을 그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본이득 30억원(50억원 - 20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 방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때에 무상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제2안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 재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제2안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상속인이 재산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때에 무상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이를 유상양도로 의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의제는 본질이 다르지만 법률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 확정의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입법방식이다.

4) 상속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의 처분 시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취득가액으로 대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제4안)

제4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때에 무상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 그 재산의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을 그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향후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0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였고 사망 시점의 시가가 20억원이었으며, 상속인은 그 후 이 토지를 5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의 자본이득 10억원(20억원 - 10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다. 그리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 그 재산의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 20억원을 그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본이득 30억원(50억원 - 20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 방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때에 무상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의 개념에 포함한다면 제4안의 경우 제3안과 같은 의제방식의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안도 제2안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 재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제2안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상속인이 재산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지 않아도 된다.

5) 종합의견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일 것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형성하면서 소득세를 이미 부담하였는데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과세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재원과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그 재산의 가치 상승을 구분하여 이중과세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속세가 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각각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견해이다.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 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득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그 재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과세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려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 재원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그 재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네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다면, 제1안은 피상속인이 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영원히 과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제2안, 제3안, 그리고 제4안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 재원에 대해 이중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그 재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제2안의 경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안이 되기 어렵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과세되지 않으면 상속인은 과세이연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재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어 자산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자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상속인이 그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안과 제4안은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때에 무상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매각할 때 그 재산의 가치상승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 방안이다. 다만 제3안의 경우는 의제방식의 입법을 해야 하고 제4안의 경우는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의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5. 소결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제기하여 왔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과세되는 비논리적이며 비도덕

적인 사망세이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소득세와 이중과세이고,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핵심이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소득세와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 즉,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기본 재원에 대해서 또 다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보다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었지만 그 재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세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만일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무상이전될 때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미비로 인해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에 대해 완벽하게 과세되지 않는다면 상속세의 폐지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상속세는 불완전한 자본이득과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상속세가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기회균등의 가치와 능력 위주의 사회구조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자본이득세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더불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동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헐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대상이 되어 왔다. 그동안 꾸준히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할 만큼 소득수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성숙도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선진국 시장에 돌입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선진국의 자본시장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에는 못 미치지만,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국제적인 자본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으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인프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IT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등 성숙된 시장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아도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단계는 지났다고 보며, 과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도 주식양도차익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의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현물 주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면서 파생상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직·간접투자의 형평성 차원에서 집합투자자의 주식 관련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다 보니, 간접투자세제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지나친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으나, 불행히도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례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경험이 그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세제도를 운영하다가 양도소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일본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비과세의 범위를 축소하여 왔으며, 양도소득세의 도입 시에도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형태의 원천분리과세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제도변환의 충격을 감소시켰다. 또한 거래세율을 낮추되, 10년간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결국 일본이 신고분리과세로 주식양도소득세제를 완전히 정비하기까지는 도입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도입 이전에 점진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 기간까지 합산한다면 수십년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어떻게(how)’에 있으며, 그 해답은 일본식의 점진적인 도입이다. 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를 ‘20××년에 도입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도입방식을 점진적인 방식이 되도록 설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분리 과세제도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매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세제의 변경은 주변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변화로 인하여 시장이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세계의 변화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이라면 앞으로 또 수년간을 기다리더라도 그러한 충격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한 경우에도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충격에 지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제적으로 과세당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나날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변경의 충격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는 도입 방안의 설계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적어도 수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한 실질적인 방안의 하나가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비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이어서 분리과세 형태의 양도차익과세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우선 분리과세의 형태로 도입하되, 궁극적으로 종합과세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도 실시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최근 조세 경쟁으로 자본소득에 대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이미 채택한 나라들도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

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동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가치 상승분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상속세가 불완전한 자본이득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본이득세제의 정비가 선행되고 난 후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후속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이원적 소득세제와 같이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좀 더 들여다보고, 그 타당성 여부에 따라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제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별로 분리시켜 다른 체계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본이득세제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태원, 「증권양도차익 과세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강경제논집』, 제29집 제2호, 2000. 10, pp. 213~234.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 국중호·김진수, 「이원적 소득세의 입장에서 본 금융소득과세의 구축 방향」, 『세무학연구』, 제24권 제2호, 2007. 6, pp. 41~64.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09.
- 김완일, 「기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 3, pp. 399~429.
- 김정호, 『상속세, 이래서 폐지해야 한다』, CFE Report No. 39, 자유기업원, 2008.
- 김진수,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6-04, 한국조세연구원, 2000.
-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02-12,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과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정책보고서 05-03,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박창균·연태훈·허석균, 『최적 자산이득과세에 관한 연구: 가계 자산 보유와 자산과세』, KDI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06.
- 안경봉·정희선,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세법연구 06-05,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3.
- 오윤·박훈·최원석, 「금융·자본소득세제의 증장기 개편방안」, 『세

- 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3호, 2006. 9, pp.297~333.
- 오재선, 「자본이득과세의 제문제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 제5권, 1989, pp. 119~167.
- 윤계섭, 「자본이득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호, 1990. 1, pp. 17~36.
- 윤창현, 「과생상품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선물학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4. 10.
- 이용진, 「우리나라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호, 1992. 6, pp. 793~823.
- 이인실, 『자본이득과세 연구』, 연구보고서 03-08, 한국경제연구원, 2003.
- _____,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자본이득과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경제학보』, 제11권 제1호, 2004. 4, pp. 47~81.
- 전영준 외, 『유가증권 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7집, 2009. 9, pp. 163~184.
- 조동근,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논단』, 제224권, 2008. 1, pp. 8~17.
- 증권거래소, 『증권선물』, 각 연도.
-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7.
- 최경수, 「주식양도차익의 적정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3.
- 최광, 『세제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CFE Report No. 63, 자유기업원, 2008.
- 최명근, 『상속과세존폐론』, 경제법륜사, 2007.
- 한국거래소, 『KRX Market』, 각 연도.

- 한상국·배준호·이광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방안』, 정책보고서 96-06, 한국조세연구원, 1996.
- 허성관·홍순복,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식매매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연구』, 제9호, 1997. 2. pp. 39~65.
- 현진권,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 『재정학연구』, 제3권 제2호, 2010. 5. pp. 157~184.
- 홍범교,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05-01, 한국조세연구원, 2005.
- _____, 「파생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 문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한·중 공동심포지엄 발표논문, 2007.
- _____,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石弘光, 『利子·株式譲渡益課税論』, 日本經濟新聞社, 1993.
- 泉潤慈, 「株式等の譲渡益課税についての課税方法について」, 『福山大學經濟學論集』 31(2), 2006. 10
- 大野裕之, 「株式譲渡益課税のロックイン効果-予備的檢證」, 『經濟論集』, 제28권 1호, 2002. 12. pp. 89~98.
- 財務省, 「稅制調査會第7回金融小委員會議事録」, 2001. 9. 18.
- 武田昌輔·神谷修 監修, 『DHC 所得稅務釋義』, 第一法規.
- Auerbach, A., "Capital Gains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Realizations, Revenue, and Rhetoric,"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988, No. 2, 1988, pp. 595~637.
- _____, "Capital Gains Taxation and Tax Reform," *National Tax Journal*, Vol. 42, No. 3, Sep. 1989, pp. 391~401.
- _____, "Retrospective Capital Gains Taxation," *American*

- Economic Review*, Vol. 81, No. 1, Mar. 1991, pp. 167~178.
- Auerbach, A., L. Burman and J. Siegel, "Capital Gains Taxation and Tax Avoidance: New Evidence from Panel Data," University of Michigan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Series, No. 98-13, Dec. 1997.
- Auten, G. and C. Clotfelter, "Permanent versus Transitory Tax Effects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7, No. 4, Nov. 1982, pp. 613~632.
- Ayers, B., C. Lefanowicz and J. Robinson, "Shareholder Taxes in Acquisition Premiums: The Effect of Capital Gains Taxation," *Journal of Finance*, Vol. 58, No. 6, Dec. 2003, pp. 2783~2801.
- Bhatia, K., "Capital Gains and the Aggregate Consumption Fun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No. 5, Dec. 1972, pp. 866~879.
- Beach, W., *Time to Eliminate the Costly Death Tax*, The Heritage Foundation, 2000.
- _____, *The Case for Repealing the Estate Tax*, The Heritage Foundation, Aug. 1996.
- Blouin, J., J. Raedy and D. Shackelford, "Capital Gains Taxes and Equity Trading: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1, No. 4, Sep. 2003, pp. 611~651.
- Burman, L., K. Clausing and J. O'hare, "Tax Reform and Realizations of Capital Gains in 1986," *National Tax Journal*, Vol. 47, No. 1, March 1994, pp. 1~18.
- CCH, *U.S. Master Estate and Gift Tax Guide 2008*, 2008.
- _____,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05.

- Collins, J. and D. Kemsley, "Capital Gains and Dividend Taxes in Firm Valuation: Evidence of Triple Taxation", *Accounting Review*, Vol. 75, No. 4, Oct. 2000, pp. 405~427.
- Cook, E. and J. O'hare, "Issues Relating to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National Tax Journal*, Vol. 40, No. 3, Sep. 1987, pp. 473~488.
- Cunningham, N. and D. Schenk, "The Case for a Capital Gains Preference," *Tax Law Review*, Vol. 48, Spring 1993, pp. 319~380.
- Dai, Z., E. Maydew, D. Shackelford and H. Zhang, "Capital Gains Taxes and Asset Prices: Capitalization or Lock-In?," *Journal of Finance*, Vol. 63, No. 2, Apr. 2008, pp. 709~742.
- David, M., "Economic Effects of Capital Gains Tax,"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4, No. 3, May, 1964, pp. 288~299.
- Dyl, E., "Capital Gains Taxation and Year-End Stock Market Behavior," *Journal of Finance*, Vol. 32, No. 1, March 1977, pp. 165~175.
- Eliason, M. and H. Ohlsson, "Timing of Death and the Repeal of the Swedish Inheritance Tax," Uppsala University, Working Paper 2010:5 March 2010.
- Ellis, K., O. Li and J. Robinson, "Capital Gains Taxes and IPO Under-pric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University of Notre Dame, an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pr. 2006.
- Feldstein, M. and S. Yitzhaki, "The Effects of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Selling and Switching of Common Stock,"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 1978, pp. 17~36.
- Feldstein, M., J. Slemrod and S. Yitzhaki, "The Effects of

- Taxation on the Selling of Corporate Stock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4, No. 4, June 1980, pp. 777~791.
- _____, "The Effects of Taxation on the Selling of Corporate Stock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Repl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9, No. 1, Feb. 1984, pp. 111~120.
- Gale, W. and J. Slemrod, *We Tax Dead People*,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0.
- Gemmill, R., "The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on Asset Prices," *National Tax Journal*, Vol. 9, Dec. 1956, pp. 289~301.
- George, T. and C. Hwang, "Long-Term Return Reversals: Overreaction or Taxes?," *Journal of Finance*, Vol. 62, No. 6, Dec. 2007, pp. 2865~2896.
- Gravell, J., "A Proposal for Raising Revenue by Reducing Capital Gains Taxes?" CRS Report 87-562E, 1987.
- Guenther, D. and M. Willenborg, "Capital Gains Tax Rates and the Cost of Capital for Small Busines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53, No. 3, Sep. 1999, pp. 385~408.
- Haugen, R. and A. Hines, "The Effects of the Personal Income Tax on the Stability of Equity Value," *National Tax Journal*, Vol. 22, No. 4, Dec. 1969, pp. 466~471.
- Haugen, R. and D. Wichern, "The Diametric Effects of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Stability of Stock Prices," *Journal of Finance*, Vol. 28, No. 4, Sep. 1973, pp. 987~996.
- Hendershott, P., E. Toder and Y. Won, "Effects of Capital Gains Taxes on Revenue and Economic Efficiency," *National Tax*

- Journal*, Vol.44, No.1, March 1991, pp. 21~40.
- HM Revenue and Customs, *An Introduction to Capital Gains Tax*, 2007.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10.
-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IRS Publication 550, 2006.
- Joint Committee of Taxation, *Tax Treatment of Capital Gains and Losses*, March 12, 1997.
- Jin, L., "Capital Gains Tax Overhang and Price Pressure", *Journal of Finance*, Vol. 61, No. 3, June 2006, pp. 1399~1431.
- Kiefer, D., "The Capital Gains Response to a Tax Rate Change: Is It Overestimated?" CRS Report 88-216S, 1988.
- Kurtz, J., "Comments on Indexing for Inflation and the Interest Deduction," *Wayne Law Review*, Vol. 30, 1983-1984, pp. 969~972.
- Lakonishok, J. and S. Smidt, "Volume for Winners and Losers: Taxation and Other Motives for Stock Trading," *Journal of Finance*, Vol. 41, No. 4, Sep. 1986, pp. 951~974.
- Landsman, W. and D. Shackelford, "The Lock-in Effect of Capital Gains Taxes," *National Tax Journal*, Vol. 48, No. 2, Jun. 1995, pp. 245~259.
- Lang, M. and D. Shackelford, "Capitalization of Capital Gains Taxes: Evidence from Stock Price Reactions to the 1997 Rate Redu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6, No. 1, Apr. 2000, pp. 69~85.
- McCaffery, E., *Grave Robbers: The Moral Case Against the Death Tax*,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No. 353, 1999.
- Minarik, J., "The Effect of Taxation on the Selling of Corporate Stock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Comment,"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9, No. 1, Feb. 1984, pp. 93~110.
-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2006.
-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2007*, 2008.
-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2008*, 2009.
- Poterba, J., "How Burdensome Are Capital Gains Taxe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3, 1987, pp. 157~172.
- Poterba, J. and S. Weisbenner, "Capital Gains Tax Rules, Tax-Loss Trading, and Turn-of-The-Year Returns," *Journal of Finance*, Vol. 56, No. 1, Feb. 2001, pp. 353~368.
- Reese, W., "Capital Gains Taxation and Stock Market Activity: Evidence from IPOs," *Journal of Finance*, Vol. 53, No. 5, Oct. 1998, pp. 1799~1819.
- Ricketts, R., "Do We Really Need Special Tax Relief for Capital Gains?" *Accounting Horizons*, Sep. 1990, pp. 43~49.
- Seyhun, N. and S. Douglas, "How Do Taxes Affect Investors' Stock Market Realizations? Evidence from Tax-Return Panel Data", *Journal of Business*, Vol. 67, No. 2, 1994, pp. 231~262.
- Somers, H., "An Economic Analysis of the Capital Gains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1, No. 3, Sep. 1948, pp. 226~232.
- Stiglitz, J., "Some Aspects of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1, 1983, pp. 257~294.
-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ow Capital Gains Tax Rates Affect Revenues: The Historical Evidence," March 1988.
- U.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Tax Treatment of Capital Gains and Losses," JCS-7-89, March 1989.

Vickrey, W., "Averaging Income for Income Tax Purpos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1939, pp. 379~397.

<http://www.irs.gov>, "Capital Gains Tax in the United States",
2007. 7. 3.

<http://www.beginnersinvest.about.com/cs/capitalgainstax/a/061703a.htm>

http://www.fool.co.uk/taxes/articles/cgt_shars.htm, 2007.

<http://sec.himawari-group.co.jp/trade/futures/tax.html>, 2007.

<http://www.mof.go.jp/english/tax/tax2007/tax2007a.pdf>.

http://www.orix-hiroba.jp/question/archives/2006/11/post__1454.html, 2006.11.13.

http://www.tabisland.ne.jp/explain/zeisei7/zes7_4_3.htm, 2007

<http://www.Bankrate.com/Capital Gains Taxes: There's More than One Rate>, 2007.

http://taxes.about.com/od/capitalgains/a/CapitalGainsTax__4.htm

<http://www.hmrc.gov.uk/Capital Gains Tax>

<http://www.hmrc.gov.budget2007/pn2.htm>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shotoku/h21kaisei.pdf>

<http://www.mof.go.jp/jouhou/syuzei/zeisei09/05/index.htm#05a>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shotoku/h21kaisei.pdf>

HMRC, "Futures: Scope of Legislation: Financial Future",
<http://www.hmrc.gov.uk/>

_____, "Taxing Derivative Contracts: Introduction: History",
<http://www.hmrc.gov.uk/>

ORIX증권, "주가지수선물 · 옵션 Q&A" www.orix-hiroba.jp/question

/archives/2006/11//post__1454.html, 2006. 11. 13.

<http://www.taxtips.ca/taxrates/canada.htm>

[http://willtrustsestates.blogspot.com/2007/02/brief-overview-of-japanese inheritance.html](http://willtrustsestates.blogspot.com/2007/02/brief-overview-of-japanese-inheritance.html)

[http://online.ibfd.org/kbase/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Surveys - 5. Inheritance and Gift Taxes.](http://online.ibfd.org/kbase/United%20States%20-%20Individual%20Taxation%20-%20Country%20Surveys%20-%205.%20Inheritance%20and%20Gift%20Taxes)

<http://online.ibfd.org/>, IFA Cahiers 2010 - Volume 95B. Death as a Taxable Event and Its International Ramifications(United States Part).

http://www.agn-europe.org/html/firm/news/ttf/2010/Brochure__Gift&Inheritance2010.pdf, AGN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 - 2010 A European Comparison.

<국문요약>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

홍범교 · 김진수

우리나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각각 동 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세계적인 시장과 견주어 손색없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현재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본다. 따라서 세 부담의 형평성과 분배 정의를 위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이러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합투자에 대한 세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것은 현물시장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형평성과 연계 투자를 고려할 때,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차익과세 없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고려한 형평성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소득원을 구별하여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하다 보니 집합투자제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양도손실도 공제할 수 없어, 집합투자증권의 총체적인 수익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본

소득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이다.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 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으나, 불행히도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례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경험이 그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일본은 비과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도입 초기에는 사실상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손실공제와 이월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매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세제의 변경은 단지 주변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기초체력이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변화로 인하여 시장이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과세당국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거래의 투명성도 나날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의 변경이 자본의 지하경제화를 촉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변경의 충격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는 도입 방안의 설계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적어도 수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이다.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우선 분리과세의 형태로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종합과세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도 실시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한편,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동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가치 상승분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상속세가 불완전한 자본이득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본이득세제의 정비가 선행되고 난 후에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Financial Assets in Korea

Beom-Gyo Hong & Jin Soo Kim

The financial capital gains from neither listed stocks nor financial derivatives are taxable in Korea. Originally, this non-taxation policy was intended to develop our financial markets to raise funds and boost economic development. But as our stock and financial derivative markets are now at a world-class level in terms of trading volume and infrastructure, this type of tax assistance has become outdated. Rather to improve the fairness of our tax system,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 on the gains from financial asset trading is necessary.

One of the most worrisome aspects of this change is the likelihood of negative impacts on the financial markets. If there are ways to measure those impacts reliably on the market in advance, it would be straightforward for the government to carry out this change. Unfortunate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those impacts in a reliable way.

Currently, the consensus is to introduce capital gains tax on financial assets, that provides enough reason for us to look for a successful way to introduce the system when the prediction

of market impacts is infeasible. Fortunately the case of Japan demonstrates a good example. Japan is known as the only country that successfully converted its tax system from transaction tax to capital gains tax on stock trading. Japan has gradually transformed its system to alleviate the impact on the market. Korea currently has a transaction tax system on stock trading just like Japan has had many years ago. Based on the Japanese experience, we have suggested gradual steps to successfully introduce capital gains tax on financial assets in Korea.

We have also examined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inheritance tax by capital gains tax, considering the issues of double taxation in the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However our current capital gains tax system is yet to be developed in many aspects, thus it would be proper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system only after our capital gains tax system has become more comprehensive.

〈著者略歷〉

홍범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미국 New York 시립대학교 Queens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경제학 석 ·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미정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研究報告書 10-11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홍범교 · 김진수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 지 사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497-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